정책연구 IP 2023-17

중장기 국가교육정책의 모니터링 체계 설계를 위한 기초 연구

저자 | 박 동 열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 IP 2023-17

중장기 국가교육정책의 모니터링 체계 설계를 위한 기초 연구

저자 | 박 동 열

국가교육위원회

제 출 문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중장기 국가교육정책의 모니터링 체계 설계를 위한 기초 연구”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4. 4. 27.

○ 주관연구기관명 : 한국직업능력연구원
○ 연 구 기 간 : ‘23. 12. 28 - ’24. 4. 27
○ 주관연구책임자 : 박동열
○ 참 여 연 구 원 : 정 동 열(한국공학대학교)
황 영 아(한성대학교)
홍 은 선(고등직업교육연구소)
하 숙 양(한국정책평가원)

이 연구는 국가교육위원회 정책연구비 지원에 의한 것이나, 본 연구에서 제시된 정책 대안이나 의견 등은 국가교육위원회 공식 의견이 아니라 본 연구진들의 개인 견해임을 밝혀둠

제목 차례

요 약

제1장 서 론 _ 1

제1절 연구의 필요성 ····· 3
제2절 연구의 목적 ····· 5
제3절 연구 방법 ····· 6
제4절 연구 내용 및 절차 ····· 7

제2장 교육정책 모니터링 체계 현황 분석과 시사점 _ 11

제1절 증거기반 국가교육정책 모니터링 현황 분석 ····· 13
제2절 시행계획의 이행력 제고 방안 모색을 위한 정부업무평가 체계 및 평가지표 현황 분석 ····· 46
제3절 시행계획의 이행력 제고 방안 모색을 위한 교육 정책 모니터링 사례 분석 ··· 70
제4절 국가교육위원회의 시행계획 이행력 제고 방안 모색을 위한 시사점 ····· 101

제3장 국가교육정책 모니터링 체계 설계에 관한 요구 조사 _ 107

제1절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시행사항 점검에 관한 전문가 자문 결과 ····· 109
제2절 시행계획의 이행력 제고와 점검 체계 설계에 주는 시사점 ····· 118

제4장 시행계획의 모니터링체계 설계를 위한 과제 _ 121

제1절 시행계획의 모니터링 체계 설계(안) 방향 ····· 123
제2절 시행계획의 모니터링 체계 설계를 위한 추진 과제 ····· 125

참고문헌 _ 131

부록 _ 133

1. 심층면담조사지 ····· 135

표 차례

〈표 Ⅰ-1〉 연구 내용별 세부 추진 방법 ····· 8

〈표 Ⅱ-1〉 평생직업교육훈련정책 분류 기준(안) ····· 15
〈표 Ⅱ-2〉 증거기반 정책에 대한 개념 ····· 16
〈표 Ⅱ-3〉 Gray(1997)의 증거의 계층 ····· 17
〈표 Ⅱ-4〉 한준 외(2017)의 교육 및 훈련 세부 영역별 지표 ····· 18
〈표 Ⅱ-5〉 박동열 외(2020)의 평생직업교육훈련 정책 모니터링 지표 ····· 20
〈표 Ⅱ-6〉 박성호 외(2020)의 국가교육지표 체제모형 지표 구성 ····· 24
〈표 Ⅱ-7〉 박성호 외(2020)의 국가교육지표 구성 ····· 26
〈표 Ⅱ-8〉 청년지표 영역별 지표 ····· 31
〈표 Ⅱ-9〉 미래사회 대응지표 ····· 33
〈표 Ⅱ-10〉 e-나라지표 중 교육 관련 지표 ····· 34
〈표 Ⅱ-11〉 교육 및 훈련 관련 통계 현황 ····· 35
〈표 Ⅱ-12〉 NHRD-Net의 주요 메뉴 구성 ····· 38
〈표 Ⅱ-13〉 국가교육정책 범위에 따른 교육정책 모니터링 지표 종합 ····· 40
〈표 Ⅱ-14〉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법률 ····· 45
〈표 Ⅱ-15〉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기본원칙 ····· 46
〈표 Ⅱ-16〉 정부업무평가제도 발전 과정 ····· 47
〈표 Ⅱ-17〉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심의ㆍ의결 사항 ····· 49
〈표 Ⅱ-18〉 정부업무평가 종류 및 절차 ····· 50
〈표 Ⅱ-19〉 중앙행정기관 특정평가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2023 - 2022 업무평가 기준) ····· 52
〈표 Ⅱ-20〉 시도교육청 평가 지표의 주요 내용 ····· 55
〈표 Ⅱ-21〉「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주요 내용 ····· 58
〈표 Ⅱ-22〉 정부업무 성과관리 절차 ····· 59
〈표 Ⅱ-23〉 광역 단위 지역별 관련 법령 ····· 60
〈표 Ⅱ-24〉 지역별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구성 현황 ····· 63
〈표 Ⅱ-25〉 지역별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 구성 현황 ····· 66
〈표 Ⅱ-26〉「가평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주요 내용 ····· 69
〈표 Ⅱ-27〉 교육부 자체 평가 평가 지표 및 평가 기준 ····· 70
〈표 Ⅱ-28〉 평가지표의 주요 내용 ····· 71

〈표 Ⅱ-29〉 시도교육청 평가 지표의 주요 내용 ····· 72
〈표 Ⅱ-30〉 경기도교육청 중기 예산 전망 ····· 73
〈표 Ⅱ-31〉 중기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지출 전망 ····· 74
〈표 Ⅱ-32〉 중기 평생교육 부문 지출 전망 ····· 74
〈표 Ⅱ-33〉 경기도 교육청의 공약관리 체계 ····· 76
〈표 Ⅱ-34〉 경기도 교육청의 자체 평가 항목 ····· 77
〈표 Ⅱ-35〉 4대 민선교육감 공약 중 일부 추진사업 ····· 78
〈표 Ⅱ-36〉 공약 예산 현황 (2018~2022) ····· 78
〈표 Ⅱ-37〉 공약과제별 예산현황 ····· 79
〈표 Ⅱ-38〉 제 4대 민선교육감의 공약 평가 근거 및 평가 부서 ····· 81
〈표 Ⅱ-39〉 서울틀별시 민선8기 공약관리 체계 ····· 85
〈표 Ⅱ-40〉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공약평가기준 ····· 86
〈표 Ⅱ-41〉 서울틀별시 민선8기 공약목표 및 추진부서 ····· 87
〈표 Ⅱ-42〉 민선8기 교육분야 예산 ····· 89
〈표 Ⅱ-43〉 민선8기 단위사업별 예산 ····· 90
〈표 Ⅱ-44〉 평생교육통계조사 개요 ····· 93
〈표 Ⅱ-45〉 평생교육통계조사 추진 체계 ····· 94
〈표 Ⅱ-46〉 평생교육통계조사 대상 및 주요내용 ····· 94
〈표 Ⅱ-47〉 평생교육사업 조사 근거 ····· 95
〈표 Ⅱ-48〉 오혁진 외(2022)가 제시한 평생교육사업 조사 · 분석 추진체계(안) ····· 95
〈표 Ⅱ-49〉 평생교육사업 조사 대상 기관 및 범위 ····· 97
〈표 Ⅱ-50〉 국가교육정책의 모니터링 지표 설정을 위한 모형 ····· 102
〈표 Ⅱ-51〉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평가 사례 ····· 103
〈표 Ⅱ-52〉 지자체 합동평가 데이터 입력 및 확인 과정 ····· 104

〈표 Ⅲ-1〉 전문가 자문 대상 ····· 109
〈표 Ⅲ-2〉 전문가 자문 조사 문항 구성 ····· 110
〈표 Ⅲ-3〉 국가교육정책 개념 정의 적절성 분석 결과 ····· 111
〈표 Ⅲ-4〉 국가교육정책 범위 결정기준의 적절성 분석 결과 ····· 111
〈표 Ⅲ-5〉 국가교육정책 범위의 적절성 분석 결과 ····· 112
〈표 Ⅲ-6〉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 아젠더의 성과지표 반영 적절성 분석 결과 ····· 114
〈표 Ⅲ-7〉 이의신청 제기 조항 신설 필요성 분석 결과 ····· 115
〈표 Ⅲ-8〉 시행계획 점검 업무 수행 조직 구성 및 업무 분장의 적절성 ····· 115
〈표 Ⅲ-9〉 국가교육정책 점검 관리 정보시스템 필요성 분석 결과 ····· 117

그림 차례

[그림 Ⅰ-1] 국가교육정책의 일관성 및 중장기적 정책 목표 및 성과지표(안) (박동열 외, 2019) ·· 4
[그림 Ⅰ-2] 연구 주요 내용 및 흐름도 ····· 8
[그림 Ⅰ-3] 연구의 주요 절차 ····· 9

[그림 Ⅱ-1] 국가교육정책의 개념과 범위(안) ····· 14
[그림 Ⅱ-2] 한준 외(2017)의 교육 및 훈련 분야 프레임워크: 생애모형 ····· 18
[그림 Ⅱ-3] 평생직업교육훈련정책의 개념도 ····· 20
[그림 Ⅱ-4] 정동열 외(2017)의 청년지표체계 ····· 30
[그림 Ⅱ-5]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운영 메뉴 ····· 37
[그림 Ⅱ-6] NHRD-Net 메인화면 ····· 38
[그림 Ⅱ-7] 국가인적자원개발종합정보망(NHRD-Net) 구축 추진 조직 ····· 39
[그림 Ⅱ-8] 정부업무평가체계 - 중앙행정기관 평가 ····· 50
[그림 Ⅱ-9] 정부업무평가체계 - 중앙행정기관 평가 ····· 51
[그림 Ⅱ-10] 정부업무평가체계 - 지방자치단체 평가 ····· 53
[그림 Ⅱ-11] 정부업무평가체계 - 공공기관 평가 ····· 54
[그림 Ⅱ-12] 정부업무 성과관리 추진체계 ····· 57
[그림 Ⅱ-13] 공약 이행률 ····· 77
[그림 Ⅱ-14] 공약예산 현황 ····· 78
[그림 Ⅱ-15] 평생교육통계조사 추진체계 ····· 93
[그림 Ⅱ-16] 평생교육사업조사 추진체계 (2022년 기준) ····· 96
[그림 Ⅱ-1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추진 체계 ····· 99
[그림 Ⅱ-18]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업무 관리 시스템 ····· 100

[그림 Ⅳ-1]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정책점검조사과(가칭) 신설 개요도 ····· 126

요 약

1. 연구의 필요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교육 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양한 국가교육정책 관련 기본계획들을 범부처적인 종합적 접근 방법으로 수립하여 추진해 왔다. 이러한 기본계획들로부터 제시된 다양한 정책들 중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정책들도 있고 미흡한 정책들도 있지만, 그동안 추진되어 온 국가교육정책들의 성공적인 수행을 가로막는 원인에는 정책의 일관성 부족, 과거 정책에 대한 평가와 평가 결과의 환류 미흡 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제시되었고,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미흡, 중장기적 정책의 성과 분석 체계의 미흡 등이 제시되었다(박동열 외, 2020).

국가교육위원회법에 근거하여 수립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에 포함될 국가교육정책의 점검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반면, 국가교육정책의 모니터링(점검) 체계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2026~2035 국가교육발전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국가교육정책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국가교육정책의 모니터링 분석 틀을 구안함과 동시에 기존 국가교육정책 관련 정보의 집적화와 운영 체계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2. 문헌고찰 및 자문의견에 따른 시사점

가. 모니터링 사례를 통한 시행계획 이행상황 점검 설계에 주는 시사점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법 제11조(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과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16조(교육정책관계자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기초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증거기반 교육정책 모니터링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체계' 설계에 주는 시사점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구체적인 방안은 정책 제언에서 다루고자 한다.

첫째,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의 목적을 명확하게 결정해야 한다.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단순하게 추진 상황 및 실태를 이행상황 점검 목적으로 한 체제적 접근 모형을 활용할 것인지와 시행계획의 목적 또는 성과 달성 여부를 점검 목적으로 한 주제(가치) 접근 모형을 활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둘째, 접근 모형에 적합한 이행상황 점검 관련 정보의 수집, 관리, 가공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정보 입력 주체, 정보 신뢰성 확인 주체, 정보 결과의 활용 주체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셋째,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결과의 활용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 교육부의 학교 알리미와 같이 단순 정보의 제공 및 제한된 결과 활용 유형을 선택할 것인지, 또는 시행계획에 포함될 정보 요소들로 지표화하고, 지표화된 정보의 수집, 관리, 가공을 통하여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관련 정보와 점검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유형을 선택할 것인지 선택하여야 한다.

한편,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이행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교육정책 모니터링 체계를 분석한 결과에 기초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대상 정책의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다수의 정부 및 교육 관련 기관의 평가를 보면,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을 설정하고 있다. 이는 정부의 일자리정책지원 사업평가와 같이 해당 부처나 관련된 모든 정책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평가는 핵심이 되는 정책을 사전에 설정하고 그 정책을 기준으로 해당 영역을 평가하고 있다.

이 두 가지 경우의 차이를 보면, 모든 정책을 평가하는 경우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과 같이 소관 분야 정책의 중요도나 핵심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정책을 동일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경우, 정책영역에 대한 모니터링 목적이 아닌 개별 정책 평가를 통한 평가 등급 설정, 이를 통한 예산 통제나 물량 배정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경우가 해당 된다.

핵심이 되는 정책을 설정하는 경우는 교육, 사회문제, 경제 등과 같이 정책 영역을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적일 경우 주로 사용된다. 이 경우는 해당 영역을 대표하거나 영역 내에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정책을 선정한 후 해당 정책을 통해 전체 영역을 평가하는 형태로 활용된다. 국가교육정책의 모니터링 시에도 정책 영역을 설정하고 해당 영역의 핵심 추진 과제를 특정하여 평가하는 정책 선정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교육정책관계자협의회를 통하여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자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16조에 따라 교육정책관계자협의회 구성, 업무, 회의 소집 등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업무 수행 절차 등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관련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정부업무평가의 경우 관련 법령인 정부업무평가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부처의 상위 위상을 가지고 있는 총리실에서 주관하여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평가자인 각 부처나 지자체에서 평가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평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모니터링 등은 평가 대상 기관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여 정확한 평가나 평가에 대한 협조가 어려운 상황이다.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경우, 고용노동부를 제외한 다수의 부처에서는 평가의 목적이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부족하거나 예산이나 해당 정책의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 고용노동부에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 일자리 사업이 각 부처의 핵심 역할이 아니라는 점 등에서 평가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한계가 있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모니터링은 지자체에서 기본계획과 시행 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 해당 기본계획이 별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점, 지자체에서 기본계획에 대한 역할이나 수행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 해당 기본계획을 관리하는 부서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으로 인해 공감대 형성과 협조에 한계가 있었다.

국가교육정책 모니터링 시에도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부처, 지자체 및 교육청, 관련 공공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모니터링 대상이거나 협조 대상이 될 것이다. 따라서 모니터링 체계 설계 및 운영 시에 관계자 집단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우선시 될 필요가 있다.

셋째,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목적에 맞는 모니터링 지표 선정이 필요하다.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방식은 실태 및 현황 중심의 체제적 모니터링 접근 방식과 정책 목표 달성 중심의 주제(가치) 모니터링 접근 방식이 있다. 특히 주제(가치) 모니터링 접근 방식에서는 국가교육발전계획에 제시된 아젠더들이 시행계획에 어느 정도 정합하게 반영되어 있고, 시행계획의 정책 과제들의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지에 관한 모니터링지표 설정이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업무평가 중 주요 정책 평가는 이행 노력, 목표 달성, 효과성, 만족도 등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부 자체평가는 계획, 집행, 성과 달성, 정책 효과 등의 지표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경우 사업 영역에 따라 핵심이 되는 성과지표를 정량지표로 설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교육정책 모니터링 시 계획-집행-성과-만족도 및 효과와 같은 형태의 지표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 영역을 구분하여 합당한 정량 지표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 단, 정량목표는 교육 정책의 성격에 따라 핵심지표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영역별로 핵심이 되는 지표를 산출하여야 한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의 경우, 구직자 대상 사업과 재직자 대상 사업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에 특화된 정량 지표를 설정하고 있다. 국가교육정책의 경우도 학제별, 대상별 등 정책 성격에 맞는 지표를 선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교육정책 모니터링 지표 설정은 점검 목적, 성격, 기능, 지표 체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접근하여야 한다.

넷째,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과정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정부 정책은 1년 단위로 시행되며 다년 사업의 경우도 연차별 목표를 가지고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1년을 기준으로 평가의 시기와 시기별 평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정부업무평가의 경우, 매년 초 평가 지침을 배포하고 부처 등에서 평가 대상 정책을 선정한 뒤 연간 계획을 보고하며 연말에 평가가 이루어진다. 교육부의 자체평가는 상반기 평가를 통해 이행상황 점검, 미비점 도출 등이 이루어지며, 하반기 평가를 통해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이와 같이 국가교육정책의 모니터링 시에도 연간 수행 내용에 대한 단순 성과 집계가 아닌 초기 정책별 연간계획 수립 단계, 반기별 집행 상황 점검, 연말 성과평가 등 평가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계하여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이 아닌 적합한 수행을 위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평가 과정 설계시에는 평가를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나 운영 방식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타 평가의 사례를 보면 1)정부차원에서 관련 근거와 조직을 구성하여 평가를 관리하는 경우와 2) 프로젝트 형태의 용역 과제를 통해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다.

정부차원의 관리의 사례로 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평가를 보면,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통해 평가의 근거를 마련하고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에서 평가를 관리하고 있다. 실제 평가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일자리정책평가실에서 지표 개발·개선, 기초정량분석, 정성평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프로젝트성 평가의 사례로 교육부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면, 매년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모니터링 연구 용역을 발주하며, 선정 기관에서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설계와 실시, 피드백 등이 이루어진다.

정부차원에서 관리·운영하는 경우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표, 데이터 수집, 평가 및 피드백 등이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전담 조직 구성, 관리, 행정적 소요 등이 다수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단점이 있다. 프로젝트성 평가의 경우는 해당 년도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관이 자체적으로 평가 조직을 구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 제도에 대한 장기적 발전 등을 검토하는 데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다섯째,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정보 수집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정보 수집 단계에서는 누가 정보를 입력하고 신뢰성을 확보할 것인가와 어떤 절차를 통하여 정보를 관리할 것인가 등이 결정되어야 한다.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정책을 포함한 정부 단위의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 설정되어야 한다. 정부업무평가의 경우 부처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는 정책의 계획-작동-성과를 자체 보고서를 통해 평가위원의 정성적 평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나 정량적인 지표를 다수 활용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경우, 정량 지표 수집을 HRD-net이나 일모아 시스템 등을 통해 수집·분석 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 합동평가의 경우 영역별로 다수의 정량 지표가 존재한다는 점, 지자체 내에서도 참여하는 부서가 다양하는 점, 각 지자체의 평가 정보를 타 지자체에서 확인하고 상호 검증한다는 점 등의 특성으로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VPS: Virtual Policy Studio)을 갖추고 시스템 상에서 데이터를 수집·관리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 합동평가의 경우 입력한 데이터나 평가 내용을 타 지자체에서 열람하고 사실관계나 적합성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제기된

이의에 대해서는 영역별 평가위원이 이상 여부를 판단하여 이의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여 최종 평가자료로 활용한다.

반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모니터링은 제대로 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고 보고서나 엑셀 등 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어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 정제, 데이터 오류에 대한 확인 등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국가교육정책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각 주체별로 정책의 상황이나 성과를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시스템에서는 지표별로 입력값의 기준 설정, 데이터 기준 및 단위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 통일성 있는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NHRD-Net의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국가교육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조사 점검에 필요한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1) 국가교육위원회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른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시행 계획 수립시 관련 정보의 생성, 가공, 2차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쌍방향적 고객 지향 정보 시스템 구축을 고려해야 한다. (2)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정책 동향과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소식지(가칭)'를 통해 국민들에게 국가교육정책에 관한 기초통계 정보 및 실증 분석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미래국가교육포럼(가칭)을 통해 중장기 국가교육 정책의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3) 대한민국 교육 정책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중장기 교육정책의 모니터링 및 성과 체계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교육정책 관련 정보 또한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중앙부처, 지자체의 정책자료, 보도자료, 업무 추진계획, 사업별 추진계획 등과 같은 국가교육 정책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제공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4) 교육 정책 영역별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창출하는 통계 DB 등을 활용하여 중장기 국가교육정책의 수립과 정책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 내부 조직의 확대와 함께 외부 연구기관간의 네트웍을 강화해야 한다. (5) '중장기 국가교육정책'과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다양한 네트웍을 활용하여 시의성 있는 해외 교육훈련 정책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자체의 뉴스클리핑 서비스 등 홍보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결과의 활용 방안 설계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평가는 상벌적 의미에서 시행되며, 정책 평가의 경우 결과에 따라 예산 증감, 담당자의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활용된다. 정부업무평가 중 특정평가의 경우 기관별로 등급 공표,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 업무유공자 포상 등을 실시하며, 미흡한 경우 개선·조치 계획을 수립·이행하며, 국무조정실에서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경우 평가 결과를 우수·양호·개선·감액의 4개 등급으로 구분하며, 우수등급 사업은 차년도 평가 유예, 감액등급 사업은 차년도 예산 감액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반면 평가의 목적이 아닌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우수사항과 미흡사항을 점검하고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는 목적으로 활용한다.

국가교육정책 모니터링의 경우, 상벌의 목적이 아닌 정책의 모니터링과 계획 이행 정도 확인이 목적일 경우 평가 결과에 따라 정책 영역 및 각 정책별 우수·미흡 사항을 점검하여 문서화하며, 각 지표별로 평가 결과를 정리하여 종합 분석과 해당 정책 담당자 안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류체계 속에서의 결과 활용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한편,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의 공약 및 실천 과제 분석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단계에서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의 매년 실천과제들과의 정합성과 연계성을 확보해야 한다. 만약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매년 실천과제들과의 정합성이 떨어진 시행계획이 수립된다면,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업무는 매우 형식적으로 관리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의 공약 또는 실천 과제의 모니터링 업무는 제시된 공약 및 실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를 지정하고 실천 과제별 예산을 투입한 후, 지정된 부서가 지속적으로 실천 과제를 모니터링하고 문서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효과적인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을 위하여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의 자체 평가 절차에 따라 자체적인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실시하고 제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은 매년 '성과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자발적으로 실천과제별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업무 또한 매년 '성과관리계획'에 따라 자체적인 점검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행상황 점검 대비 별도의 자체 모니터링 점검 절차를 수행하도록 하기 보다는 현재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자체평가(점검) 절차에 포함하여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지표 또는 기준(정보요소)은 현재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표 및 정보요소를 활용하도록 하여,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예를들면, 교육부는 계획수립의 적절성, 집행과정의 충실성, 성과목표달성, 정책 효과를 평가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정책의 가치성, 집행의 충실성, 정책의 효과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업무의 추가는 인원이 충원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할 때, 업무 담당자들에게 업무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이행상황에 관한 지표 또는 기준을 현재 활용되고 있는 성과지표 등으로 설정하는 것은 국가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일선 담당자들에게는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이를 위하여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지표를 '필수핵심지표'와 '자율지표' 형태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필수핵심지표'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의 핵심 아젠더들을 점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표로 제시하고, 그 외의 아젠더들은 '자율

지표'형태로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이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피드백 단계 포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현 국가교육위원회법에 따르면,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만, 공개 목적, 공개 대상, 점검 결과의 활용, 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에서 교육정책관계자협의회를 구성하여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및 그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다. 위에서 제시한 이행상황 점검 결과 공개 목적, 대상, 결과 활용, 이의신청 제기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나. 심층면담조사를 통한 시행계획 이행상황 점검 설계에 주는 시사점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수립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터하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작성한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국가교육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에 관한 전문가의 인식 및 요구를 분석하기 위하여 유아교육정책, 초·중등교육정책, 고등교육정책, 직업교육훈련정책, 평생교육정책, 과학기술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 법학 등을 전공한 전문가 패널 29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개발하고 이에 터하여 심층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앞에서 제시된 심층면담 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국가교육위원회가 준비해야 할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체계 설계시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업무의 효율성과 관련 참여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현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1조 7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게시하게 되어 있지만, 이행상황 점검의 구체적인 목적, 점검 대상, 점검 절차, 점검 기준, 점검 결과의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조항들이 하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할 때,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점검에 대한 참여 등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교육발전계획과 관련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상황 점검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단계의 필요성과 노력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매년 시행계획 수립을 담당할 중앙부처의 담당과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조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인력 양성 및 활용 관련한 중앙부처의 재정지원사업 담당과를 파악하였고, 광역 자치단체 수준에서 인력 양성 및 활용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조직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할 '매년 시행계획'의 담당 예상 조직을 파악함으로써,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교육위원회간의 '매년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업무' 수행의 협력 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만,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교육위원회간의 '시행 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절차'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 국가교육위원회법에는 수립된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관련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관한 계획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할 '매년 시행계획'의 목적과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의 목적 등이 명확하지 않다면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셋째, 국가교육정책 중에서 핵심적인 아젠더 중심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영유아단계부터 고령자까지의 전 생에 걸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핵심 아젠더가 구안되고 사회적 숙의 과정을 거쳐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이 수립될 것이다. 이와 같이 방대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터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직과 예산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결국 국가교육위원회의 주요 업무인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에 관한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조직의 신설과 인원의 확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육발전총괄과, 교육과정정책과, 참여지원과 이외에 정책점검조사과(가칭)를 신설함과 동시에 앞에서 말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조사분석팀', '시행계획점검팀', '점검정보관리팀'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의 5개년 기본계획과 달리 10년간 추구해야 할 국가교육정책 비전과 아젠더를 발굴하고, 발굴된 비전과 아젠더에 따라 중앙부처의 5개년 계획과 매년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할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직 신설 및 확대가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국가교육위원회가 '매년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어떤 목적과 절차와 기준으로 점검할 것인지에 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이행상황 점검 업무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서 제시된 비전, 중장기 발전 방향, 주요 아젠더 등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정책 사업화되고 정책 수혜자인 개인 학습자에게 지원 및 긍정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는지를 점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이행상황 점검 업무의 궁극적인 목적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제시된 비전, 가치, 중장기 방향, 핵심 아젠더 등이 개인 학습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점검 결과의 환류작용을 통한 국가교육발전계획과 매년 시행계획 유지 및 조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세부 기준은 증거 기반한 시행계획 점검을 전제로 설정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적 숙의 과정을 거쳐 수립될 10년 국가교육발전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에 관한 이행상황 점검은 증거 기반 모니터링이 가능한 점검 지표를 개발하되, 되도록 기존 통계 DB를 활용

하여 해당 점검 지표가 잘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3.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체계 설계를 위한 과제

가.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체계 설계(안) 방향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1조와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관계자협의회를 통하여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장이 수립한 매년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16조에는 교육정책관계자협의회의 이행상황 점검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교육정책관계자협의회 구성 및 회의 운영과 기타 제반 사항 규정의 절차 등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국가교육발전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장의 시행계획 수립 및 수행 성과의 제출 등의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결정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도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여기에서는 시행계획의 점검(모니터링) 체계를 설계할 때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의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1안) 시행계획의 실천 과제별 운영 현황 및 실태 중심으로 한 체제적 모니터링 모형을 선정할 것인지와 (2안) 시행계획의 실천 과제별 적합성과 효과성을 모니터링하는 주제(가치)모니터링 모형을 선정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1안인 체제적 모니터링 모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정보공시제 중 '학교 알리미' 시스템과 같이 정책영역(이행상황 점검에서는 아젠더에 해당됨)별 주요 계획과 실적 파일을 탑재하여, 실천 과제별 이행상황 현황과 실태를 관리하고, 공개하는 '소극적 이행상황 점검 및 결과 공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2안인 주제(가치) 모니터링 모형의 경우에는 정부업무평가 시스템과 같이 이행상황 점검 지표 확정 → 이행상황 점검 계획 수립 → 관계행정기관 대상 점검 실시 → (점검 결과의 이의신청 제기) → 점검 결과 공개 → (점검결과의 설명회) 등의 절차로 추진하는 '적극적 이행상황 점검 및 결과 공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괄호 부분으로 되어 있는 이의신청과 점검 결과의 설명회 단계는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거 업무에 대한 정책적 판단과 의지가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며, 공론화를 통하여 단계의 필요성과 제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정보의 범위와 정보 관리 절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유사한 성과관리지표와 정보 관리 체계 등의 사례를 보면, 10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

계획에서 추구하는 비전, 목표, 아젠더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매년 국가교육시행계획에서 어떻게 적합하게 반영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뿐만 아니라 시행계획에서 제시된 실천과제들의 이행상황을 어떤 정보(예: 정량지표, 정성지표 등)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

1안인 체제적 모니터링 모형에서는 시행계획에 제시된 실천 과제별로 해당 기관에서 관리되는 양식에 따라 계획과 실적을 탑재하도록 하고, 이를 종합하여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결과로서 공개하는 방식을 들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국가교육발전계획에 제시된 비전, 목표, 아젠더와 연결된 관계 행정기관의 실천과제를 제시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에서 관리되는 실천과제 성과관리 계획과 실적(성과)의 파일을 제시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행정 업무를 최소화하고, 실천과제의 계획 및 실적에 관한 원자료 형태로 정보를 수립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2안인 주제(가치) 모니터링 모형에서는 위에서 제시된 현황 및 실태 관련 정보와 함께 국가교육발전계획의 비전, 목표, 아젠더와 연계된 중장기 성과지표와 관련된 정보 항목도 포함하여,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 정보를 수집, 가공, 창출 등을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중장기 성과지표의 예로는 ① 국가교육발전계획에 제시된 중장기 비전과 목표의 달성도, ② 국가교육발전계획에 제시된 아젠더의 이행 노력, ③ 시행계획의 실천과제별 정책 효과, ④ 시행계획의 실천과제별 국민 만족도와 국민 체감도, ⑤ 교육기획 균등 및 기초학력보장, ⑥ 학습비 부담 완화, ⑦ 학습자 역량 강화, ⑧ 교육여건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을 위하여 점검 준비단계, 점검 시행 단계, 점검 결과 공개 단계 등 체계화된 점검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점검 준비단계에서는 ①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체계(목적, 절차, 결과 활용 등)별 정책 의사결정을 확정하고, ② 시행계획 이행상황 검점 관련 지표와 정보 항목들을 결정하며, ③ 시행계획 이행상황 점검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④ 시행계획 이행상황 점검 관련 담당자들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며, ⑤ 시행계획 이행상황 점검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ISP 과제와 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⑥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의 이행력 제고를 위한 법, 규정 등의 개정을 추진하며, ⑦ 국교위 내부에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조직을 신설하고, 인원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점검 실시 단계에서는 ① 국가교육위원회법 16조에 제시된 교육정책관련협의회를 구성하고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에 관한 업무를 준비 수행하여야 하며, ②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관련 정보의 입력, 가공, 결과 공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고, ③ 국가교육연구센터와 연계하여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관련 Q&A 콜센터를 운영함과 동시에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결과의 공개 단계에서는 ① 이행상황 점검 (예비) 결과를 확정하고, 관련 행정기관에게 통보한 후 법령 개정을 전제로 하여 이행상황 점검 결과의 이의신청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 ② 이의신청 절차를 완료한 후 점검 결과를 국가교육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③ 제도 개선을 전제로 하여 작년 시행계획 이행상황 점검 결과와 차년도 계획 수립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나.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의 이행력 제고를 위한 추진 과제

국가교육위원회의 국가교육발전 이행상황 점검 관련 발생 가능한 쟁점 사항으로는 첫째,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라는 쟁점, 둘째, 국가교육위원회는 무엇을 목적으로 어떤 절차와 기준으로 이행상황을 준비할 것인가? 라는 쟁점, 셋째,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를 어떤 목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점검 결과를 제공하고 활용하게 할 것인가?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시되었다. 그 외에도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업무의 효율성과 참여 적극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적 개정 사항이 필요한가? 라는 쟁점 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쟁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추진과제 1.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을 준비하기 위한 조직을 신설하고,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원의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법에 따른 시행 계획 점검을 위한 '정책 점검조사과(가칭)'를 신설하고, 그 아래 정책조사분석팀과 시행계획점검팀, 점검정보관리팀을 두고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서면 자문 결과에 기초하여 조직에서 수행하여야 할 업무 분장을 조항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책점검조사과(가칭)의 주요 업무는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국내 및 해외 관련 정책 현황의 조사, 국가교육시행계획 점검 관련 제반 사항 수행,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의 영·유아 교육,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교육훈련고용, 평생교육, 특별지원 교육 관련 국내외 정책 및 집행 현황의 조사 등을 담당한다. 이를 위하여 정책점검조사과는 총괄하되, 관련 정부출연연구소 및 기업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국가교육연구센터' 와의 연계를 통한 '증거기반 정책 점검 및 조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책조사분석팀의 주요 업무는 첫째,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국내 및 해외 관련 정책 현황의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둘째,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협력 요청에 관한 사항을 다루며, 셋째, 국내외 교육 및 유관 통계 조사 자료의 수집·분석·정리하여 제공하고, 넷째, 유엔, 유네스코, 유럽연합,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의 교육 정책 관련 발간 자료의 수집·분석·정리하며, 다섯째, 교육 관련 정책 동향, 정책 집행 현황, 교육 연구 정보 수집 및 분석을 위하여 국가교육연구센터와의 협력 사항을 다룬다.

시행계획점검팀의 주요 업무는 첫째, 국가교육시행계획 점검을 위한 제반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둘째, 국가교육시행계획 관련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 업무을 담당하며, 셋째, 국가교육시행계획 점검 관련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넷째, 국가교육시행계획 점검 결과 분석 및 활용 계획을 수립 및 운영한다.

점검정보관리팀의 주요 업무는 첫째, 국가교육시행계획 점검 및 점검 결과 게시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며, 둘째, 국가교육시행계획 점검 업무를 위한 정보시스템 활용을 지원하고, 셋째, 국가교육시행계획 점검 관련 정보 관리 및 분석 업무를 지원하며, 넷째, 국가교육시행계획 점검 결과 문의 및 의견수렴에 관한 정보시스템 활용을 지원한다.

이를 위하여 정책점검조사과에는 과장을 두며, 각 팀에서는 최소 3명 이상의 인원을 배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권고한다.

추진과제 2.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터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근거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의 경우, 중앙부처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일반법에 해당한다. 국가교육위원회법에 따른 국가교육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실시되는 정책의 추진성과 등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정무업무평가의 직·간접적 대상이 되므로, 이미 두 법률은 내용적으로 연계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국가교육위원회법에 따른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그 결과 공개는 국가교육위원회법이라는 특별법적 성격의 법률에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정부업무평가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교육위원회법에 따른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과 그 결과에 기초한 방향으로의 수립과 실행을 권고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경우, 국가교육위원회법 및 동 하위법령에서 완결적으로 그러한 법적 근거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법에서 정하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 또는 평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는 ㉠ 이행상황을 점검 또는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만 두는 경우(여성경제활동법 제6조, 등대보존활용법 제5조,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법 제6조), ㉡ 점검 또는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과 함께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거나 시행계획 등에 변경·반영 요구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여성과기인법 제5조, 건강가정기본법 제17조), ㉢ 점검 또는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과 함께 시정조치 요구, 점검대상, 점검절차, 점검범위 등을 규정한 후, 구체적인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재난안전법 시행령 제29조의3, 저출산·고령화기본법 제21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입법사례 중에서 설문에서 의도하는 방안은 ㉢의 입법사례인 것으로 보이며, 이에 기초하여 교육위원회법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이 이미 국가교육위원회법에서는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과 결과 공개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제11조 제7항), 이러한 위임에 근거하여 규정된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8조를 위 ㉢의 입법사례를 참조로 개정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행상황 점검결과를

반영한 개선의견 통보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행정적 의무를 수반하는 내용으로서 법률에서 규정함이 적절한 것으로 보여,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1조 제8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가교육위원회법(현행)	국가교육위원회법(개선안)
제11조(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① 위원회는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교육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⑦ (생략) **(신설)** ⑧ 그 밖에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① 위원회는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교육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⑦ (생략) **⑧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7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반영한 개선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현행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8조를 위 ㉢의 입법 사례를 참조로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현행)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개선안)
제8조(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른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결과 공개) ① 생략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추진실적을 제출받은 해의 3월 31일까지 관계행정기관의장등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를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제8조(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른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결과 공개)** ① 생략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 **및 개선의견**을 추진실적을 제출받은 해의 3월 31일까지 관계행정기관의장등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를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선의견을 통보받은 관계**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현행)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개선안)
	행정기관의장등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개선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③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장 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거나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장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⑤ 그 밖에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방법, 범위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다.**

추진과제 3.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지속가능성과 증거기반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또는 시도교육청 평가와 연계하여 운영하고,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사회적 숙의 절차를 거쳐 10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교육발전계획에 터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교육위원회는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함과 동시에 점검 결과를 국가교육위원회 홈페이지에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앞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10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서 제시된 국가교육의 비전, 중장기 발전 방향, 교육 영역별 핵심 아젠더들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정책적 도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국가교육위원회법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도구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또는 시도교육청의 성과지표로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사회적 합의를 거친 국가교육 비전과 중장기 발전 방향, 교육 영역별 핵심 아젠더 등과 관련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정책 사업으로 신설 또는 기존 사업과의 연계 등의 형태로 협력할 수 있다.

또한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정보를 매년 관리함과 동시에 최소 10년간의 변화 추이 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국가교육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때, 어떤 목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게시할 것이며, 시행

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도 추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과정과 점검 결과 게시는 다음 두가지 유형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유형은 수립된 시행계획 내용과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정보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이 전체 파일을 등록하고, 이에 터하여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전문가를 구성하여 전체 파일의 내용을 개발된 이행상황 점검 지표에 따라 점검하는 절차이다. 결국, 개발된 이행상황 점검 지표별 전체 보고서를 제시하고, 점검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이행상황 점검 지표에 따른 정보를 찾아 이행상황의 점검 결과를 제시하는 형태이다.

두 번째 유형은 개발된 이행상황 점검 지표에서 요구되는 정보를 상세화한 후, 상세화된 정보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이 입력하고, 입력된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인한 후,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정량적인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도출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다.

제1장

서 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제2절 연구의 목적
제3절 연구 방법
제4절 연구 내용 및 절차

제1장 서론

제1절 연구의 필요성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교육 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하여 다양한 국가교육정책 관련 기본계획들을 범부처적인 종합적 접근 방법으로 수립하여 추진해 왔다. 이러한 기본계획들로부터 제시된 다양한 정책들 중에서 성공적으로 수행한 정책들도 있고 미흡한 정책들도 있지만, 그동안 추진되어 온 국가교육정책들의 성공적인 수행을 가로막는 원인에는 정책의 일관성 부족, 과거 정책에 대한 평가와 평가 결과의 환류 미흡 등이 가장 큰 원인으로 제시되었고, 정책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미흡, 중장기적 정책의 성과 분석 체계의 미흡 등이 제시되었다(박동열 외, 2020).

인력 양성 및 활용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정책들은 국무조정실에서 운영하는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서 해당 분야 전문가들로 국정과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정책을 평가하고 있고, 그 결과는 보고회[1] 또는 관련 부처에서 관리하여 왔다. 특히, 국정과제의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는 해당 정부에서 계획된 국정과제와 그 외 정부 업무에 관한 효용성과 책무성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반면, 한국 사회가 추구하는 사회적 가치와 비전 관점에서 중앙부처 및 지자체 업무뿐만 아니라 비제도화된 정책 과제들의 중장기적 성과를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하는 데에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하는 정부업무평가와 차별화되고 보완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중장기적인 국가교육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성과 분석 모형을 개발하고, 실제 적용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특히 정부와 정부간의 정책 지속성이나 해당 정부에서 계획된 국정과제 외의 전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정책 과제와의 일관성 등의 관점에서 국가교육정책의 모니터링 및 성과를 관리하는 모형 개발 연구도 많지 않고, 실제 적용한 사례도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에 기반한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시행계획의 이행 상황을 점검함과 동시에, 교육 정책에 대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의견을 수렴하고 조정하는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국가교육위원회법 제2조). 또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단계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교육·연구기관 및 교육 관련 기관·단체 등의 의견을 체계적이

1) "1961년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의 심사분석제도('61.9.~'81.10.)로 시작되었으며, 이후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제도('90.4.~'94.12.),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의 심사평가제도('94.12.~'98.2.),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 기관평가('98.3.~'06.3.)를 거쳐 국무조정실(국무총리실)의 정부업무 통합평가('06.4.~현재)의 형태로 현재까지 수행하고 있음."(허경선, 2016:1)

고 종합적으로 수렴하고, 매년 시행계획의 이행 상황을 정량·정성적인 증거에 기반하여 점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과 증거 기반 이행 점검을 위해서는 국가교육정책에 관한 정보의 집적화 및 관련기관들의 협력 강화 등이 필요하지만, 관련 정보 관리 기관 간의 장벽 등으로 증거 기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과 시행계획의 이행 상황 점검의 어려움이 예상된다.

미래 교육 환경이 급변하고, 융복합 사회 난제들이 급증함에 따라 개별 부처의 분절적 대응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교육, 복지, 노동 등 사회정책과 연계하여 국가교육정책 수립 및 매년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교육기본법에 따라 국가교육 정책의 대상은 모든 국민이며, 융복합 국가 난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 노동, 교육, 보건 등 사회정책과 연계하여 국가교육정책을 수립하고, 시행 계획을 정량·정성적 증거에 기반하여 점검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교육 정책 수립 및 운영 단계에서의 문제점은 중장기적 관점에서 교육 정책의 일관성 부족, 과거 정책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미흡 등이 제기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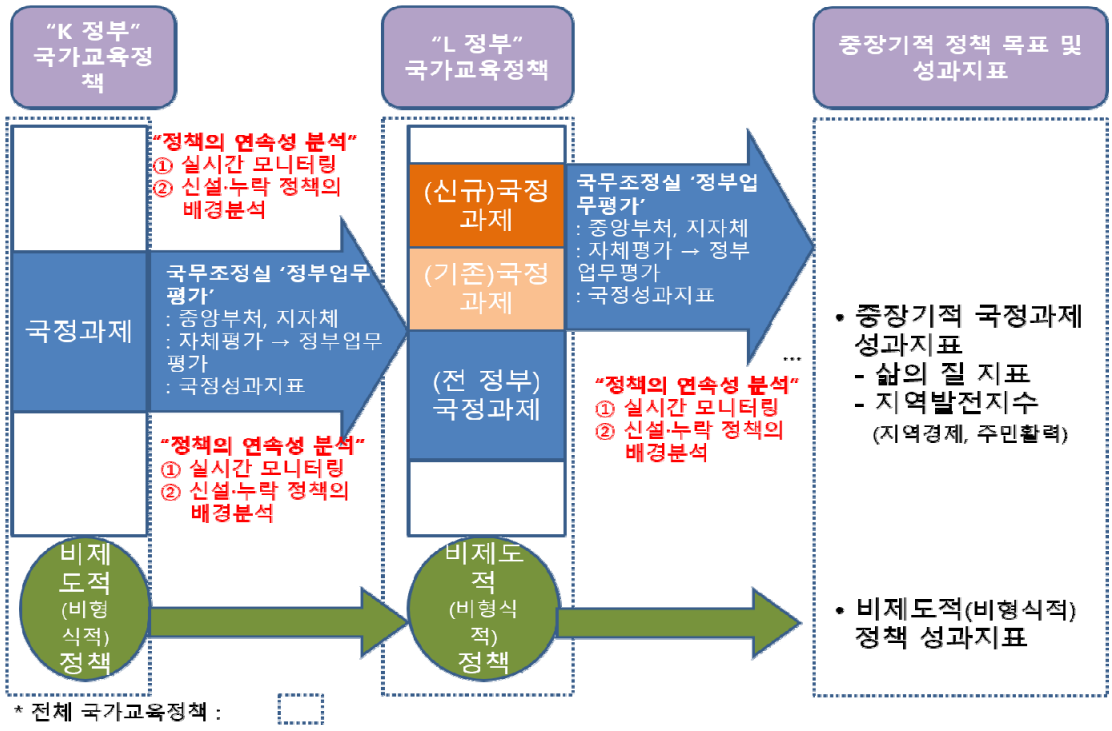

[그림 Ⅰ-1] 국가교육정책의 일관성 및 중장기적 정책 목표 및 성과지표(안) (박동열 외, 2019)

국가교육위원회 설립 취지에 맞도록 정부 교체에 관계없이 사회적 합의에 따른 국가교육정책의 '중장기적 모니터링 지표'를 설정하고 관리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특히 정부 교체에 따라 중점적으로 다루어지지 않은 국가교육정책들의 성과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점검) 체계 구축의 필요성이 강조된다. 중장기적 국가교육정책의 모니터링 지표는 제도적 관점뿐만 아니

라 비제도적 관점에서 이루어지는 정책도 포함하여야 한다. 이를 통하여 '제도 내 혁신 운동성의 강화와 함께 비제도권 내 혁신 운동의 제도화'라는 두 축으로 국가교육정책을 운영하고 모니터링할 필요성이 있다(박동열, 2022).

국가교육위원회법에 근거하여 수립될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에 포함될 국가교육정책의 점검 역할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는 반면, 국가교육정책의 모니터링(점검) 체계에 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상황이다. 「2026~2035 국가교육발전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을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점검하기 위하여, 국가교육정책을 조작적으로 정의하고, 국가교육정책의 모니터링 분석틀을 구안함과 동시에 기존 국가교육정책 관련 정보의 집적화와 운영 체계를 분석하기 위한 기초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제2절 연구의 목적

주요 연구 목적은 중장기적 국가교육정책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하게 구명함과 동시에 국가교육위원회의 주요 역할인 범부처적 국가교육정책의 매년 시행 계획별 이행 사항을 점검함과 동시에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와 차별화하여 국가교육정책을 모니터링(점검)할 수 있는 운영 체계를 설계할 수 있도록 설계 방향과 추진 과제를 도출하고자 함

첫째, 중장기적 국가교육정책의 개념과 범위를 구명한다.

둘째, 국가교육위원회의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른 시행 계획의 이행상황 점검을 명확하게 규명한다.

셋째, 중앙부처, 지자체에서 수행하는 정책 과제의 모니터링 운영 체계(조직, 예산, 절차, 법 근거, 평가지표 등)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한다.

넷째, 국가교육위원회이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른 시행 계획 이행상황의 모니터링(점검)을 위한 운영 모형(안)과 운영 과제를 도출한다.

제3절 연구 방법

1. 문헌 분석

중장기 국가교육정책 모니터링 설계를 위하여 국가교육정책의 개념을 살펴보고, 국가교육정책 모니터링 운영 체계 실태를 분석하며, 기존 통계 DB를 활용한 증거 기반 교육정책 모니터링 사례를 고찰하였다.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먼저 교육정책, 평생직업교육훈련, 국가인적자원개발 등 국가교육 관련 유사용어를 고찰하여 '국가교육'을 조작적으로 정의하였다.

그 다음으로 조작적으로 정의한 '국가교육'의 개념에 터하여 국가교육 관련 조직, 정책, 법 제도 등을 분석하였고, 국가교육의 정책적 범위와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른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점검 업무 조직의 신설 방안과 업무 분장을 도출하였다.

셋째, 구명된 국가교육정책의 개념과 범위에 해당되는 교육정책의 모니터링 체계(조직, 예산, 절차 등)와 운영 실태를 분석하여, 국가교육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체계를 구축하는데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넷째, 증거 기반한 국가교육정책 관련 모니터링 체계를 구상하기 위하여 기존 통계 DB 활용한 증거 기반 교육정책 모니터링 운영 사례를 분석하여, 국가교육 시행계획의 이행 사항을 점검하는 국가교육위원회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2. 국가교육정책 모니터링 운영 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전문가 자문 회의

문헌고찰을 통하여 도출한 국가교육정책의 개념과 범위의 적절성에 관하여, 중등교육/고등교육/평생교육/사회학 전공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특히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과 시행계획의 내용이 발표되지 않은 상황임을 고려하여, 전문가들이 점검 및 점검 결과 게시하는 과정에서 예상되는 쟁점들을 도출하였다.

또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른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체계를 구안하기 위하여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정책 평가인 정부업무평가 체계와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의 운영 사례를 분석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특히, 연구진이 구안한 국가교육정책의 모니터링 운영 체계(안)(조직, 예산, 절차, 법 제도 등)에 관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구 결과의 실현 가능성을 높였다.

3. 증거 기반 국가교육정책 모니터링 체계(안) 도출을 위한 FGI 실시

증거 기반한 국가교육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유아교육, 초등교육, 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직업교육, 법학 등의 학계, 교육현장, 행정가 등으로 구성된 29명의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국가교육정책 관련 심층집단면접을 실시하였다. 이 중에서 법학 전공자는 국가교육발전계획에 터한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의 효용성과 실현가능성을 높일 수 있도록 법 개정 조항 중심으로 자문 의견을 받았다.

전문가 패널 구성 기준으로는 전 생애 걸친 교육영역 관련 10년 이상 교육 경력 또는 기업정책, 초·중등·고등교육정책, 직업교육훈련정책, 고용정책, 법학 등 10년 이상 정책 연구 경력을 가진 전문가로 구성하였고, 패널 전문가의 소속 기관은 교육대학교, 일반고 교장, 직업계고 교장협의회, 전문대학교육협의회(고등직업교육연구소), 대학교육협의회(고등교육연구소), 과학기술정책연구소, 유아교육학회, 직업교육학회, 한국교원대학교, 평생교육학회,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분야 기업, 법제연구원 등이다.

심층면답조사는 문헌조사 결과와 전문가 자문 회의 결과에 기초하여 구조화된 질문지를 3월 25일부터 4월 1일까지 개발하고, 4월 2일부터 4월 11일까지 심층면담조사 패널을 구성하여 심층면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분석하여 최종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제4절 연구 내용 및 절차

1. 연구 내용

연구 주요 내용은 첫 번째 국가교육정책의 개념 정의 및 국가교육정책 운영 현황을 분석하고, 두 번째, 국가교육정책의 모니터링(점검) 체계 현황을 분석하며, 세 번째, 증거 기반 국가교육정책 운영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향과 추진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국가교육정책은 모든 국민이 전 생애에 걸쳐 교육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교육 주체가 기획, 실행, 모니터링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다만, 국가교육위원회가 수립하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은 국가교육정책과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범위는 사회적 합의에 따른 국가교육비전과 발전방향에 따라 핵심적인 아젠더 중심으로 수립되고, 또한 교육 주체만으로 해결할 수 없는 '국가교육난제' 관점에서 주요 아젠더도 포함되어야 한다. 결국,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는 모든 국가교육정책이 포함되지 않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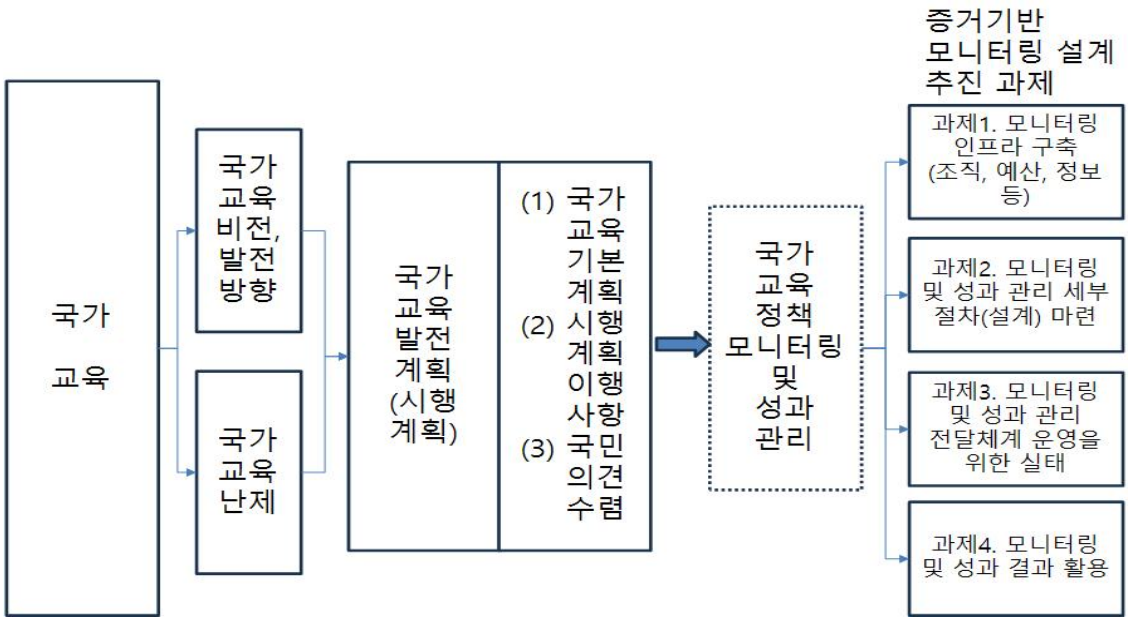

[그림 Ⅰ-2] 연구 주요 내용 및 흐름도

이 연구 범위는 모든 국가교육정책에 관한 이행상황을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수립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른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어떻게 이행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어떻게 게시할 것인가 이다.

이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주요 연구 내용을 간략하게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Ⅰ-1〉 연구 내용별 세부 추진 방법

구분		내용
국가교육정책의 개념 정의 및 국가교육정책 운영 현황 분석	메타 분석을 통한 국가교육정책의 개념과 정책 범위 도출	• 국가인적자원개발(NHRD: 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인적자본, 평생교육, 평생직업교육훈련 등의 개념 분석을 통하여 '국가교육정책'의 개념을 도출 • 선진국의 국가교육 개혁 정책 동향 분석하여 국가교육정책 개념 및 정책 범위에 설정시 시사점 도출 • 헌법의 개인기본권(교육권)과 교육기본법에 제시된 법적 현황 분석을 통하여 국가교육정책의 개념과 범위 규명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 체계와 평가지표 현황 분석	• 국정과제 관리를 목표로 하는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 운영 체계와 평가지표를 분석하고, 국가교육위원회의 시행 계획별 이행 사항 점검 체계와 국가교육발전계획의 모니터링 및 성과 관리 체계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 • 전 생애 단계별 정부 지원 사업의 성과 관리 체계 사례를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
	지자체의 정책(사업) 관리 체계 사례 분석	• 광역 자치단체와 기초 자치단체에서 제시된 교육 관련 공약들의 모니터링 및 성과 관리 체계 사례를 분석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모니터링(점검)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할 시사점을 도출
국가교육정책의 모니터링(점검) 체계 현황 분석	국가교육정책의 모니터링 체계 분석 틀 구안	• 앞에서 조작적으로 정의된 국가교육정책을 대상으로 모니터링 체계 분석틀(조직, 예산, 절차, 주요 모니터링 지표 등)을 종합 분석하여, 국가교육위원회 모니터링 체계 운영 모형(안) 설계에 필요한 시사점을 도출

구분		내용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및 정책 사업 모니터링 관련 법률 현황 분석	•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및 부처/지자체 교육 관련 정책 사업의 모니터링을 위한 법률 분석을 통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시행 계획별 이행 사항 점검을 위한 법적 개선(안)을 마련하거나, 시사점 도출
	국가교육정책의 모니터링 운영 실태 확인	•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 및 부처/지자체 교육 관련 정책 사업의 모니터링 계획 수립, 시행, 평가 및 결과 보고 등의 단계에서 당면하고 있는 도전과제를 파악함으로써, 국가교육위원회의 시행 계획별 이행 사항 점검과 국가교육발전계획 점검시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도출
	국가교육정책 관련 정부업무평가지표 관련 통계(DB) 운영 실태 분석	• 앞에서 제시된 국가교육정책의 정부업무평가지표, 모니터링 및 성과지표 등을 종합 분석하고, 기존 통계 DB를 활용한 사례들을 분석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이행 사항 점검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
증거 기반 국가교육정책 운영 모니터링 체계 구축 방향과 추진 과제 도출		• 증거 기반 국가교육정책 모니터링 운영 체계(안) 개선 방향과 과제 * 중앙부처 차원의 국가교육정책 모니터링 조직 및 제도 관련 개선 과제 * 지자체의 국가교육정책 모니터링 조직 및 제도 관련 개선 과제 • 증거 기반 국가교육정책 관련 데이터 관리 체계(안) 개선 방향과 과제

2. 연구 절차

이 연구는 문헌 고찰, 델파이 조사 및 FGI, 전문가 자문 회의 등을 거쳐 추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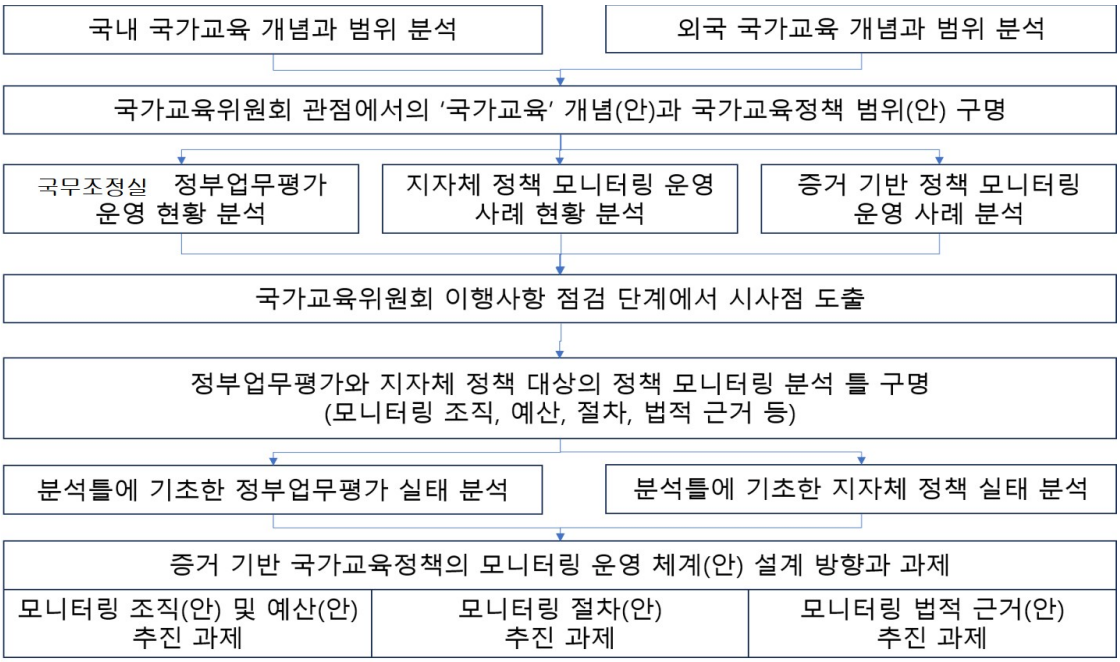

[그림 Ⅰ-3] 연구의 주요 절차

제2장

교육정책 모니터링 체계 현황 분석과 시사점

제1절 증거기반 국가교육정책 모니터링 현황 분석
제2절 시행계획의 이행력 제고 방안 모색을 위한 정부업무평가 체계 및 평가지표 현황 분석
제3절 시행계획의 이행력 제고 방안 모색을 위한 교육정책 모니터링 사례 분석
제4절 국가교육위원회의 시행계획 이행력 제고 방안 모색을 위한 시사점

제2장 교육정책 모니터링 체계 현황 분석과 시사점

제1절 증거기반 국가교육정책 모니터링 현황 분석

1. 국가교육정책(National Education Policy)의 개념

국가교육정책의 사전적 정의는 '국가나 권력에 의하여 지지되는 교육이념 또는 이를 구현하는 국가적 활동의 기본 방침이나 지도 원리'를 말하며, 교육 이념은 교육의 본질과 기본 목표에 관한 이상, 교육과 국가·사회와의 관련성에 관한 기본 개념, 그로부터 나오는 교육 운영의 기본 원리 등을 포함한다(교육학용어사전, 2024). 또한 국가인적자원개발(NHRD)은 '국가적 관점에서 인적자원의 효율적 개발과 활용을 위한 교육훈련, 기타 문화적 활동과 제도 개선을 포함하는 국가·사회적 제반 노력'을 의미한다(HRD 용어사전, 2024). 국가인적자원개발에서는 산업에서 요구하는 인력 개발과 함께 국민의 기초학력과 직업능력 향상, 바람직한 인성 및 가치관 함양을 위한 국가행정 및 재정 활동 등 국가적 제반활동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사전적 의미에서의 국가교육정책은 참여 주체간의 관계성, 목적이자 수단으로서의 교육, 제도 개선의 기본 방침, 실질적인 참여 주체의 노력 등이 강조되고 있다.

국가교육정책의 개념은 적용 대상의 특징이 포함되어야 한다. 헌법 제31조 1항에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되어 있으며, 교육기본법 제3조에는 '모든 국민은 평생에 걸쳐 학습하고, 능력과 적성에 따라 교육 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제시되어 있다. 또한 제4조에는 교육에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하게 교육 받을 수 있도록 교육 여건 격차를 최소화해야 하는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성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국가교육정책은 '모든 국민들이 전 생애에 걸쳐 교육받을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국가와 지자체가 보장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주요 업무는 교육 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교육제도 개선 등의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교육정책에 관한 의견 수렴 및 조정, 시행계획의 시행상황 점검 및 결과 공개(국가교육위원회법 11조 7항) 등의 업무로 제시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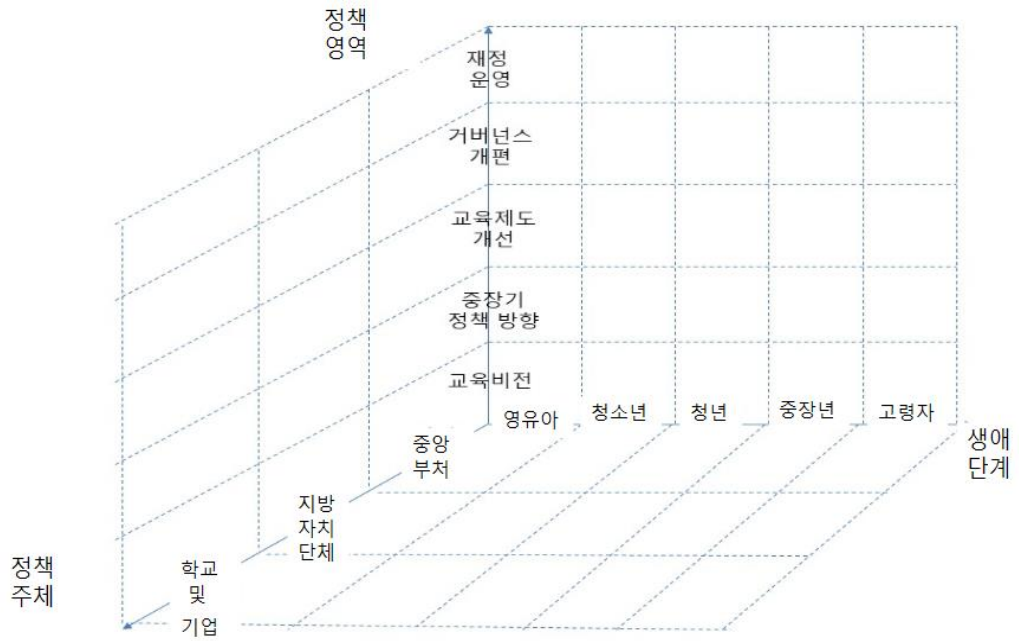

- 중앙부처 : 인력 양성 및 활용 관련 부처로, 교육부, 고용노동부, 과기부, 중기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등
- 중장기 교육제도 및 여건 : 학제, 교원정책, 대학입학정책, 학급당 적정학생 (거버넌스, 재정) 등
-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그림 Ⅱ-1] 국가교육정책의 개념과 범위(안)

한편, 평생직업교육훈련이 이루어지는 단계에 따라 (1) 교양교육으로서 초·중·고에서의 실과·기술·가정교육, 진로교육, 그리고 직업기초능력 개발에 관한 직업교육 정책, (2) 직업인 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중등직업교육 정책과 (3) 고등직업교육 정책, 그리고 (4)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과 직업전환을 위한 평생직업교육 정책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평생직업교육훈련 정책을 고찰할 때는 직업교육 정책 수립 배경과 주요 정책을 고려하여 (1)학생, (2)교원 (3)교육과정 개발 및 운영, (4) 시설 및 환경, (5)재정 (6)직업교육 관련 법률 및 지원조직 등의 지원활동으로 구분하여 제시할 수 있다(김신복, 이무근 외, 2017: 277-280).

박동열 외(2016)에서 개념적 평생직업교육훈련정책 분류로 생애발달단계, 평생직업교육영역, 참여 주체 등 세 개가 축으로 정의하였다. 생애발달단계 관점에서는 유아 및 초등학생, 중·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청년층, 성인(근로자, 자영업자), 중장년층, 노년층 등을 대상으로 규정하였고, 평생직업교육훈련 영역으로 시민교육, 직업교육훈련, 여가교육 등으로 설정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훈련 참여 주체로는 중앙부처(교육부, 고용노동부, 산자부, 중기부, 농림부, 문광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지방정부, 시민단체 및 노조, 기업 등으로 제시하였다.

국가인적자원개발 개념에 기반하여 평생직업교육훈련 정책을 인력 양성, 인력 활용, 인력 기반 등 3개의 대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평생직업교육훈련 대상, 영역 등에 따라 12개의 중분류와 28개의 소분류로 분류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II-1〉 평생직업교육훈련정책 분류 기준(안)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Ⅰ. 인력양성	Ⅰ-1 초·중등 교육	1-1-1 초등학교 교육지원 1-1-2 중등학교 교육지원 1-1-3 초·중등학교 공통 교육지원
	Ⅰ-2 고등교육(학부)	1-2-1 전문대학(기능대학) 지원 1-2-2 대학교 지원
	Ⅰ-3 고등교육(대학원)	1-3-1 대학원 교육 지원 1-3-2 차세대 등 첨단 핵심인력 양성 1-3-3 지식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1-3-4 연구개발 역량 강화
Ⅱ. 인력 배분·활용	Ⅱ-1 평생교육*	2-1-1 청소년 활동 지원 2-1-2 평생교육 지원
	Ⅱ-2 재직자 및 실업자 직업훈련	2-2-1 재직자 직업능력개발 2-2-2 실업자·취업예정인력 직업훈련
	Ⅱ-3 여성/군경/공공 분야 인력	2-3-1 여성 인력 2-3-2 군·경 인력 2-3-3 공공분야 인력
	Ⅱ-4 취약 계층 인력	2-4-1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인력 2-4-2 중고령층 인력
Ⅲ. 인력기반 조성	Ⅲ-1 인력 수급 및 정보생성·제공	3-1-1 분야별·중장기 인력수급전망 3-1-2 인력 통계·정보체제구축
	Ⅲ-2 인력 평가/인증 및 지식권리보호	3-2-1 인력 조사·분석·평가 3-2-2 인력 및 능력인증 체제 3-2-3 지식재산권 보호
	Ⅲ-3 지역인력	3-3-1 지역인력 추진체제 3-3-2 지역산업인력 양성 지원
	Ⅲ-4 산학협력	3-4-1 산학연 협력 체제 구축 및 활동 지원
	Ⅲ-5 국제협력	3-5-1 해외 인력 활용 3-5-2 국제 인력 양성·활용 지원

자료: 백성준 외(2006). 2006년도 인적자원개발사업 조사·분석·평가, p80 내용을 재조정함
*주: 평생교육은 과거 사회교육의 범위로 활용되었으며, 최종 분류 내용에서 삭제함

2. 증거기반 국가교육정책 모니터링 관련 선행연구 분석

가. 증거기반 정책(Evidence-based Policy, EBP)의 개념

증거기반 정책이란 일반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직관, 전통, 정치, 현존 관행 등에 따른 의견 기반 정책에 대비되는 개념으로, 과학적인 증거에 기초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한다. 정책과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구체적 정책의 내용과 그 효과가 연계될 수 있는 객관적 논리, 정책효과와 그

비용의 관계가 명시적인 인과 관계로 연계될 수 있는 정책추진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는 점에서 정책성과 및 효과를 체계적으로 제고하기 위한 접근방법이다(이병기, 박현욱, 2022). 최근에는 빅데이터 활용이 확대되면서 다양한 데이터를 연결·통합하여 유의미한 새로운 증거로 활용하는 시도가 확대되고 있다.

〈표 II-2〉 증거기반 정책에 대한 개념

연구자	내용
Davies(1999)	• 연구 개발된 가장 최상의 증거를 정책개발과 정책집행의 핵심에 적용함으로써 정책, 프로그램, 정부사업에 대해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돕는 장치나 접근방법론
O'Dwyer(2004)	• 과학적 탐구를 통해 도출되며 질적으로 보장된 연구에 기반한 것으로 정책의제를 설정함에 있어 직관, 전통, 정치, 현존 관행과는 차별되는 정책을 의미함
Sutcliffe & Court(2005)	• 증거기반 정책은 종국적인 목표를 직접 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정책과정에 정보를 풍부하게 만드는 담론과 방법론의 조합, 보다 합리적이고 활동적이며 체계적인 접근법
Laa Caze(2006)	• 의사결정에 있어 보다 포괄적이고 다소 논쟁거리가 없는 인식론적 기준의 수용을 의미하며, 객관적이고 경험적인 최상의 증거가 결정을 뒷받침하도록 사용된 경우를 의미함
AU Productivity Commission(2010)	• 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정책설계, 정책집행, 정책재정립에서 엄격하고 증명된 증거를 이용하는 과정
Head(2010)	• 엄밀한 과학적 연구의 결과를 정부의 정책과 프로그램 형성, 수립, 검토 과정, 그리고 더 넓게는 공공정책에 대한 논쟁에 이용하는 것
정성호(2019)	• 증거기반 정책결정은 다양한 정보를 연결 또는 통합하여 새로운 형태의 정보를 생성하여 이를 정책결정의 근거(증거)로 활용한다는 개념
박현욱(2022)	• 증거기반 정책은 디지털 기반에서 과학적으로 생산된 데이터(정부통계, 빅데이터 등)에 기반하여 정책을 추진하는 것을 의미함

자료: 윤광석(2016)을 바탕으로 수정 · 보완함

Gray(1997)는 보다 엄격한 방법론을 적용하여 실험과 같은 수단을 통해 도출된 증거가 좋은 증거로서 우선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한편, 순위가 6위인 '동료나 동종 업계 종사자의 의견'과 같은 증거는 증거기반 정책의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였다. 증거기반 정책의 쟁점과 한국적 맥락에서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한 한승훈과 안혜선(2021)은 국내 관련 연구들도 대체로 증거를 보다 넓은 범위에서 접근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정책 결정에 있어 높은 수준의 증거만 효과적이라고 보기 어렵고, 모든 정책 결정에 필요한 높은 수준의 증거를 확보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여 특정 증거에 한정하여 접근할 필요는 없다고 보았다. 그러나, 증거기반 정책이 기존 의견 기반 정책과 대비되는 개념이라는 점에서 과학적 지식, 즉 높은 수준의 증거를 우선순위에 두고 높은 수준의 증거를 확보하고 적용하고자 하는 노력은 지속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표 Ⅱ-3〉 Gray(1997)의 증거의 계층

순위	방법론	내용 및 예시
1	체계적 분석방법 및 메타분석	• 임의적 통제실험으로부터 도출된 전반적 데이터에 대한 체계적 분석방법 및 메타분석 • 보다 구체적인 방법론과 통계방법론을 분석에 적용
2	임의적 통제실험	• 명확한 방법론이 정해진 임상실험 • 연구참여자와 실험개입방법에 대한 임의성 • 실험에서 통제집단의 이용 • 전문적 논문집에 수록된 증거
3	사례통제적 연구와 횡단적 연구조사	• 임의적 실험방법을 거치지 않은 임상실험 • 전문적 논문집에 수록된 증거
4	비실험설계 및 질적 연구	• 질적 연구로부터 비실험적인 데이터를 도출한 증거 • 계량분석방법이 불가능한 영역은 연구분야에 따라 증거의 순위가 상향될 수 있음
5	전문가 의견조사	• 임상증거에 기반한 사회적으로 존중받는 전문적 권위자의 의견 • 위원회의 기술적 연구나 보고서 • 증거기반 절차의 체계적인 방법을 준용한 증거
6	동료나 동종 업계 종사자의 의견	• 개인적 경험이나 관찰, 임상실험에 대한 숙고를 통해 도출된 증거

자료: 윤광석. (2016). 정책수립시 데이터 활용 강화방안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3. 정책 모니터링 관련 선행연구

가. 교육·훈련 분야 증거기반 정책 모니터링 지표개발 연구

교육·훈련 분야 증거기반 정책 모니터링 지표개발 선행연구로는 통계개발원의 국가주요지표(교육·훈련 분야)(한준 외, 2017),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평생직업교육훈련 정책 모니터링 지표(박동열 외, 2019), 한국교육개발원의 국가교육지표 정책성과모형(박성호 외, 2020) 등이 있다.

통계개발원의 국가주요지표(교육·훈련 분야) 개발 연구를 수행한 한준 외(2017)는 교육 및 훈련을 인간의 지식과 기술, 태도와 행동의 변화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체계적, 의도적, 목적적 활동으로 정의하였다. 보다 구체적으로 교육 및 훈련은 일생에 걸쳐서 한 개인이 타고난 잠재가능성과 역량을 지속적으로 발달시켜감으로써 경제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성숙하고 독립된 시민으로 살아가도록 돕는 활동과 결과로써 이 연구에서는 교육 및 훈련 분야 체계를 '생애주기 기반 교육 및 훈련 체제 모형'으로 통시적 관점의 생애모형과 횡단적 관점의 체제모형을 통합하여 설정하였다. 생애주기 기반 모형은 어린이집/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평생교육의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형식교육과 비형식 교육 영역에서 참여하고 노동시장으로의 이행하는 과정을 보여주고, 체제 모형은 자원과 기회, 과정과 활동, 결과와 성과 단계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 국가주요지표 교육 및 훈련 분야는 교육훈련의 기회와 자원, 교육 및 훈련의 과정과 활동, 교육 및 훈련의 결과, 교육훈련의 성과 등 4영역으로 하위 지표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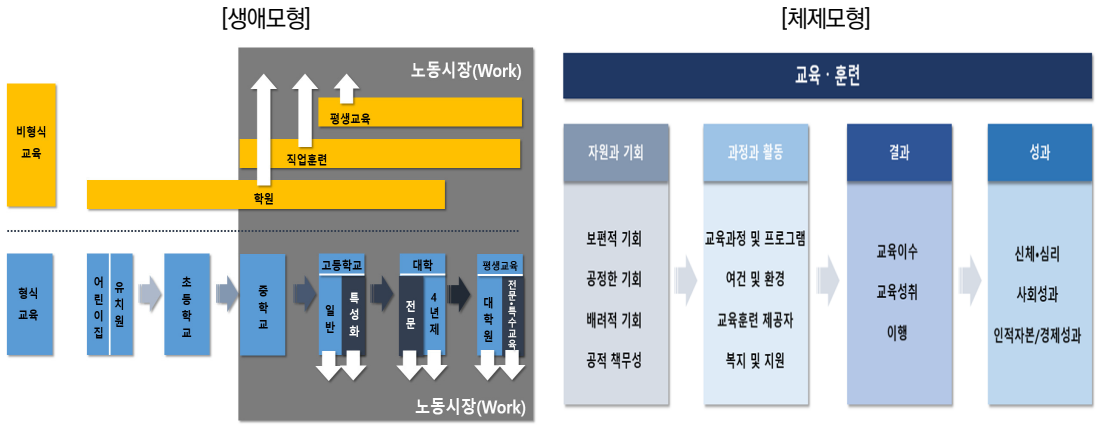

[그림 II-2] 한준 외(2017)의 교육 및 훈련 분야 프레임워크: 생애모형

자료: 한준 외(2017). 사회통계 프레임워크 작성 및 국가주요지표 체계 영역별 진단연구 III: 교육 · 훈련 통계 프레임워크 작성 및 국가주요지표 체계 진단연구. 통계개발원.

〈표 II-4〉 한준 외(2017)의 교육 및 훈련 세부 영역별 지표

영역	하위영역	의미와 지표
교육 · 훈련의 기회와 자원	보편적 기회 (기회의 보편성)	• 교육기관과 직업훈련기관에 참여하고 있는 인구의 비중 • 유 · 초 · 중 · 고등 교육기관 취학률 • 유 · 초 · 중 · 고 · 대학생의 사교육 참여율 • 평생교육 참여율
		• 직업훈련기관 참여율 • 재직자 교육훈련 참여율
	공정한 기회 (기회의 공정성)	• 교육훈련 참여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 및 훈련 기회가 제공되는 정도 • 교육 및 훈련 기관 참여 및 접근 장애요인 • 지역이나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등으로 인한 참여 기회의 제한
	배려적 기회 (기회의 보완성)	• 사회적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로서 보완적(compensatory) 기회를 제공하는 정도 • second chance, 사회배려 전형 • 학업중도탈락률(학업중단률) • 기초학력미달비율
	공적 책무성 (공공성)	• 국가(와 민간의) 공교육에 대한 투자 정도 • 학생 1인당 사교육 참여비용 • 학습자 1인당 평생교육 참여비용
		• 총 훈련비 대비 정부지원(자부담) 금액(비율) • 훈련보조금(훈련수당 등) • 사업주훈련 지원금(규모, 업종 등) • 사업주 훈련 정부 지원율(총지원금 대비 규모별, 업종별 지원비율) • 훈련 참여자 1인당 수강지원금(훈련별)
교육 및 훈련의 과정(process)과 활동	교육과정(curriculum) 및 프로그램	• 학습자/수요자 또는 노동시장 요구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미래사회를 대비하는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제공 여부를 측정함 • 사교육 목적 및 과목(공교육 보충/심화, 공교육 미 제공 프로그램) • 진로교육, 직업정보 및 준비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 학교생활 만족도(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우관계, 교사/교수와의 관계, 학교시설 및 설비, 학교주변환경, 소질과 적성개발, 전공, 전반적인 학교생활)

영역	하위영역	의미와 지표
	여건 및 환경	• 안전하고, 쾌적하며, 즐거운 환경 속에서 교육 및 훈련이 이루어지는 정도 • 교사1인당 학생 수 • 교육 및 훈련기관의 물리적, 심리적 안전(재난, 폭력, 욕설)
	교육훈련 제공자	• 교육 및 훈련 제공자의 효능감, 유능성, 전문성 •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교육 및 훈련 기관 풍토 • 긍정적 교사-학생관계
		• 긍정적 훈련인-피훈련인 관계
	복지 및 지원	• 장애인, 다문화, 학습부진 등 교육 취약집단을 위한 복지 • 보충/심화 수업이나 프로그램 제공 여부
		• 직업훈련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원격교육
교육 및 훈련의 결과 (Output)	교육이수	• 졸업률, 이수율
		• 직업훈련 이수율(수료율, 자격 취득율)
	교육성취	• TIMSS, PISA, ICCS 국제 학업, 사회정서, 시민의식에 관한 비교 조사결과
		• PIAAC 직업 관련 역량
	이행	• 교육의 효과(정성) : 공교육, 사교육, 평생교육, 직업훈련 • 중등 및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 교육-직업 불일치(mismatch)(IMD, WEF 정성문항)
		• 직업훈련기관 이수 후 신규 및 재취업률
교육훈련의 성과 (Outcomes)	신체 · 심리	• 삶의 질, 주관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 건강, 수명, 안전 등
		• 직업만족도, 소득만족도
	사회성과	• 사회자본(신뢰, 봉사, 기부, 시민의식, 정치참여) • 공정한 교육 결과
	인적자본/ 경제성과	• 교육투자수익률, 임금(상승률), • 취업률(특성화고, 전문대학, 실업자훈련)
		• 종사상 지위변동(직장내 변동 혹은 이직) • 고용유지율

자료: 한준 외(2017). 사회통계 프레임워크 작성 및 국가주요지표 체계 영역별 진단연구 Ⅲ: 교육 · 훈련 통계 프레임워크 작성 및 국가주요지표 체계 진단연구. 통계개발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의 평생직업교육훈련 정책 모니터링 지표를 개발한 박동열 외(2019)는 생애발달단계, 평생직업교육영역, 참여 주체 등 세 가지 축에 기반하여 평생직업교육훈련정책을 정의하였다. 생애발달단계 관점에서는 유아 및 초등학생, 중 · 고등학생(학교 밖 청소년), 청년층, 성인(근로자, 자영업자), 중장년층, 노년층 등을 대상으로 규정하였고, 평생직업교육훈련 영역으로 시민교육, 직업교육훈련, 여가교육 등으로 설정하였으며, 평생직업교육훈련 참여 주체로는 중앙부처(교육부, 고용노동부, 산자부, 중기부, 농림부, 문광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및 노조, 기업 등으로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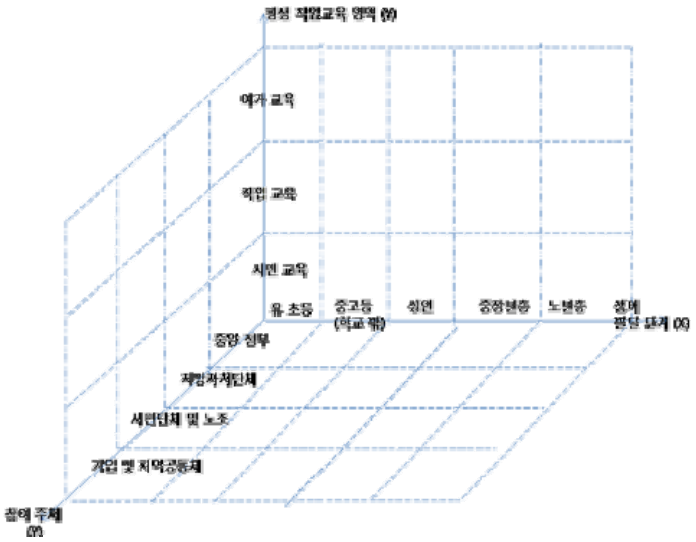

[그림 Ⅱ-3] 평생직업교육훈련정책의 개념도

자료: 박동열 외. (2020). 평생직업교육훈련 주요 정책 모니터링 및 혁신 방향과 과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이 연구에서는 BSC 모형에 의해 세부 성과지표를 개발하였는데, 성과지표는 보편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통계와 동일 척도로 반복적인 측정 자료를 누적할 수 있으며 평생직업교육훈련 외의 외적인 요인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지표로 구성하였다.

〈표 Ⅱ-5〉 박동열 외(2020)의 평생직업교육훈련 정책 모니터링 지표

영역		지표명	지표 산식	지표 의미	지표의 이해	출처
학습 지원	재정적 지원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당해 연도 공교육지출액/ 학생 수	공교육비는 학교교육에 대한 국가와 민간의 책무 수준을 보여주는 교육투입의 대표적인 지표임.	연구의 범위에 있는 중등, 고등교육의 정규교육에 중앙부처가 교육기관에 직접 지출한 총액과 학생 및 가계에 지원하는 장학금, 수업료 보조, 학교재단 등에 지원하는 정부이전금 및 시도교부금, 지방자치단체 전입금 등을 합한 금액	e-나라지표
		직업능력 개발 훈련 지원 예산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 예산 중 실업자 및 취약계층 지원 및 인력부족 분야 훈련예산의 비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원비 중 취약계층 및 인력의 공급이 필요한 부문에 대한 정부의 지원 노력을 볼 수 있음.	직업에 필요한 직무수행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훈련 중 실업자와 취약계층 훈련 및 인력부족 지원 예산의 변동비	고용노동부
	교육 여건 구축	전체 고등학교 대비 직업계 학교의 비율	(직업계 고등학교 수 / 전체 고등학교수) × 100	전체 고등학교 대비 직업계고교의 비율은 고교단계에서의 직업교육 역량을 위한 노력을 의미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고등학교의 수(실업고, 특성화고 등 네이밍이 다를 수 있음.)	교육통계 서비스
		고등교육 기관의 국공립 비율	(국공립고등교육 기관 수 / 총고등교육기관 의 수) × 100	고등교육기관의 공립화는 교육의 일관성을 제공하고 정책체계에 맞는 교육의 실시를 의미	교육통계서비스 '고등교육기관 개황'에서 모든 학교 중 공립학교의 비율	교육통계 서비스

영역		지표명	지표 산식	지표 의미	지표의 이해	출처
		공공평생직업 훈련 참여율	(금년도 평생직업훈련 참여자 수-전년도 평생직업훈련 참여자 수)/전년도 평생직업훈련 참여자 수 × 100	재직자훈련과 실업자훈련을 통해 개인의 기술 대응으로 고용기회 확대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재직자 및 실직자 훈련 등 공공직업훈련에 참여한 비율	고용노동부
		평생학습 참여율	직업목적의 평생학습 참여율	직업능력 향상을 위한 개인의 자발적 의사를 표현	평생학습 참여율 중 직업목적의 평생학습 참여율	통계청
정책 추진의 연속성		정책, 비전, 가치의 연속성	법, 제도의 지속성	비전, 가치, 목표 및 사업의 내용 등이 정부의 변화 없이 지속되어 일시적이고 일회성적인 정책이 아니라 연속성을 가지고 국민에게 봉사함을 의미	평생직업교육훈련의 비전, 가치의 연속성	-
		정책 내용의 연속성	사업 내용의 연속성		평생직업교육훈련 정책과 관련 법, 제도의 지속성, 목표와 우선순위의 설정 및 연속성 등을 판단함.	-
정책 인프라의 연속성		정책 예산 편성 및 운영의 연속성	전 정부 대비 예산 편성의 변화를 정성적으로 평가 1) 평생교육직업훈련 교육의 예산 변화율 2) 사업 예산의 연속성	전 정부의 사업 및 프로그램이 예산 편성에서의 사업 계획안에서 변동 없이 수행되는지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정책의 지속성을 평가할 수 있음.	예산 편성을 위해 5개년의 중기사업계획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의 예산이 지속되는지를 평가	-
		정책 운영 거버넌스의 일관성	정책 집행 운영조직의 일관성	정책을 집행하는 운영조직의 일관성은 정책추진을 원활히 하고 지속적인 성과관리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정책의 효율성을 높임.	정책 집행 운영조직의 일관성	-
개인 역량	학습자 역량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수 변동률	(금년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수-전년도 국가기술자격취득자 수)/전년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수 × 100	교육을 통한 개인의 학습능력을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지표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및 서비스 관련 자격증 취득자 수의 변동률	고용노동부·한국산업인력공단
		직업교육기관 졸업생의 취업률	(직업교육기관 전체 취업자 수/직업교육기관 전체 졸업자 수) × 100	학교교육의 효과가 노동시장으로 이행됨을 보여주는 지표로 평생직업교육훈련이 노동시장의 요구에 얼마나 적절히 대응하는지를 나타내는 지표	직업계고교 및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학생 중 취업한 학생의 비율	교육통계서비스
	교수 역량	교사의 수업 외 업무 부담률	(교사의 전체 근무시간 중 순수 수업시간을 제외한 비율)	교육환경과 교수의 근무환경의 개선을 나타낼 수 있는 지표	OECD 평균과 비교를 통해 한국교사의 업무 부담률 평가	OECD
		교사 1인당 학생 수	금년도교사 1인당 학생수		매년 교사 1인당 학생수의 변화	교육통계서비스

영역		지표명	지표 산식	지표 의미	지표의 이해	출처
		교사의 직무 만족도	OECD 만족도 사용	교사들의 직업과 관련된 일을 수행하는 데서 오는 충족감을 나타내는 지표	OECD가 주관하는 교수-학습 관련 비교조사치 사용	OECD
	정책 입안자 역량	공무원의 개방형 직위 임용 추이	(외부임용자수/ 직위 지정 수) × 100	외부전문가 활용을 통한 적극적인 행정역량을 나타내는 지표	개방형 직위제도를 통해 대한민국 공무원으로 임용되는 현황	e-나라지표
		공무원의 연수 참여율	(교육 및 연수 참여자 수/전체 공무원 수) × 100	개별 공무원의 직무향상을 위한 기관의 제도적 노력을 나타내는 지표	공무원의 역량개발을 위한 기본교육, 전문교육, 국외 연수의 참여자 수의 비율을 나타냄.	인사혁신처
개인 삶의 질	고용 및 임금의 안정성	고용률	취업자 / 15세 이상 인구 × 100	교육역량 강화는 실제 취업으로 이어지게 되고 소득의 발생으로 삶의 질이 향상됨.	생산가능인구(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특정 시점에 취업하고 있는 사람들의 비율	통계청
		실업률	실업자 / 경제활동 인구 × 100	다양한 직업교육훈련 및 실업자 재취업교육 등으로 실업률의 감소를 위한 노력	경제활동인구 중 실업자의 비율	통계청
		근로자 평균 근로 소득	전체 근로자 월급여액 / 소비자물 가지수 × 100	지속적인 평생직업교육훈련 기회의 강화는 근로자 평균소득의 증가로 이어짐.	임금근로자(상용, 임시, 일용 근로자)가 근로의 대가로 지불받는 소득의 월평균	통계청
		비정규직 비율	비정규직 수 / 전체 임금근로자 수*10010)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임금, 사회보험 및 근로복지 측면에서 낮은 대우를 받고 있어 평생직업교육훈련 기회 제공 및 근로여건 개선을 통해 삶의 질 향상	경제활동인구 중 한시적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의 비율	통계청
		일자리 질	고등교육 이수자(만 24~64세 인구 기준) 중 관리·전문·기술직 비율 또는 각각의 비율로 비교	실제 대졸자의 취업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 등 일자리 간의 부조화 발생. 이에 대한 인식으로 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정책 필요	고등교육 이수자 비율과 관리·전문·기술직 비율	통계청 경제활동 인구조사
개인 삶의 질	주관적 웰빙	삶 만족도	설문 데이터 마이닝	객관적인 삶의 조건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만족의 정도	개인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주관적인 만족 정도	통계청
		일자리만족도	15세 이상 취업자 중 현재 일자리에 대해 '매우 만족', '약간 만족'이라고 응답한 비율12)	일자리의 주관적인 만족도를 평가하는 지표로 근로생활의 주관적 평가	일자리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하는 인구 비율	통계청
		지역사회 만족도	설문 데이터 마이닝	지역사회 삶의 조건에 대한 개인의 주관적인 만족도	살고 있는 지역에 대한 소속감 및 지역사회에 대한 만족도	통계청

영역		지표명	지표 산식	지표 의미	지표의 이해	출처
	지역 발전성 인식도	지역 경제력 지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있음.	지역의 인구 및 기업체 수의 증가율 등 지역 내 경제 여건을 나타냄.	소득 수준, 산업발전 정도, 혁신역량, 인력개발, SOC(사회간접자본), 재정력 등 지역의 경제력을 총체적으로 파악하는 지표	국가균형 발전위원회
		주민 활력지수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조사하고 있음.	지역의 기반 생활환경의 편리성을 나타냄.	주거생활, 근로여건, 의료복지, 문화/환경 등 지역의 생활환경을 나타내는 지표	
	교육 기회 보장	학업 중단율	중학생(유예자 및 면제자) 수 + 고등학생(제적·중퇴·휴학자) 수 / 중고재직 학생 수 × 100	법적 정규과정의 이행은 국가의 평생교육훈련과정의 당위성을 증명하므로, 학업중단율 감소에 대한 노력이 요구되는 지표	정규 교육과정에서 제외되고 있는 중고등학생의 비율	교육통계 서비스
		계층 이동 가능성	설문문항 /데이터마이닝	교육이나 일자리를 통한 계층이동가능성에 대한 지표로, 사회 공정성을 평가할 수 있는 주관적 평가	교육이나 일자리를 통해 계층이동이 가능한 정도	통계청
		교육 격차 인식도	통계청 사회조사 활용 '귀하는 원하는 단계까지 교육을 받았습니까?'에 대한 설문조사	교육기회의 향유는 국민이 자신이 원하는 수준까지 학교교육을 받았는지를 나타내며 교육 열망이 높은 한국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끼침.	원하는 단계까지 교육을 받았는지의 여부	통계청
		일할 수 있는 기회	설문문항 경제활동인구 / 15세 이상 인구 × 100	산업구조 변화, 여성취업의 사회적 인식, 진학률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경제활동 참가율이 높다는 것은 노동시장이 건전함을 의미	경제활동 참여율로 나타낼 수 있으며, 15세 이상 인구 중에서 취업자와 구직자를 합한 경제활동인구의 비율	통계청

자료: 박동열 외. (2020). 평생직업교육훈련 주요 정책 모니터링 및 혁신 방향과 과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한국교육개발원의 국가교육지표 정책성과모형을 개발한 박성호 외(2020)의 연구에서는 교육체제 현황 및 교육 실태에 대한 모니터링과 교육정책이 지향하는 목표 및 가치에 대한 이행 정도에 대한 모니터링을 모두 충족하는 모형을 구축하기 위하여 국가교육지표체계를 '교육체제 모니터링지표'와 '교육성과 모니터링 지표'의 이원 구조로 설정하였다. 교육체제 모니터링 지표는 기존의 산재되어 있는 지표들을 종합적으로 모니터링하고자 하는 목적을 고려하여 IPO모형에 따라 투입 단계는 교육여건(4), 인적자원(2), 시설환경(3), 교육재정투자(5) 등의 하위 영역의 총 30개 지표로 구성하였다.

〈표 Ⅱ-6〉 박성호 외(2020)의 국가교육지표 체제모형 지표 구성

단계	영역	지표명	보육·유아교육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직업훈련	평생교육	출처/ 자료원	성과모형 공통지표
투입	[1] 교육여건	[1-1] 교사/교수/강사 1인당 아동/학생/ 학습자 수	O	O	O	O	O	e-나라지표	성과모형 [16-1], [16-5], [16-6], [16-10], [16-14],[16-19]
		[1-2] 학급/강좌당 학생/학습자 수	O	O	O	O	O	OECD 교육지표	성과모형 [16-2], [16-7]
		[1-3] 과밀학급 및 과소학급 비율		O				교육기본통계	
		[1-4] 주당수업시수		O	O			교육기본통계	
	[2] 인적자원	[2-1] 소지 학위별 교사/강사 비율	O	O		O	O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분석 자료집」	
		[2-2] 전임교원 확보율			O			교육기본통계	성과모형 [16-13]
	[3] 시설환경	[3-1] 학교 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등급 (C등급 이하 비율)		O	O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 분석자료집」/ 대학알리미	성과모형 [17-2], [17-8], [17-13],[17-15],[17-17]
		[3-2] 학교시설 내진 보강율		O				행정안전부, 내진보강대책	성과모형 [17-3], [17-9]
		[3-3] 컴퓨터/스마트기기 보급 비율		O				e-나라지표	
	[4] 교육재정 투자	[4-1] 연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O	O	O	O	O	OECD 교육지표	
		[4-2]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O	O	O	O	O	OECD 교육지표	
		[4-3] 공교육비의 정부부담 비율	O	O	O	O	O	OECD 교육지표	
		[4-4] 정부예산 대비 교육 예산	O	O	O	O	O	교육기본통계	
		[4-5] GDP 대비 고등교육에 투자된 연구개발비 비율			O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과정	[5] 교수-학습 과정	[5-1] 학생의 교과에 대한 흥미도		O				OECD, PISA	성과모형 [14-2]
		[5-2] 협력적 학습		O				OECD, PISA	성과모형 [14-3]
		[5-3] 교사효능감		O				OECD, TALIS	성과모형 [15-2], [15-6]
	[6] 구성원 간 관계	[6-1] 교사-학생 관계		O				통계청, 「사회조사」	
		[6-2] 교우관계		O				통계청, 「사회조사」	
	[7] 학교운영 참여	[7-1]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 현황		O				통계청, 「사회조사」	성과모형 [18-4]

단계	영역	지표명	보육·유아교육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직업훈련	평생교육	출처/ 자료원	성과모형 공통지표
결과	[8] 교육 이수	[8-1] 취(원)학율/참여율	O	O	O	O	O	e-나라지표 /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개인실태 조사」 /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 사업현황	성과모형 [12-1], [12-4], [12-11], [12-14],[12-18]
		[8-2] 학업중단율/중도탈락률		O	O			교육기본통계 / 대학알리미	성과모형 [12-6], [12-13]
	[9] 교육만족도	[9-1] 교육만족도(교육, 교원, 시설, 만족도 등 세분화)	O	O	O	O	O	통계청 「사회조사」	성과모형 [18-1], [18-3], [18-6], [18-10], [18-14]
	[10] 교육성과	[10-1]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교과별 성취수준 비율)		O				e-나라지표	성과모형 [12-9]
		[10-2] 청소년·성인 문해율(%)		O	O		O	국가평생교육 진흥원, 「성인문해 능력조사」	성과모형 [12-17]
		[10-3] 학생/성인 역량 (정의적 성취수준 포함)		O	O	O	O	OECD, PIACC	성과모형 [14-1], [14-2], [14-4], [14-5], [14-7], [14-8], [14-9], [14-10], [14-11], [14-12]
		[10-4] ICT 역량 (디지털 리터러시)		O	O		O	IEA, ICILS / OECD, PISA	성과모형 [14-6], [15-5], [15-9]
	[11] 사회적 성과	[11-1] 고등교육 이수율			O			OECD 교육지표	성과모형 [18-8]
		[11-2] 취업률 및 유지취업률		O	O	O		e-나라지표 /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취업통계연보」	
		[11-3] 교육단계별 성인의 고용률			O	O		OECD 교육지표	

자료: 박성호 외(2020). 증거기반 교육정책 모니터링 및 이행을 위한 국가교육지표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정책성과모형은 최근 10년 간 정부의 교육정책을 분석하여 핵심정책성과목표를 도출하여 교육기회 균등 및 기초학력보장, 학습비 부담 완화, 학습자 역량 강화, 교원 전문성 강화, 교육 여건 개선,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성과기반 정책 및 제도 운영 등 7개의 영역으로 구성하고 보육·유아교육,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평생교육, 직업훈련의 교육단계에 따라 지표를 설정하였다.

〈표 II-7〉 박성호 외(2020)의 국가교육지표 구성

구분	교육단계	정책성과지표	출처/자료원	체제모형 공통지표
교육기회 균등 및 기초 학력 보장 목표	보육·유아교육 (3)	[12-1] 취원율(취약집단별)	e-나라지표	체제모형 [8-1]
		[12-2]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비율	e-나라지표	
		[12-3] 특수교육대상자 중 통합교육 원아 비율	교육부, 「특수교육실태조사」	
	초·중등교육 (6)	[12-4] 취학률(취약집단별)	e-나라지표	체제모형 [8-1]
		[12-5] 진학률(취약집단별)	e-나라지표	
		[12-6] 중도탈락률(취약집단별)	교육기본통계	체제모형 [8-2]
		[12-7] 특수교육대상자 중 통합교육 학생 비율	교육부, 「특수교육실태조사」	
		[12-8] 사회통합전형 비율(고등학교 단계)	-	
		[12-9] 학업성취도 최소 기준 미달 학생 비율	e-나라지표	체제모형 [10-1]
	고등교육 (4)	[12-10] 기회균형 선발학생 비율	대학알리미	
		[12-11] 취학률(취약집단별)	e-나라지표	체제모형 [8-1]
		[12-12] 진학률(취약집단별)	e-나라지표	
		[12-13] 중도탈락률(취약집단별)	대학알리미	체제모형 [8-2]
	평생교육 (4)	[12-14] 평생학습참여율(배경집단별)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체제모형 [8-1]
		[12-15] 1인당 평생학습 참여시간(배경집단별)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12-16] 인구 1천 명당 평생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수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통계조사」	
		[12-17] 문해율(최소기준 미달 비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성인문해능력조사」	체제모형 [10-2]
	직업훈련 (2)	[12-18]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배경집단별)	고용노동부, 직업능력개발사업현황	체제모형 [8-1]
		[12-19]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교육 참여율	여성가족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학교 밖 청소년 실태조사」	
학습비 부담 완화 목표	보육·유아교육 (2)	[13-1] 가구당·유아당 영유아 보육·교육비 지출액	보건복지부, 육아정책연구소 「전국보육실태조사」	
		[13-2] 유아 1인당 보육·교육 기관/프로그램 참여 시간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통계」	
	초·중등교육 (6)	[13-3] 초·중등교육 교육비 지원 학생 비율	교육부 보도자료	
		[13-4] 초·중등교육 교육급여 1인당 지급 금액	교육부 보도자료	
		[13-5] 교육복지지원 정책사업비 비율	지방교육재정알리미	
		[13-6] 초등학교 방과후/온종일 돌봄교실 참여 학생 비율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통계」	
		[13-7] 학생 1인당 사교육비	통계청, 교육부, 「초중고사교육비조사」	
		[13-8] 학생 1인당 사교육 참여 시간	통계청, 교육부, 「초중고사교육비조사」	

구분	교육단계	정책성과지표	출처/자료원	체제모형 공통지표
	고등교육 (4)	[13-9] 국가장학금 수혜 학생 비율 및 1인당 장학금액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통계」	
		[13-10]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비율 및 이용 학생 1인당 대출금액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통계」	
		[13-11] 연평균 등록금	대학알리미	
		[13-12] 대학생의 사교육비 부담 정도	통계청, 「사회조사」	
	평생교육 (2)	[13-13]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지원비 규모 및 예산 비중	부처별(혹은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13-14] 학습자 1인당 평생학습비 지출 금액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직업훈련 (2)	[13-15]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지원비 규모 및 예산 비중	부처별(혹은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13-16] 학습자 1인당 직업훈련비 지출 금액	-	
학습자 역량 강화	초·중등 교육 (6)	[14-1] 인지적 역량	OECD, PISA	체제모형 [10-3]
		[14-2] 비인지적 역량(교과흥미도, 학습동기, 교과효능감, 자아 신념 등	OECD, PISA	체제모형 [5-1], [10-3]
		[14-3] 협력적 문제해결력	OECD, PISA	체제모형 [5-2]
		[14-4] 글로벌 역량	OECD, PISA	체제모형 [10-3]
		[14-5] 민주시민역량	IEA, ICCS	체제모형 [10-3]
		[14-6] ICT역량	IEA, ICILS / OECD, PISA	체제모형 [10-4]
	고등교육 (3)	[14-7] 대학생 핵심 역량 수준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대학생 핵심역량 진단(K-CESA)	체제모형 [10-3]
		[14-8] 대학 졸업자의 성인역량수준	OECD, PIAAC	체제모형 [10-3]
		[14-9] 대학 졸업자의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력	OECD, PIAAC	체제모형 [10-3]
	평생교육 (2)	[14-10] 성인역량수준	OECD, PIAAC	체제모형 [10-3]
		[14-11] 성인의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력	OECD, PIAAC	체제모형 [10-3]
	직업훈련 (1)	[14-12] 직업기초능력평가 결과	교육부, 대한상공회의소, 직업기초능력평가	체제모형 [10-3]
교원 전문성 강화	보육·유아교육 (5)	[15-1] 전문학사 이상 보육교사 비율	보건복지부, 「보육실태조사」	
		[15-2] 교사효능감	-	체제모형 [5-3]
		[15-3] 학습동아리 및 자율연수 참여 비율	-	
		[15-4] 전문성 계발 활동 참여 비율/시간	-	
		[15-5] ICT활용 역량	-	체제모형 [10-4]
	초·중등 교육 (4)	[15-6] 교사효능감	OECD, TALIS	체제모형 [5-3]
		[15-7] 학습동아리 및 자율연수 참여 비율	-	
		[15-8] 전문성 계발 활동 참여 비율/시간	OECD, TALIS	
		[15-9] ICT활용 역량	OECD, TALIS	체제모형 [10-4]

구분	교육단계	정책성과지표	출처/자료원	체제모형 공통지표
	고등교육 (1)	[15-10] 교수 1인당 논문 수	대학알리미	
	평생교육 (2)	[15-11]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사 배치율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통계조사」	
		[15-12]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비율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통계조사」	
	직업훈련 (2)	[15-13] 진로진학상담 전담 교사 배치 비율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초·중등 진로교육현황조사」	
		[15-14] 진로전담교사의 업무 수행 수준 * 진로교육현황조사 내 업무별 중요성 인식 및 수행 수준	교육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초·중등 진로교육현황조사」	
교육여건 개선	보육·유아교육 (5)	[16-1] 교사 1인당 아동수	e-나라지표	체제모형 [1-1]
		[16-2] 학급당 아동수	-	체제모형 [1-2]
		[16-3] 교사의 행정업무 시간 비중	-	
		[16-4] 특수학급 설치 비율	교육부, 「특수교육통계」	
		[16-5] 특수교사 1인당 특수교육 대상 아동수	교육부, 「특수교육통계」	체제모형 [1-1]
	초·중등 교육 (7)	[16-6] 교사 1인당 학생수	e-나라지표	체제모형 [1-1]
		[16-7] 학급당 학생수	OECD 교육지표	체제모형 [1-2]
		[16-8] 교사의 행정업무 시간 비중	OECD, TALIS	
		[16-9]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비율	교육부, 「특수교육통계」	
		[16-10] 특수교사 1인당 특수교육 대상 학생수	교육부, 「특수교육통계」	체제모형 [1-1]
		[16-11] 교과교실 설치 현황	교육기본통계	
		[16-12] 교육 예산 중 ICT 예산 비중	부처별(혹은 교육부) 소관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고등교육 (5)	[16-13] 전임교원 확보율	교육기본통계	체제모형 [2-2]
		[16-14]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e-나라지표	체제모형 [1-1]
		[16-15] 사립대학 예산 대비 국고보조금 비율	대학알리미	
		[16-16] 대학재정지원사업비 예산 비중	대학알리미	
		[16-17]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대학알리미	
	평생교육 (2)	[16-18] 정부 예산 중 평생·직업교육 예산 비중	기획재정부, 「나라살림 예산개요」	
		[16-19] 평생교육사 1인당 학습자 비율	한국교육개발원, 「평생교육통계조사」	체제모형 [1-1]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보육·유아교육 (5)	[17-1] 기관 내 아동학대 발생률	보건복지부, 「아동학대연차보고서」	
		[17-2] 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등급(C등급 이하 비율)	-	체제모형 [3-1]
		[17-3] 시설 내진보강률	-	체제모형 [3-2]
		[17-4] 기관 내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 건수	학교안전공제중앙회	
		[17-5] 교권 침해 발생 건수	-	

구분	교육단계	정책성과지표	출처/자료원	체제모형 공통지표
	초·중등교육 (6)	[17-6] 학교폭력 발생율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학교폭력 실태조사」	
		[17-7] 전문상담교사 배치 비율	교육기본통계	
		[17-8] 학교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등급(C등급 이하 비율)	교육기본통계	체제모형 [3-1]
		[17-9] 학교시설 내진보강률	행정안전부, 내진보강대책	체제모형 [3-2]
		[17-10]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 건수	학교안전공제중앙회	
		[17-11] 교권 침해 발생 건수	시·도교육청 행정자료	
	고등교육 (3)	[17-12] 실험실습실 사고 건수	대학알리미	
		[17-13] 학교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등급(C등급 이하 비율)	대학알리미	체제모형 [3-1]
		[17-14] 전문상담사 배치 비율	-	
	평생교육 (1)	[17-15] 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등급(C등급 이하 비율)	-	체제모형 [3-1]
	직업훈련 (3)	[17-16] 전문상담사 배치 비율	-	
		[17-17] 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등급(C등급 이하 비율)	-	체제모형 [3-1]
		[17-18] 안전사고 발생 건수	-	
성과기반 정책 및 제도 운영	보육·유아교육 (2)	[18-1] 유치원·어린이집 학부모 만족도 (보육·교육, 교원, 시설, 관계 만족도 등 세분화)	-	체제모형 [9-1]
		[18-2] 보육·유아교육 정책 만족도	시·도교육청 행정자료	
	초·중등교육 (3)	[18-3] 학교교육 만족도 (교육, 교원, 시설, 관계 만족도 등 세분화)	통계청,「사회조사」	체제모형 [9-1]
		[18-4]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 현황	통계청,「사회조사」	체제모형 [7-1]
		[18-5] 초·중등교육 정책 만족도	시·도교육청 행정자료	
	고등교육 (4)	[18-6] 대학교육 만족도 (교육, 교수, 시설, 관계 만족도 등 세분화)	-	체제모형 [9-1]
		[18-7] 고등교육 정책 만족도	시·도교육청 행정자료	
		[18-8] 고등교육 이수율	OECD교육지표	체제모형 [11-1]
		[18-9] 일자리와 전공 일치도	통계청,「사회조사」	
	평생교육 (4)	[18-10] 평생교육 만족도 (교육, 강사, 시설, 관계 만족도 등 세분화)	-	체제모형[9-1]
		[18-11] 평생교육 정책 만족도	시·도교육청 행정자료	
		[18-12] 고등교육기관 25세 이상 성인학습자(재학생, 입학생) 비율	한국교육개발원, 「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18-13] 읍면동 단위 평생학습센터 설치 비율	-	
	직업훈련 (4)	[18-14] 진로·직업교육 만족도 (교육, 교원, 시설, 관계 만족도 등 세분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체제모형 [9-1]
		[18-15] 직업훈련 관련 정책 만족도	시·도교육청 행정자료	
		[18-16] 고등교육기관 일 병행 학습자 비율	-	
		[18-17] 직업 연계 학위과정 참여 학생 비율	한국전문대학 교육협의회	

자료: 박성호 외(2020). 증거기반 교육정책 모니터링 및 이행을 위한 국가교육지표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나. 사회 일반 증거기반 정책 모니터링 지표개발 연구

사회 일반의 영역에서 증거기반 정책 모니터링 지표개발 선행연구로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지표(정동열 외, 2017), 국회미래연구원의 미래사회 대응지표(민보경 외, 2021) 등이 있다.

한국고용정보원의 청년지표를 개발한 정동열 외(2017)의 연구에서는 청년고용지표체계를 노동시장을 기준으로 노동시장에 공급되는 청년인 인력 공급, 노동시장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인력 수요와 두 생태계가 만나게 되는 노동시장 매칭으로 구분하고, 이러한 환경을 둘러쌓고 있는 청년 인프라와 취업 이후 청년의 고용환경으로 구분하여 청년지표체계를 설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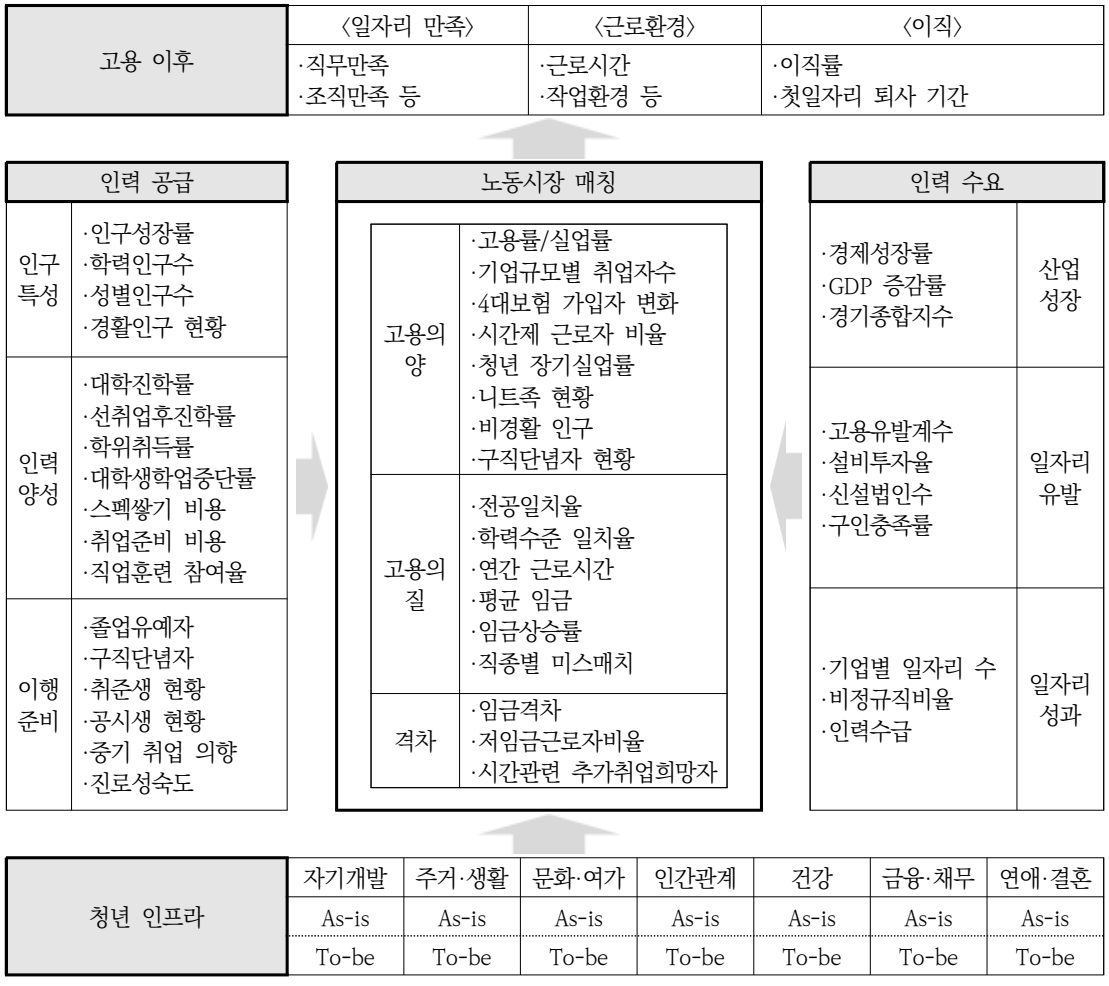

[그림 Ⅱ-4] 정동열 외(2017)의 청년지표체계

자료: 정동열 외(2017). 청년고용활성화를 위한 청년지표 체계화 및 수요자 맞춤형 전달 방안. 한국고용정보원.

청와대 일자리 상황판, 통계로 보는 노동시장, 국가주요지표, e-나라지표,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자료 등 국내 청년고용 관련 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영역별로 활용가능한 지표를 제시하였다.

〈표 II-8〉 청년지표 영역별 지표

대영역	중영역	지표명	통계지표명	조사명	기관명
인력수요	산업성장	경제성장률	경제성장률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GDP증감률	GDP(명목, 계절조정)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경기종합지수	국내총투자율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일자리유발	고용유발계수	취업·고용유발계수	통계로보는노동시장	한국고용정보원
		설비투자율	설비투자증감률		한국은행경제통계시스템
		신설법인수	지역별신설법인수	신설법인동향	중소벤처기업부
		구인충족률	구인인원, 구직건수	통계로보는노동시장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성과	기업별일자리수	구인인원	통계로보는노동시장	
		비정규직비율	비정규직	통계로보는노동시장	
		인력수급	인력부족현황	통계로보는노동시장	
인력공급	인구특성	인구성장률	인구수	인구총조사	통계청
		학력인구수	학력별인구수	인구총조사	
		성별인구수	성별인구수	인구총조사	
		경활인구현황	경제활동인구수	경제활동인구조사	
	인력양성	대학진학률	대학진학률,취업률	유초중등통계	한국교육개발원
		선취업후진학률		고등교육기관졸업자공공DB연계 취업통계조사	
		학위취득률		고등교육기관졸업자공공DB연계 취업통계조사	
		대학생학업중단률	대졸자 휴학경험자수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스펙쌓기비용	해당자료 없음		
		취업준비비용	성별 취업시험준비 유무 및 준비분야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통계청
		직업훈련참여율	청년층직업훈련경험자수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이행준비	졸업유예자	해당자료 없음		
		구직단념자	구직단념자	경제활동인구조사	통계청
		취준생현황	미취업기간활동별 미취업자수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통계청
		중기취업의향			
노동시장매칭	고용의양	고용률, 실업률	고용률, 실업률	경제활동인구조사	
		기업규모별 취업자수	기업규모별 취업자수	경제활동인구조사	
		4대보험가입자변화	사회보험가입률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시간제근로자비율	단시간근로자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청년장기실업률	성별미취업기간별미취업자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니트족현황	성별미취업기간활동별 미취업자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비경활인구	비경활인구	경제활동인구조사	
		구직단념자현황	비경활인구	경제활동인구조사	

대영역	중영역	지표명	통계지표명	조사명	기관명
	고용의 질	전공일치율	성별최종학교전공일치여부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학력수준일치율			
		연간근로시간	임금및근로시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평균임금	근로형태별 월평균임금 및 증감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임금상승률			
		직종별미스매치			
	격차	임금격차	규모별 임금 및 근로시간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고용노동부
		저임금근로자비율	근로형태별 월평균임금 및 증감	경제활동인구조사-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시간관련추가취업 희망자	시간관련 추가취업가능자(천명)	고용동향-고용보조지표	한국고용정보원
고용 이후	일자리 만족	직무만족	-	-	-
		조직만족	-	-	-
	근로 환경	근로시간	-	-	-
		작업환경	-	-	-
	이직	이직률	-	-	-
		첫일자리퇴사기간	첫직장근속기간	경제활동인구조사-청년층부가조사	
청년 인프라	자기 개발	as-is, to-be	-	-	-
	주거·생활	as-is, to-be	-	-	-
	문화·여가	as-is, to-be	-	-	-
	인간 관계	as-is, to-be	-	-	-
	건강	as-is, to-be	-	-	-
	금융·채무	as-is, to-be	-	-	-
	연애·결혼	as-is, to-be	-	-	-

자료: 정동열 외(2017). 청년고용활성화를 위한 청년지표 체계화 및 수요자 맞춤형 전달 방안. 한국고용정보원.

국회미래연구원의 미래사회 대응지표를 개발한 민보경 외(2021)는 국민 삶의 질 지표, 지속가능 발전지표 등과 비교하여 기존 지표체계를 정교화하고 글로벌 의제와의 조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며 효과적 모니터링 수행을 위해 '미래 적합성', '측정 가능성', '시계열 자료', '타당성', '신뢰성'을 고려하여 지표를 구성하였다. 미래 전략, 정책평가 등 분야 전문가의 의견을 종합하여 미래비전으로 '지속가능한 안심 사회', '다양성을 존중하는 협력 사회', '스마트 성장 사회'를 제시하고, 이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하였다.

〈표 Ⅱ-9〉 미래사회 대응지표

미래비전	핵심전략	모니터링 지표
스마트 성장 사회	기술혁신형 경제 전환	기술기반업종 창업 비중, GDP 대비 연구개발비, 연구개발인력, 과학기술인력, 대학연구 역량
	디지털 전환	디지털 교육인프라, 디지털 정보화-활용 수준, 국가미래준비지수
	성장둔화 및 기술요인에 따른 양극화 완화	순소득대체율, 상대빈곤율
	감염병 연구 및 의료기술 발전	감염병 관련 R&D, 감염병 연구역량
지속가능한 안심 사회	건강하고 인간다운 초고령 사회 구축	기대수명, 건강수명, 고령화대응지수, 국민연금 수급자 수, 노인 빈곤율
	탄소제로사회 전환과 그린인프라 구축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합대기환경지수,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생활폐기물 재활용률, 국민 환경의식
	사회적 지속가능성 제고 위한 출산 및 사회 환경 조성	국공립어린이집수용률, 취학 전 보육서비스이용률, 초등학교돌봄교육이용률, 경력단절, 육아휴직 수급자
	안전한 거주환경 조성 및 지역공동체 형성	범죄율(강도, 폭행), 야간보행 안전도, 사회재난 사망인구, 대인신뢰도, 이웃신뢰도
다양성을 존중하는 협력 사회	사회갈등 해결을 위한 공존형 사회시스템 구축	외국인이민(노동)자 포용도, 성 소수자 포용도, 남녀임금격차, 성불평등지수
	다양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교육체계 확립	일반학교 특수학급 설치 비율
	민주주의 발전 및 정치 개혁	거버넌스지수, 민주주의 수준 만족도, 부패인식 지수
	남북 간 격차 완화 및 사회통합	-

자료: 민보경 외(2021). 미래사회 대응지표 체계 및 모니터링 방안 연구. 국회미래연구원.

4. 국가교육정책 관련 DB 운영 실태

가. 교육 분야 DB 운영 현황

중앙행정기관이 국가정책 수립·점검 및 성과측정 등을 위해 분야별로 지표를 선정하여 모니터링하는 e-나라지표에서는 교육 분야 지표로 교육기회, 교육과정, 교육효과와 관련된 지표가 설정되어 있다. 지표는 대부분 교육 상황과 실태를 확인할 수 있는 체제적 모형과 관련된 지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표별 데이터는 1년 단위로 관리되고 있다(e-나라지표. 2024).

〈표 Ⅱ-10〉 e-나라지표 중 교육 관련 지표

대영역	중영역	소영역	지표명	부처
경제.사회	교육	교육기회	고등교육 규모	교육부
			고등교육시설 현황	교육부
			고등학교 유형별 현황	교육부
			대학 재정지원 사업 현황	교육부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현황	교육부
			만 3~5세 누리과정 지원율 및 예산 추이	교육부
			우리나라 초·중·고 학생의 사교육 현황	통계청
			유아교육 규모	교육부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	교육부
			초중등 교육시설 현황	교육부
			초중등교육 규모	교육부
			취학률 및 진학률	교육부
			특수교육 규모	교육부
			평생학습 참여율	교육부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현황	교육부
			학생 1인당 공교육비	교육부
			학자금 대출 현황	교육부
		교육과정	e-러닝(EBS고교강의, e학습터) 활용 현황	교육부
			교원 1인당 학생 수	교육부
			유학생 현황	교육부
			학교급식 실시 현황	교육부
			학교도서관 현황	교육부
		교육효과	IEA 학업성취도(TIMSS) 순위	교육부
			IMD 교육경쟁력	교육부
			OECD 학업성취도(PISA) 순위	교육부
			SCI 논문 발표순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UNDP 인간개발지수(HDI) 순위	교육부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교육부
			국내/외 박사학위 취득자 현황	교육부
			국민교육수준(학력별 인구분포)	교육부
			특수교육대상자 진학률/취업률	교육부
			학업성취도 평가(교과별 성취수준 비율)	교육부
			학점은행제 및 독학학위제 학위수여자 현황	교육부
		기타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 현황	여성가족부
			청소년 상담사/지도사 현황	여성가족부
			청소년 수련시설 설치현황	여성가족부
			학령아동 변동 추계	교육부

자료: e-나라지표. (2024.1.29.검색). https://www.index.go.kr/

교육 및 훈련과 관련하여 조사하고 공표하는 통계는 중앙부처에서는 주로 교육부, 보건복지부, 여가부가 주관하고 있으며, 연구기관 및 유관기관의 경우에는 한국교육개발원,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한국청년기업가정신재단,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한국사학진흥재단, 한국산업인력공단 등에서 주관하고 있다. 교육 분야에서 활용되는 통계는 교육 분야 외에도 복지, 사회, 기업경영, 고용, 문화·여가, 노동 분야까지 확대되어 있다.

〈표 II-11〉 교육 및 훈련 관련 통계 현황

주영역 (부영역)	통계명	승인연도	작성기관	작성 형태	작성 주기	지역 수준	모집단 분류	모집단 기준
교육	대학산학협력 활동실태조사	2016	교육부	조사	1년	전국	기관	대학
교육	진로교육현황조사	2007	교육부	조사	1년	전국	개인	전국 초·중·고
교육	특수교육실태조사	2008	교육부	조사	3년	전국	개인	특수교육 대상학생
교육 (복지)	초·중·고 사교육비조사	2007	통계청, 교육부	조사	1년	전국	개인	초·중·고 학생 및 학부모
복지	보육실태조사	2004	보건복지부	조사	3년	전국	가구, 사업체	0~5세 거주 가구
사회	청소년종합 실태조사	2011	여성가족부	조사	3년	전국	개인, 가구	만9~24세 청소년 및 주 양육자
사회	청소년매체이용및 유해환경실태조사	2006	여성가족부	조사	2년	전국	개인	초등학생 (4-6학년) 중·고등학생
사회	청소년상담지원현황	2006	여성가족부	보고	1년	전국	개인	청소년상담복지 센터이용청소년
교육	교육기본통계	1963	한국교육개발원	보고	반기	전국	기관	교육기관
교육	교육기관졸업자 취업통계조사	2004	한국교육개발원	가공	1년	전국	개인	졸업자
교육	국가영재교육통계	2012	한국교육개발원	조사	1년	전국	기관	영재교육기관
교육	평생교육통계	2006	한국교육개발원	보고	1년	전국	기관	평생교육시설
교육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2007	한국교육개발원	조사	1년	전국	개인	만 25~64세 성인
교육	한국교육종단조사 (패널)	2013	한국교육개발원	조사	2년	전국	개인	초5~고등학교 졸업
교육	성인문해능력조사	2014	국가평생교육 진흥원	조사	3년	전국	가구	만18세 이상
기업경영	기업가정신실태조사	2017	한국청년 기업가정신재단	조사	3년	전국	개인	만13세~만69세
교육	국내신규석·박사 학위취득자조사	2013	한국직업능력연구원, 교육부	조사	반기	전국	개인	신규 박사
교육 (고용)	한국교육고용패널조사	2004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조사	1년	전국	개인	고등학교2학년
교육	박사인력활동조사	2011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조사	5년	전국	개인	만15세이상 박사학위소지자

주영역 (부영역)	통계명	승인연도	작성기관	작성 형태	작성 주기	지역 수준	모집단 분류	모집단 기준
교육	다문화청소년패널조사	2011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조사	1년	전국	가구	다문화가족자녀
사회	아동청소년인권 실태조사	2009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조사	1년	전국	개인	초등학생(4-6학년) 중·고등학생
교육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사	2010	한국청소년 정책연구원	조사	1년	전국	개인	초1,초4,중1
문화、 여가	청소년방과후활동 수요및현황조사	2018	한국청소년 활동진흥원	조사	3년	전국	개인	초등학생(1~6학년), 중학생(1~3학년)
복지	고령화연구패널조사	2006	한국고용정보원	조사	2년	전국	개인	45세 이상의 중고령자
고용	고용보험통계	1997	한국고용정보원	보고	월	전국	사업체	사업장 및 근로자
고용	워크넷구인구직 및취업동향	2002	한국고용정보원	보고	월	시도	개인	구인업체, 구직자, 실업자
고용	청년패널조사	2007	한국고용정보원	조사	1년	전국	개인	만15-29세 청년
교육	사립대학재정통계	2013	한국사학진흥재단	보고	1년	전국	기관	사립대학 및 학교법인
교육	국가기술자격통계	2003	한국산업인력공단	보고	1년	전국	개인	-
노동	기업직업훈련 실태조사	2009	한국산업인력공단	조사	1년	전국	사업체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기업
교육	한국아동패널연구	2008	육아정책연구소	1년	전국	개인	개인	2008년 출생한 신생아 가구

자료: 한준 외(2017). 사회통계 프레임워크 작성 및 국가주요지표 체계 영역별 진단연구 Ⅲ: 교육·훈련 통계 프레임워크 작성 및 국가주요지표 체계 진단연구. 통계개발원. 수정 및 보완.

나. 국가교육정책 정보 모니터링 및 성과 관리 시스템 운영 사례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2001년부터 인재정책 정보 생성·제공을 위한 연구사업을 수행해 왔으며, 그 결과물로 국가인적자원개발종합정보망(NHRD-Net)을 구축 운영하였지만, 2019년을 기준으로 국가인적자원개발종합정보망(NHRD-Net)의 운영을 예산 미배정과 대내외적 정책적인 판단으로 아쉽게도 종료할 수 밖에 없었다. 종료되기 전까지 인적자원개발과 관련이 있는 교육, 노동시장 및 직업훈련, 자격 분야의 변화를 신속하게 파악할 수 있는 동향 및 통계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자료의 수집에서부터 가공·분석 및 제공까지의 일련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특히 2018년에는 정보취약계층인 장애인, 노약자에게도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웹 접근성을 강화하여 웹 접근성 품질 마크를 갱신하였고, 정부의 국정과제인 일자리경제, 평생·직업 혁신 등을 실현하기 위해 정부의 일자리 정책, 평생교육, 글로벌 트렌드에 따라 변화하는 직업의 정책변화 등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두고 다양한 수집정보를 통한 콘텐츠의 탑재, 메일링 서비스를 새롭게 개편하여 다양한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 정보 서비스를 제공하였으며, 이용자 편의성 제고를 위해 통합검색 환경 개선, 시스템 유지·관리,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시스템의 보완 개발 작업, 관련 부처 의견 수렴, 이용자 만족도 조사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그 결과 국가인적자원개발 관련 정책 수립 시 관련 정책의 유기적 연계를 통해 보다 나은 정책수립에 이바지하고, 인적자원개발 당사자인 국민에게는 알고 싶은 정보의 창고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얻었다.

국가인적자원개발종합정보망(NHRD-Net)의 주요 목적은 국가인적자원개발 정책 및 인재 양성과 관련된 주요 정책을 증거에 기반하여 심의·조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었다.

[그림 Ⅱ-5] 국가인적자원위원회 운영 메뉴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8). NHRD-Net 운영, p. 14에서 인용함

NHRD-Net은 사이트 소개, 인재개발동향, 인재개발자료실, 인재정책사업, 글로벌인재사업,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원센터, 국가인적자원위원회로 크게 7개의 대 메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용자들이 손쉽게 원하는 정보를 첨부파일까지 검색할 수 있도록 통합 검색이 가능하였다.

[그림 II-6] NHRD-Net 메인화면

위에서 제시된 NHRD-Net의 주요 메뉴 구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12〉 NHRD-Net의 주요 메뉴 구성

구분	하위 메뉴
사이트 소개	사이트 소개
	공지사항
인재개발동향	The HRD Review
	KRIVET Issue Brief
	정책동향
	연구동향
	지표로 본 동향
	해외동향
	HRD Daily
인재개발자료실	한국의 인적자원개발지표
	KRIVET 자료
	협력망

구분	하위 메뉴
	RHRD
	교수학습자료
	세미나자료
	관련사이트
인재정책사업	Best HRD
	미래인재포럼
	HRD 정책포럼
	사회정책포럼
글로벌인재사업	글로벌 인재포럼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원센터	인적자원개발위원회 지원센터
	인적자원개발위원회 네트워크
	자료실
국가인적자원위원회	회의안건자료
	기본계획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2018). 인재정책종합정보생성·제공사업,에서 인용함

국가인적자원개발종합정보망(NHRD-Net)은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인적자원정보센터에서 주축이 되어 구축하였다(장창원 외, 2001). 인적자원정보센터는 지표통계팀 3명, 조사분석팀 3명, 전산정보팀 5명으로 총 11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정보망 구축과 관련하여 지표통계팀은 정보자료 DB 구축에 포함될 콘텐츠를 제시하고, 조사분석팀은 정보자료 DB 구축 및 자료 분석을 담당하며, 전산정보팀은 DB구축 관련 전산 업무를 담당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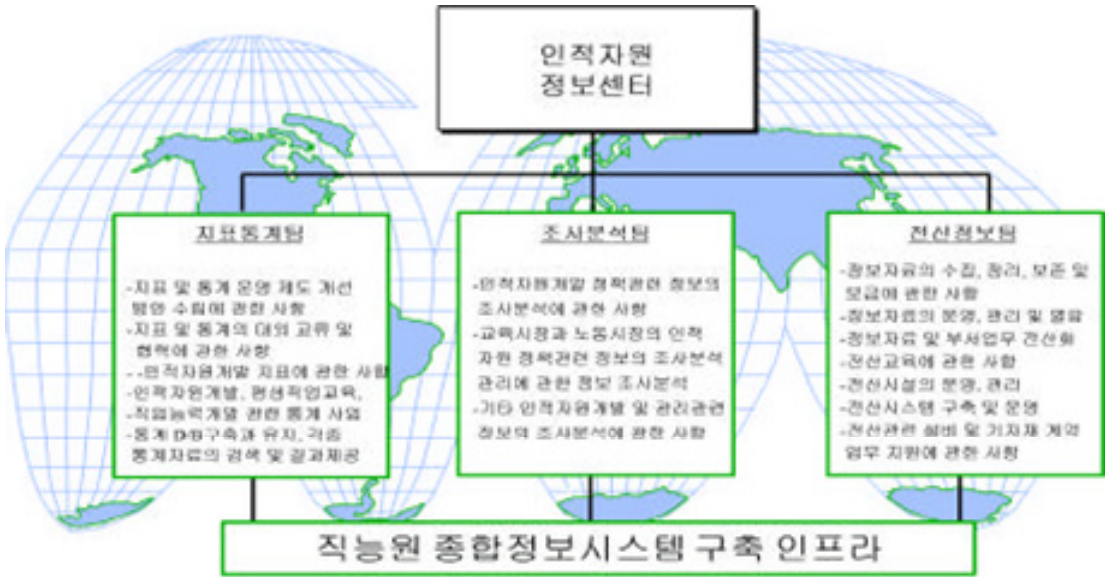

[그림 II-7] 국가인적자원개발종합정보망(NHRD-Net) 구축 추진 조직

자료: 장창원 외. (2001). 국가인적자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Ⅰ). 한국직업능력연구원.

5. 증거 기반 국가교육정책 모니터링 지표의 종합과 시사점

국가교육정책은 '국가나 권력에 의하여 지지되는 교육이념 또는 이를 구현하는 국가적 활동의 기본 방침이나 지도 원리'로서, 국가교육정책의 범위는 정책 영역, 생애 단계, 정책 주체를 고려하여 다면적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정책 영역에서는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교육제도 개선, 거버넌스 개편, 재정 운영의 요소가 해당하며, 생애 단계는 영유아, 청소년, 청년, 중장년, 고령자로 구분해 볼 수 있고, 정책 주체는 인력 양성 및 활용과 관련된 중앙 부처, 지방자치단체, 학교 및 기업이 해당한다.

증거 기반 정책의 접근법에 따른 정책 모니터링 지표는 체제적 모형과 주제(가치) 모형의 2가지 유형에 따라 지표체계를 설계하고 지표를 설정하고 있다(박성호 외, 2020). 체제적 모형은 상황과 실태를 기술적으로 모니터링하는데 중점을 두는 모형이고, 주제(가치) 모형은 목표의 이행과 달성 여부를 모니터링하는 데 중점을 두는 모형으로, 국가교육에서 설정한 교육비전을 추구하면서도 교육 실태를 면밀하게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이 두 모형이 상호보완적으로 고려될 필요가 있다. 교육·훈련 분야 증거기반 정책 모니터링 지표개발 연구에서 제시된 지표를 이 연구에서 설정한 국가교육정책 세부 영역에 따라 재구조화해보면 다음과 같다.

〈표 II-13〉 국가교육정책 범위에 따른 교육정책 모니터링 지표 종합

구분		지표		비고
정책 영역	교육비전	보편적 기회 (기회의 보편성)	• 유·초·중·고등 교육기관 취학률 • 유·초·중·고·대학생의 사교육 참여율 • 평생교육 참여율 • 직업훈련기관 참여율 • 재직자 교육훈련 참여율	한준 외(2017)
		공정한 기회 (기회의 공정성)	• 교육 및 훈련 기관 참여 및 접근 장애요인 • 지역이나 가정의 사회경제적 배경 등으로 인한 참여 기회의 제한	한준 외(2017)
		배려적 기회 (기회의 보완성)	• second chance, 사회배려 전형 • 학업중도탈락률(학업중단률) • 기초학력미달비율	한준 외(2017)
	중장기 정책방향	정책 추진의 연속성	• 정책, 비전, 가치의 연속성 • 정책 내용의 연속성	박동열 외(2020)
	교육제도 개선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 사교육 목적 및 과목(공교육 보충/심화, 공교육 미 제공 프로그램) • 진로교육, 직업정보 및 준비 교육과정 및 프로그램 • 학교생활 만족도(교육내용, 교육방법, 교우관계, 교사/교수와의 관계, 학교시설 및 설비, 학교주변환경, 소질과 적성개발, 전공, 전반적인 학교생활)	한준 외(2017)
		여건 및 환경	• 교사1인당 학생 수 • 교육 및 훈련기관의 물리적, 심리적 안전(재난, 폭력, 욕설)	한준 외(2017)
			• 교사/교수/강사 1인당 아동/학생/ 학습자 수 • 학급/강좌당 학생/학습자 수 • 과밀학급 및 과소학급 비율 • 주당수업시수	박성호 외(2020)

구분		지표		비고
			• 학교 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등급 (C등급 이하 비율) • 학교시설 내진 보강율 • 컴퓨터/스마트기기 보급 비율	박성호 외(2020)
		교육훈련 제공자	• 긍정적이고 지지적인 교육 및 훈련 기관 풍토 • 긍정적 교사-학생관계 • 긍정적 훈련인-피훈련인 관계	한준 외(2017)
		복지 및 지원	• 보충/심화 수업이나 프로그램 제공 여부 • 직업훈련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및 원격교육	한준 외(2017)
		교육 여건 구축	• 전체 고등학교 대비 직업계 학교의 비율 • 고등교육 기관의 국공립 비율 • 공공평생직업훈련 참여율 • 평생학습 참여율	박동열 외(2020)
		교육기회 보장	• 학업 중단율 • 계층이동 가능성 • 교육 격차 인식도 • 일할 수 있는 기회	박동열 외(2020)
		교수-학습 과정	• 학생의 교과에 대한 흥미도 • 협력적 학습 • 교사효능감	박성호 외(2020)
		구성원 간 관계	• 교사-학생 관계 • 교우관계	박성호 외(2020)
		학교운영 참여	•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 현황	박성호 외(2020)
		교육만족도	• 교육만족도(교육, 교원, 시설, 만족도 등 세분화)	박성호 외(2020)
	거버넌스 개편	정책 인프라의 연속성	• 정책 예산 편성 및 운영의 연속성 • 정책 운영 거버넌스의 일관성	박동열 외(2020)
	재정 운영	공적 책무성 (공공성)	• 국가(와 민간의) 공교육에 대한 투자 정도 • 학생 1인당 사교육 참여비용 • 학습자 1인당 평생교육 참여비용 • 총 훈련비 대비 정부지원(자부담) 금액(비율) • 훈련보조금(훈련수당 등) • 사업주훈련 지원금(규모, 업종 등) • 사업주 훈련 정부 지원율(총지원금 대비 규모별, 업종별 지원비율) • 훈련 참여자 1인당 수강지원금(훈련별)	한준 외(2017)
		재정적 지원	• 학생 1인당 공교육비 • 직업능력 개발 훈련 지원 예산	박동열 외(2020)
		교육재정 투자	• 연간 학생 1인당 공교육비 • GDP 대비 공교육비 비율 • 공교육비의 정부부담 비율 • 정부예산 대비 교육 예산 • GDP 대비 고등교육에 투자된 연구개발비 비율	박성호 외(2020)
생애 단계	영유아 (보육 · 유아 교육)	교육기회 균등 및 기초 학력 보장	• 취원율(취약집단별) • 국 · 공립 어린이집 · 유치원 비율 • 특수교육대상자 중 통합교육 원아 비율	박성호 외(2020)
		학습비 부담 완화	• 가구당 · 유아당 영유아 보육 · 교육비 지출액 • 유아 1인당 보육 · 교육 기관/프로그램 참여 시간	박성호 외(2020)
		교원 전문성 강화	• 전문학사 이상 보육교사 비율 • 교사효능감 • 학습동아리 및 자율연수 참여 비율 • 전문성 계발 활동 참여 비율/시간 • ICT활용 역량	박성호 외(2020)
		교육여건 개선	• 교사 1인당 아동수 • 학급당 아동수	박성호 외(2020)

구분		지표		비고
			• 교사의 행정업무 시간 비중 • 특수학급 설치 비율 • 특수교사 1인당 특수교육 대상 아동수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기관 내 아동학대 발생률 • 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등급(C등급 이하 비율) • 시설 내진보강률 • 기관 내 어린이집 안전사고 발생 건수 • 교권 침해 발생 건수	박성호 외(2020)
		성과기반 정책 및 제도 운영	• 유치원·어린이집 학부모 만족도 • 보육·유아교육 정책 만족도	박성호 외(2020)
	청소년 (초·중등교육)	교육기회 균등 및 기초 학력 보장	• 취학률(취약집단별) • 진학률(취약집단별) • 중도탈락률(취약집단별) • 특수교육대상자 중 통합교육 학생 비율 • 사회통합전형 비율(고등학교 단계) • 학업성취도 최소 기준 미달 학생 비율	박성호 외(2020)
		학습비 부담 완화	• 초·중등교육 교육비 지원 학생 비율 • 초·중등교육 교육급여 1인당 지급 금액 • 교육복지지원 정책사업비 비율 • 초등학교 방과후/온종일 돌봄교실 참여 학생 비율 • 학생 1인당 사교육비 • 학생 1인당 사교육 참여 시간	박성호 외(2020)
		학습자 역량 강화	• 인지적 역량 • 비인지적 역량(교과흥미도, 학습동기, 교과효능감, 자아신념 등 • 협력적 문제해결력 • 글로벌 역량 • 민주시민역량 • ICT역량	박성호 외(2020)
		교원 전문성 강화	• 교사효능감 • 학습동아리 및 자율연수 참여 비율 • 전문성 계발 활동 참여 비율/시간 • ICT 활용 역량	박성호 외(2020)
			• 진로진학상담 전담 교사 배치 비율 • 진로전담교사의 업무 수행 수준	박성호 외(2020)
		교육여건 개선	• 교사 1인당 학생수 • 학급당 학생수 • 교사의 행정업무 시간 비중 • 일반학교의 특수학급 설치 비율 • 특수교사 1인당 특수교육 대상 학생수 • 교과교실 설치 현황 • 교육 예산 중 ICT 예산 비중	박성호 외(2020)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학교폭력 발생율 • 전문상담교사 배치 비율 • 학교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등급(C등급 이하 비율) • 학교시설 내진보강률 • 학교 내 안전사고 발생 건수 • 교권 침해 발생 건수	박성호 외(2020)
		성과기반 정책 및 제도 운영	• 학교교육 만족도 • 학부모의 학교 운영 참여 현황 • 초·중등교육 정책 만족도	박성호 외(2020)
	청년 (고등교육)	교육기회 균등 및 기초 학력 보장	• 기회균형 선발학생 비율 • 취학률(취약집단별) • 진학률(취약집단별) • 중도탈락률(취약집단별)	박성호 외(2020)

구분		지표		비고
		학습비 부담 완화	• 국가장학금 수혜 학생 비율 및 1인당 장학금액 • 학자금 대출 이용 학생 비율 및 이용 학생 1인당 대출금액 • 연평균 등록금 • 대학생의 사교육비 부담 정도	박성호 외(2020)
		학습자 역량 강화	• 대학생 핵심 역량 수준 • 대학 졸업자의 성인역량수준 • 대학 졸업자의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력	박성호 외(2020)
		교원 전문성 강화	• 교원 1인당 논문 수	박성호 외(2020)
		교육여건 개선	• 전임교원 확보율 • 전임교원 1인당 학생수 • 사립대학 예산 대비 국고보조금 비율 • 대학재정지원사업비 예산 비중 • 전임교원 강의 담당 비율	박성호 외(2020)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실험실습실 사고 건수 • 학교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등급(C등급 이하 비율) • 전문상담사 배치 비율	박성호 외(2020)
		성과기반 정책 및 제도 운영	• 대학교육 만족도 • 고등교육 정책 만족도 • 고등교육 이수율 • 일자리와 전공 일치도	박성호 외(2020)
	중장년 (직업훈련)*	교육기회 균등 및 기초 학력 보장	• 직업교육훈련 경험 비율(배경집단별) • 학교 밖 청소년의 직업교육 참여율	박성호 외(2020)
		학습비 부담 완화	•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지원비 규모 및 예산 비중 • 학습자 1인당 직업훈련비 지출 금액	박성호 외(2020)
		학습자 역량 강화	• 직업기초능력평가 결과	박성호 외(2020)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전문상담사 배치 비율 • 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등급(C등급 이하 비율) • 안전사고 발생 건수	박성호 외(2020)
		성과기반 정책 및 제도 운영	• 진로·직업교육 만족도 • 직업훈련 관련 정책 만족도 • 고등교육기관 일 병행 학습자 비율 • 직업 연계 학위과정 참여 학생 비율	박성호 외(2020)
	고령자 (평생교육)*	교육기회 균등 및 기초 학력 보장	• 평생학습참여율(배경집단별) • 1인당 평생학습 참여시간(배경집단별) • 인구 1천 명당 평생교육기관 및 프로그램 수 • 문해율(최소기준 미달 비율)	박성호 외(2020)
		학습비 부담 완화	• 소외계층을 위한 교육지원비 규모 및 예산 비중 • 학습자 1인당 평생학습비 지출 금액	박성호 외(2020)
		학습자 역량 강화	• 성인역량수준 • 성인의 컴퓨터 기반 문제해결력	박성호 외(2020)
		교원 전문성 강화	• 평생교육기관의 평생교육사 배치율 • 평생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비율	박성호 외(2020)
		교육여건 개선	• 정부 예산 중 평생·직업교육 예산 비중 • 평생교육사 1인당 학습자 비율	박성호 외(2020)
		건강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 시설의 구조적 안전성 등급(C등급 이하 비율)	박성호 외(2020)
		성과기반 정책 및 제도 운영	• 평생교육 만족도 • 평생교육 정책 만족도 • 고등교육기관 25세 이상 성인학습자(재학생, 입학생) 비율 • 읍면동 단위 평생학습센터 설치 비율	박성호 외(2020)
		교육이수	• 졸업률, 이수율 • 직업훈련 이수율(수료율, 자격 취득율)	한준 외(2017)

구분		지표		비고
	공통	교육성취	• TIMSS, PISA, ICCS 국제 학업, 사회정서, 시민의식에 관한 비교 조사결과 • PIAAC 직업 관련 역량	한준 외(2017)
		이행	• 교육의 효과(정성) : 공교육, 사교육, 평생교육, 직업훈련 • 중등 및 고등교육기관 졸업자 취업률 • 교육-직업 불일치(mismatch)(IMD, WEF 정성문항) • 직업훈련기관 이수 후 신규 및 재취업률	한준 외(2017)
		신체 · 심리	• 삶의 질, 주관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 건강, 수명, 안전 등 • 직업만족도, 소득만족도	한준 외(2017)
		사회성과	• 사회자본(신뢰, 봉사, 기부, 시민의식, 정치참여) • 공정한 교육 결과	한준 외(2017)
		인적자본/ 경제성과	• 교육투자수익률, 임금(상승률), • 취업률(특성화고, 전문대학, 실업자훈련) • 종사상 지위변동(직장내 변동 혹은 이직) • 고용유지율	한준 외(2017)
		학습자역량	•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수 변동률 • 직업교육기관 졸업생의 취업률	박동열 외(2020)
		고용 및 임금의 안정성	• 고용률 • 실업률 • 근로자 평균 근로 소득 • 비정규직 비율 • 일자리 질	박동열 외(2020)
		주관적 웰빙	• 삶 만족도 • 일자리만족도 • 지역사회 만족도	박동열 외(2020)
		지역발전성인식도	• 지역 경제력 지수 • 주민 활력지수	박동열 외(2020)
		교육성과	•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교과별 성취수준 비율) • 청소년 · 성인 문해율 • 학생/성인 역량 • ICT 역량	박성호 외(2020)
정책 주체	중앙부처	정책 입안자 역량	• 공무원의 개방형 직위 임용 추이 • 공무원의 연수 참여율	박동열 외(2020)
	지방자치단체	-	-	-
	학교 및 기업	교수 역량	• 교사의 수업 외 업무 부담률 • 교사 1인당 학생 수 • 교사의 직무 만족도	박동열 외(2020)
		인적자원	• 소지 학위별 교사/강사 비율 • 전임교원 확보율	박성호 외(2020)

주) * 특정 대상이 아닌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전반에 적용되는 지표임

한편,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위원법 제11조(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과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16조(교육정책관계자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기초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수립한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표 II-14〉 참조).

〈표 Ⅱ-14〉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법률

국가교육위원회법 [법률 제18298호, 2021. 7. 20., 제정]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2627호, 2022. 5. 9., 제정]
제11조(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① 위원회는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교육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중략)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전계획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한 전년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조(교육정책관계자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에 교육정책관계자협의회(이하 “교육정책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1. 국가교육발전계획 및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수립·변경 및 그 이행상황의 점검에 관한 사항 (중략) 3. 법 제13조에 따른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의견 수렴·조정 처리결과의 이행에 관한 사항 ② 교육정책협의회의 의장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의 사무처장으로 하고, 교육정책협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 그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2. 시·도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지명하는 사람 3. 시·도 교육청의 국장급 이상 공무원 중 교육감이 지명하는 사람 ③ 교육정책협의회의 회의는 교육정책협의회의 의장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교육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2024. 1. 20). http://www.law.go.kr. 접속함

증거기반 교육정책 모니터링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체계’ 설계에 주는 시사점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고, 구체적인 방안은 정책 제언에서 다루고자 한다.

첫째,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의 목적을 명확하게 결정해야 한다.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단순하게 추진 상황 및 실태를 이행상황 점검 목적으로 한 체제적 접근 모형을 활용할 것인지와 시행계획의 목적 또는 성과 달성 여부를 점검 목적으로 한 주제(가치) 접근 모형을 활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둘째, 접근 모형에 적합한 이행상황 점검 관련 정보의 수집, 관리, 가공 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정보 입력 주체, 정보 신뢰성 확인 주체, 정보 결과의 활용 주체를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셋째,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결과의 활용 방안을 결정해야 한다. 교육부 학교 알리미와 같이 단순 정보의 제공 및 제한된 결과 활용 유형을 선택할 것인지, 또는 시행계획에 포함될 정보 요소들로 지표화하고, 지표화된 정보의 수집, 관리, 가공을 통하여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관련 정보와 점검 결과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유형을 선택할 것인지 정해야 한다.

제2절 시행계획의 이행력 제고 방안 모색을 위한 정부업무평가 체계 및 평가지표 현황 분석

1. 정부업무평가 개요

정부업무평가는 '국정운영의 능률성 · 효과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이 행하는 정책 · 사업 · 업무 등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 · 분석 · 평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정책집행과정은 계획-집행-평가의 단계를 의미하며, 정부업무평가는 그 중 마지막 단계로서, 집행된 정책이 당초 설정한 목표나 효과를 달성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되었는 지 등을 분석하고 평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국무조정실, 2022).

정부업무평가는 정책의 품질을 제고하여 국민의 정책만족도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통합적 정부업무평가제도를 구축함으로써 평가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 자율성 · 독립성 · 객관성 · 전문성 · 참여기회 보장을 기본원칙으로 평가를 실시한다(국무조정실, 2022).

〈표 II-15〉 정부업무평가제도의 기본원칙

기본 원칙	① 정부업무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는 그 자율성과 독립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② 정부업무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결과의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③ 정부업무평가의 과정은 가능한 한 평가대상이 되는 정책등의 관련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고 그 결과가 공개되는 등 투명하여야 한다.

출처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 7조

정부업무평가의 주요 평가방향은 기관별 주요정책 중점 평가, 국민체감 정책 성과 중심 평가, 청년정책을 평가에 반영, 평가 결과의 환류 강화, 개별평가제도의 효율적 운영 · 관리를 통해 피평가기관의 부담 완화 등 5가지로 제시할 수 있다.

첫째, 각 기관이 국정과제 추진과 국정성과 창출을 위해 역점 추진하는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평가하여 기관의 정책성과와 책임성을 제고한다.

둘째, 정부 연차별 가시적 정책성과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주요정책 부문 정책효과 평가 비중을 확대하고 정량평가 비중을 축소하며 부문별 국민만족도 비율을 균형있게 반영(10%)하여 평가 정합성을 제고한다.

셋째, 중앙행정기관의 청년 소통 노력, 청년정책 추진 성과를 평가에 반영하여 정책과정 전반에 청년참여를 확대하고 청년정책 발전을 도모한다.

넷째, 평가결과 확인된 미흡사항에 대해서는 필요한 조치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그 후속 조치 결과는 다음해 평가시 반영하는 등 평가결과의 환류를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개별평가 남설 방지, 평가간 유사·중복 해소, 평가체계의 타당성 제고 및 환류기능

강화 등을 통해 생애주기 기반 관리를 체계화하여 개별평가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고 피평가기관의 부담을 완화한다.

2. 정부업무평가제도 발전 과정

우리나라는 1961년 5·16 직후 공공분야에 심사분석제도가 도입된 이래 심사분석, 심사평가, 정책평가, 국정평가 및 기관평가 등 유사하지만 다양한 개념과 형태로 정부업무평가를 실시해 왔다. 정부업무평가제도는 2006년 4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 시행되면서 통합 정부업무 평가제도가 도입된 이후를 통합 단계로 보고, 도입-과도-재정비-발전-통합 등 크게 5단계로 구분하고 있다(국무조정실, 2022).

〈표 Ⅱ-16〉 정부업무평가제도 발전 과정

구분	도입	과도		재정비	발전	통합
담당 기관	국무총리 기획조정실	경제기획원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국무총리 행정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국무총리 국무조정실
시기	1961.09 ~ 1981.10	1981.11 ~ 1990.04	1990.04 ~ 1994.12	1994.12 ~ 1998.02	1998.03 ~ 2006.03	2006.04 ~
내용	심사분석제도 도입	심사분석업무 경제기획원 이관	정책평가 기능 신설	심사분석과 정책평가 통합	기관평가제도 도입	통합적 정부업무평가 및 성과관리 도입
근거	정부의 기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정부의 기획 및 심사분석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정부 주요정책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정(총리령)	정부업무의 심사평가 및 조정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출처 : 국무조정실(2022). 정부업무평가백서[2017~2021], p.14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의 심사분석제도는 1961년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부족한 자원으로 경제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었으며, 경제개발계획의 진행상황 및 집행결과에 대해 평가교수단을 별도로 구성하여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에 1965년 정부시책평가교수단이 구성되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사업의 중간 평가를 실시한 이래 매년 평가를 실시하였으며, 90명의 평가교수가 전공분야별로 정부 시책 및 사업영역을 담당하여 평가가 이루어졌다.

이후 과도기 초기(1981.11~1990.04)에는 제도의 예산사업 중심 평가 등 이전 제도의 틀은 유지되었으나, 국무총리 기획조정실의 심사분석업무가 경제기획원으로 이관되고 심사분석 결과 예산사항은 경제기획원 장관이 예산편성 및 배정에 반영하고 비예산사항은 국무총리가 시정을 요구하는 형태로 운영되었다. 그러나 경제기획원의 심사분석제도가 전 정부적 차원의 국정 흐름을 진단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비판에 따라 국무총리 행정조정실에서 부처별 1~2개 특정정책을 대상으로

점검리스트를 통해 평가를 실시하는 정책평가제도(1990.04~1994.12)가 이루어졌다. 당시 이루어진 심사분석과 정책평가는 대상과제의 선정기준과 평가목적에서 차이점이 있었으나, 정책추진의 합리성이라는 측면에서는 상호보완성을 가진다. 심사분석은 개별단위사업 및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사업진도와 부진원인을 분석하여 해당사업의 합리적 추진을 도모하며, 정책평가는 국정전반에 걸친 주요정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문제점을 발굴하여 해당 기관의 차기 업무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 제고를 도모한다(국무조정실, 2022).

재정비기(1994.12~1998.02)에는 경제기획원 심사분석과 행정조정실의 정책평가를 일원화하고 정기심사평가와 수시 심사평가업무로 구분하여 평가가 이루어졌다. 정기심사평가는 당초 기대했던 정책목표 달성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고 반기별 국무회의에 보고하는 형태로 이루어졌으며, 수시 심사평가는 국무총리가 국정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평가하는 형태로 이루어졌다. 이 시기에는 진도분석 위주의 평가에서 탈피하여 주요 역점사항에 대한 평가사항을 각 중앙행정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일반사항과 각 부처 고유 성격을 갖는 특수사항으로 제시하였으며, 결국 부처의 자체평가와 상위평가 형식을 띠고 있는 국무총리실의 종합평가과정 형식으로 운영되었다(제갈돈 · 제갈욱, 2008)

발전기(1998.03~2006.03)에는 국무조정실에서 담당하여 각 부처 주요정책의 추진성과 외에 기관의 정책추진 역량과 국민의 만족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단순한 과제 중심 평가에서 기관 간 경쟁요인을 도입하였다. 또한 최초 입법인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을 제정(2001)·시행하였다. 「정부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기본법」은 정부 차원의 평가추진체계 확립 뿐만 아니라 평가제도 정착의 기반을 제공하였다(제갈돈 · 제갈욱, 2008)

이후 2006년에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이 전면 개정·시행(2006.05)되며, 개별평가를 통합하여 정부업무평가위원회가 통합 실시하는 통합평가 방식의 정부업무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성과관리 제도 도입으로 계량적 성과지표를 개발·적용하고, 기관 스스로 평가하는 자체평가 중심으로 평가제도를 운용하고 평가 결과의 개인성과 반영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현재 이루어지는 정부업무평가는 2006년 3월 제정된 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은 자체평가를 강조하고 성과관리제를 도입하였지만 구법의 기관평가와 비교할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다양한 분야별 평가의 '통합적'운영에 있다(김현구, 2006).

3. 정부업무평가 체계

가. 정부업무평가 추진 절차

정부업무평가는 국무총리,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평가총괄 관련기관을 중심으로 추진된다.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며,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특정평가를 시행한다. 그 밖에 평가제도의 운영실태를 확인·점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제도개선방안 강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정부업무평가의 실시와 평가기반 구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9조(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임무)에 따라 국무총리 소속 하에 설치되어 있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국무총리 및 민간위원 중 대통령이 지명한 자를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있으며, 정부위원과 민간위원으로 15인 이내로 구성된다. 정부위원의 경우 중앙행정기관 대상 자체평가의 각 부문을 주관하는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의 장을 위원으로 하고 있으며, 민간위원은 대학, 연구기관 등의 전문가로 위촉하도록 하고 있다(국무조정실, 2022). 정부업무평가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 의결한다.

〈표 Ⅱ-17〉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심의 • 의결 사항

정부업무평가위원회 심의 · 의결 사항
1. 국가 차원의 중장기 평가기반의 구축 · 운영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및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정부업무평가의 기획 · 조정 · 총괄에 관한 사항
4. 정부업무평가제도와 관련된 성과관리에 관한 사항
5. 정부업무평가결과의 활용 및 평가제도간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
6. 정부업무평가결과의 보고에 관한 사항
7. 평가관련 기관 간 협조 및 평가업무의 조정에 관한 사항
8. 특정평가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9. 자체평가제도의 운영 · 개선에 관한 사항
10. 자체평가계획의 조정에 관한 사항
11. 자체평가결과의 확인 · 점검에 관한 사항
12. 자체평가결과에 대한 재평가에 관한 사항
13. 평가제도 운영실태의 점검에 관한 사항
14. 새로운 평가제도의 도입에 관한 사항
15.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위원회의 업무로 규정된 사항
16. 그 밖에 위원장이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 · 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출처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제 10조

평가총괄 관련기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자체평가에 관한 객관성 · 공정성 확보를 위해 자체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점검을 시행하는 기관이다. 현재 자체평가는 주요정책, 재정사업, 조직·정보화, 인사 등 4대 부문으로 구분되며, 각 부문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주요정책부문:국무조정실, 재정사업부문 : 기획재정부, 조직·정보화부문 : 행정안전부, 인사부문 : 인사혁신처)은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이 수행한 자체평가 결과의 객관성 및 공정성 등에 대해 확인·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위원회에 보고하게 된다(국무조정실, 2022). 평가총괄관련기관은 평가제도의 운영·개선, 평가지침 및 평가지표의 작성, 자체평가결과의 확인·점검, 재평가의 실시 여부 등 자체평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정부업무

평가기본법」 제 11조).

나. 정부업무평가 대상기관 및 평가종류

정부업무평가는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며, 정부업무평가 체계를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그림 Ⅱ-8] 정부업무평가체계 - 중앙행정기관 평가

출처 :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홈페이지. 검색일 2024.02.25.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대상별 평가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Ⅱ-18〉 정부업무평가 종류 및 절차

구분		내용
중앙행정기관 평가	특정평가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 대상으로 주요사업·현안시책 등 평가
	개별평가	통합실시가 곤란한 경우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협의하에 중앙행정기관 대상으로 평가
	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이 소관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
지방자치단체 평가	합동평가	행정안전부 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장과 합동으로 국가위임사무 등 평가
	개별평가	통합실시가 곤란한 경우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협의하에 국가위임사무 등 평가
	자체평가	지방자치단체장 책임하에 고유사무 전반을 평가
공공기관 평가	개별법에 의한 평가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공공기간 경영성과, 정부출연연구기관 연구성과 등 평가 *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지방공기업/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

출처 : 정부업무평가포털. 검색일 2024.01.29

증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는 국무종리가 실시하는 특정평가와 해당기관이 스스로 실시하는 자제평가로 크게 구분된다. 또한 각 기관에서 개별 법률에 의해 평가하는 개별 평가가 있다.

중앙행정기관			
평가유형	평가부문	근거법률	평가주관
특정평가 (45개)	주요정책	정부업무평가법	국무조정실 등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적극행정		
자체평가 (46개)	주요정책	정부업무평가법	국무조정실
	재정사업 - 일반재정사업	국가재정법	기획재정부
	재정사업 - R&D	연구성과평가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재정사업 - 재난안전	재난안전법	행정안전부
	재정사업 - 균형발전	국가균형발전법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재정사업 - 일자리	고용정책기본법	고용노동부
	재정사업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중소벤처기업부
	행정관리 역량 - 조직	정부업무평가법	행정안전부
	행정관리 역량 - 인사		인사혁신처
	행정관리 역량 - 정보화		행정안전부
개별평가		개별근거법률	주관부처

[그림 Ⅱ-9] 정부업무평가체계 - 중앙행정기관 평가

출처 : 정부업무평가포털. 검색일 2024.02.25.

특정평가는 국무총리가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 국정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 등을 평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국무총리가 실시하는 하향적 평가라는 점에서 기관이 스스로를 평가하는 자체평가와 구분된다(국무조정실, 2022). 평가부문은 주요정책, 규제혁신, 정부혁신, 정책소통 등으로 매년 국정기조를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부문별 배점이 조정된다. 2023년에는 주요정책 50점, 규제혁신 20점, 정부혁신 10점, 정책소통 20점, 적극행정(가점) 3점 등의 기준에 따라 평가가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다.

〈표 II-19〉 중앙행정기관 특정평가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2023 - 2022 업무평가 기준)

구분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정(비중)
주요정책 (50점)	이행노력	과제 이행을 위한 투입노력, 절차·시한 준수 등	정량+정성(25)
	목표 달성도	사전에 설정된 연간 목표치 달성여부	정량+정성(25)
	정책 효과	국민에게 체감되는 실질적 효과	정성(40)
	국민 만족도	기관 소관 주요정책에 대한 국민만족도 조사	정성(10)
규제혁신 (20점)	핵심분야 규제개선	중점과제 개선(기관의 과제) 건의과제 개선(신문고, 현장애로 등 건의된 과제)	정량+정성(60)
	규제 품질관리	규제비용 감축 및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 관리 성과 등	정량+정성(25)
	규제혁신 소통 및 체감도	규제혁신 국민소통(5%) 규제개혁 만족도 조사(10%)	정량+정성(15)
정부혁신 (10점)	혁신역량	기관장의 혁신리더십 기관의 정부혁신 활동 및 성과확산 노력	정성(20)
	혁신성과	소통·협력하는 선제적 정부 모두가 편한 서비스 정부 데이터 기반의 애자일 정부	정량+정성(70)
	국민체감도	국민 체감도 평가	정성(10)
정책소통 (20점)	정책소통활동	부처협업 활동 보유자원 활용	정량(15)
	정책소통성과	주요정책 소통성과 현안 대응 성과 온라인 소통성과 기관장 소통성과 외신 소통성과	정량+정성(70)
	체감도	소통만족도 온라인 체감도	정성(10) 정량+정성(5)
적극행정 (가점 3점)	적극행정활성화노력	적극행정추진계획 수립 : 실행계획의 적극성 및 창의성 : 제도개선 노력도 기관장노력도 : 기관장의 적극행정 추진 의지, 활동실적 제도 활용실적 : 적극행정위원회 운영실적 : 사전컨설팅 운영실적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 우수공무원 선발 및 인센티브 부여 실적 : 파격적 인센티브 부여 실적 : 적극행정 우수사례 경진대회 참여실적 교육실적 : 적극행정 교육실적 홍보실적 : 적극행정 홍보 노력도 및 홍보 실적	정량+정성(45)
	적극행정추진성과	주요성과 제출 실적 우수성과 창출	정량+정성(40)
	적극행정체감도	국민 적극행정 체감도 공무원 적극행정 체감도	정량(10) 정량(5)

출처 : 정부업무평가위원회 • 국무조정실(2023).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안) 및 정부업무평가포털 재구성

자체평가는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는 것을 의미한다(국무조정실, 2022). 이에 중앙행정기관별로 자체평가계획을 수립하고,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구성된

각 기관별 자체평가위원회가 자체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평가지표는 주요정책, 재정사업, 행정관리 역량으로 구분되는데, 주요정책 부문은 기관별 특성을 반영하여 기관 자율적으로 설정하되, 일부 항목에 대해서는 통일적 기준을 제시한다. 재정사업 부문은 필수항목은 공통평가항목(사업계획의 적정성, 집행효율성, 사업관리 적정성, 성과달성도, 성과 우수성, 환류·개선 노력)으로 설정하고, 하위 부문별로는 평가 소관기관에서 설정하도록 하고 있다. 행정관리역량 부문은 평가총괄기관인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서 평가지표를 제시한다. 자체평가는 상대평가(등급제)가 적용되며, 기관별 자체평가 결과에 대해 부문별 평가 총괄기관에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정부업무평가포털).

한편「정부업무평가 기본법」상 중앙행정기관이 다른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시행 하는 평가는 통합실시하는 것이 원칙이나 업무 특성·평가 시기 등으로 인해 통합실시가 곤란한 경우 정무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개별평가가 실시된다(국무조정실, 2022).

한편, 지방자치단제 대상 평가는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평가인 합동평가와 개별평가가 있고, 지방자지단제의 장이 실시하는 자제평가로 구분된다.

[그림 II-10] 정부업무평가체계 - 지방자치단체 평가

출처 : 정부업무평가포털. 검색일 2024.02.25.

중앙행정기관에 의한 지방자치단체 평가는 합동평가와 개별평가로 구분된다. 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장이 위임받아 처리하는 국가사무, 국고보조사업,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의 주요시책 등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합동으로 실시한다(국무조정실, 2022). 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위원회 산하 합동평가단이 실시하게 되며, 행정안전부에서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평가지표 확정(전전년 10월경) →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실시계획 수립(전년 9~10월경) → 평가 실시 (당년 2~3월경) → 평가결과 공개(당년 4월경) → 부진 분야 행정컨설팅(당년 10~11월경) → 정책환류실적 점검(익년 1~2월경)의 절차에 따라 추진하게 된다. 이에 지표별 입력주체(중앙부처, 시·도, 시·군·구 구분)는 당년 1월경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VPS)에 지표를 입력하게 된다. 2023년에는 2022년도 기준

실적 지표 총 112개 지표 중 104개 지표에 대한 평가가 실시되었으며, 정량, 정성평가와 함께 국민평가가 이루어졌다(정부업무평가포털)[2].

개별평가는 업무의 특성·평가 시기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평가대상·방법 등에 관하여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개별적으로 실시한다(국무조정실, 2022).

자체평가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소속기관의 정책 등을 포함하여 소관 사무에 대해 자율적으로 실시하는 평가를 의미한다. 대상 기관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기초 지방자치단체를 모두 포함하며, 평가대상은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정책 및 사업 전반으로 소속기관이 수행하는 사업 및 업무 등도 평가대상에 포함된다(국무조정실, 2022).

마지막으로 공공기관 평가는 개별 법률에 의한 평가와 소관 증앙행정기관의 장이 정부업무평가위원회와 협의하여 실시하는 평가로 구분하여 시행하고 있다. 개별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평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에서 평가대상 기관을 명시하고 있으며, 개별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 평가는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의한 공공 기관 평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다(국무조정실, 2022).

[그림 Ⅱ-11] 정부업무평가체계 - 공공기관 평가

출처 : 정부업무평가포털. 검색일 2024.02.25.

2) 코로나 19 상황을 고려하여 37개 지표 조정(목표치 하향 등 수정 29개, 평가유예 8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의 경우 기획재정부에서 주관하고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교수·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평가를 실시한다. 매년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보고서를 기초로 전년도 경영실적을 '공공기관 경영평가 편람'에 따라 서면심사 및 기관별 실사를 실시한다. 기금의 경우 기금운영평가와 기금존치평가가 이루어지며, 조교수 이상의 대학교수, 정부출연연구기관 박사, 5년 이상 경력의 공인회계사·변호사 등 자격요건을 만족하는 36명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이 평가를 실시한다. 과학기술분야 연구기관은 기관운영과 연구사업에 관한 평가가 이루어지며, 경제·인문사회분야 연구기관은 연구분야와 경영분야에 관한 평가가 이루어진다(정부업무평가포털). 이 밖에 지방공기업은 평가의 전문성·공정성 확보를 위해 교수·회계사 등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경영평가단이 평가를 실시하며, 기관이 제출한 경영실적 보고서를 토대로 서류 및 현장평가가 이루어지게 된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대상이 아닌 공공기관에 대하여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한편, 시도교육청에 대한 평가는 개별평가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평가편람으로 3개항목 17개(2023년도 기준) 지표로 구성된 평가지표 체계를 사전에 제시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별 국가시책 추진현황 등 자료를 평가위원회에서 점검·분석 후 평가 결과를 확정하며 평가 영역별 총평, 우수사례, 시도교육청별 총평 및 평가지표별 획득 점수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근거법령으로는 법률 「초중등교육법」 제9조 (학생, 기관, 학교평가) 제2항에 따르며 대상기관은 17개의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시책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점검, 교육공동체 만족도 조사 및 주제별 심층 분석 진단을 통해 시도 교육청 정책의 질 제고 및 교육자치 역량 강화가 평가의 주요 목표이다.

〈표 II-20〉 시도교육청 평가 지표의 주요 내용

평가영역	평가근거	세부평가지표
미래인재 양성	국정과제 '100만 디지털인재양성'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고교학점제 도입기반 조성노력
		AI 교육기반 마련 및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직업교육 경쟁력 강화
		임용예정자 대상연수 실적
		교육실습 협력학교 증가율
		학생 1인당 진로체험 참여회수
국가교육 책임강화	국정과제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해소'	기초학력향상지원
		한글책임교육 내실화
		통합교육 내실화
		방과후 초등돌봄 지원 강화
		유아교육 교육력제고
		다문화교육지원 강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환경 조성	「학교폭력예방법」,「학교보건법」 안전·건강 관련 법령	학교폭력 예방 역량 지원
		미세먼지 계기교육 실적
		교내보차도 분리바 학생안전교육
		학생자살예방을 위한 노력
		학교 성희롱· 성폭력 근절기반 강화 및 양성평등 교육활성화

다. 정부업무평가 결과의 공개 및 활용

정부업무평가 결과는「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26조에 따라 공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국무총리·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전자통합평가체계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또한 국무총리는 각종 평가결과를 종합한 평가 결과보고서를 국무회의에 보고하거나 별도의 평가보고회를 개최해야 하며,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전년도 자체평가결과를 국회의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또한 평가결과의 환류 측면에서「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28조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기관장은 정부업무평가결과를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또한 평가 결과에 따라 우수사례로 인정되는 소속부서·기관 및 조직 구성원에 대해서는 포상, 성과급 등 경제적 인센티브 및 인사상의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고, 우수 기관에 대해 정부차원에서 표창수여 및 포상금 지급을 통해 정책의 성과제고 노력을 유도할 수 있다. 중앙행정기관은 평가 결과,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시정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국무조정실, 2022).

이와 같이,「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전면 개정·시행(2006.05)에 따라 과거와 큰 차이 중 하나는 정부업무 성과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한다는 점이다. 성과관리는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2조 제6호)으로 2006년 이후 통합성과관리체계를 구축·운영 중에 있다(정부업무평가 포털).

정부업무평가 성과관리는 정책 등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는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하며, 정부업무의 성과·정책품질 및 국민의 만족도가 제고될 수 있도록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4조). 정부업무 성과관리를 위해 중앙행정기관은 성과관리 전략계획(5년 단위) 및 성과관리 시행계획(1년 단위), 자체평가 계획(1년 단위)을 수립하여야 하며, 평가대상은 계획에 따라 소관 정책등을 스스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조직·예산·인사·보수 등에 반영한다. 과거 평가제도의 가장 큰 약점은 평가결과를 예산과 인사 등에 실질적으로 활용하지 못하여 평가의 실효성이 크지 않았던 것(제갈돈·제갈욱, 2008)인데 반해,「정부업무평가 기본법」시행 이후 부처 단위에서 개인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성과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설계되어 평가결과의 활용성을 실질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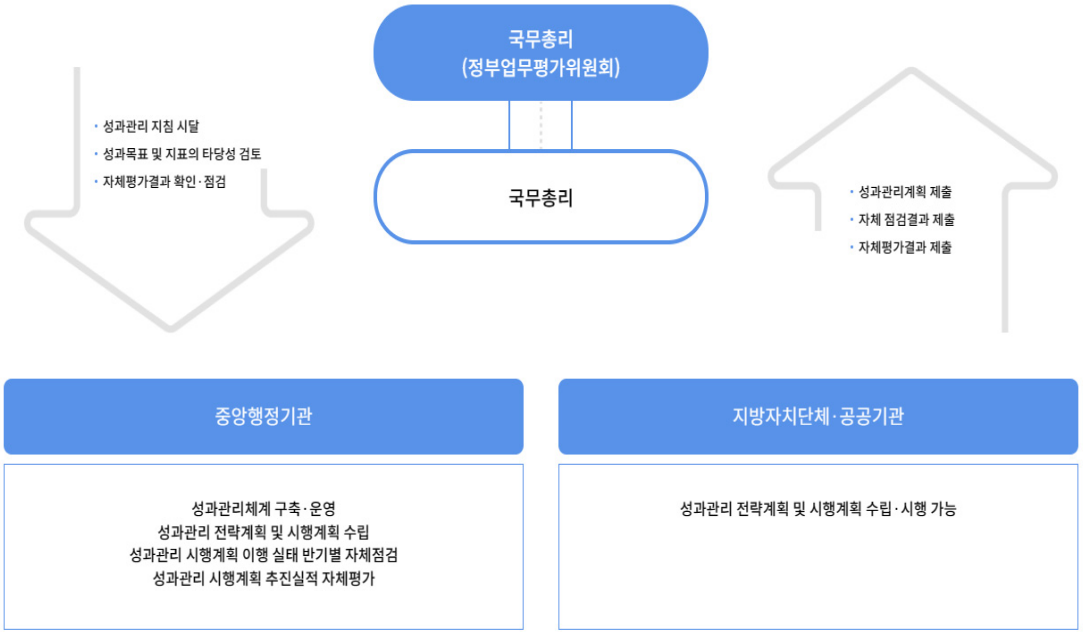

[그림 II-12] 정부업무 성과관리 추진체계

출처 : 정부업무평가포털. 검색일 2024.02.26.

4. 정부 및 지자체 정책 사업 모니터링 관련 법령 현황

가. 정부「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의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해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부업무평가의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는 통합하여 실시되는데,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에 대한 정책목표와 방향을 제시하는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매년 3월 말까지 평가대상기관에 통지한다. 또한 국무총리는 전자통합평가체계를 구축하여 평가과정에 대한 통합적인 정보관리와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하고, 평가결과는 전자통합평가체제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표 II-21〉「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총칙	제3조 통합적 정부업무 평가제도의 구축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이 경우 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성과관리전략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을 포함한 당해 기관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 계획(성과관리전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당해 기관의 임무·전략목표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최소한 3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이에 기초하여 성과관리전략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성과관리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기초하여 당해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정부업무평가제도	제8조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의 수립	•국무총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업무의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한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을 최소한 3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평가대상기관과의 협조	•국무총리는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및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전자통합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통합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 및 단체가 이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전자통합평가체계는 평가과정, 평가결과 및 환류과정의 통합적인 정보관리 및 평가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평가결과의 활용	제26조 평가결과의 공개	•국무총리·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전자통합평가체계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8조 평가결과의 예산·인사 등에의 연계·반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반영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시 반영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평가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29조 평가결과에 따른 자체 시정조치 및 감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정책등에 문제점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정책등의 집행중단·축소 등 자체 시정조치를 하거나 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사례로 인정되는 소속 부서·기관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 성과급 지급,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부는 정부업무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보칙	제31조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대한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 중 규모 및 업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성과관리 및 평가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소속기관에 대하여는 스스로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2024.2.26. 검색).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한편,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조 제6호에 근거하여 기관의 임무, 중·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성과관리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중앙행정기관은 성과관리 전략계획(5년 단위)과 성과관리 시행계획, 자체평가 계획(1년 단위)을 수립하고, 계획에 따라 소관 정책 등을 스스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정책·조직·예산·인사·보수 등에 반영하고 있다(정부업무평가, 2024.1.29. 검색).

〈표 Ⅱ-22〉 정부업무 성과관리 절차

구분	내용
계획수립	• 중앙행정기관은 5년 단위의 '성과관리 전략계획'을 수립하여 기관의 임무와 비전, 전략목표와 5년 단위 성과목표를 제시 • 매년 성과관리 전략계획의 실행계획인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연도의 성과목표와 이의 달성을 위한 정책(사업)과 성과지표 제시 • 국무총리 소속 정부업무평가위원회(국무총리·민간 공동위원장)는 중앙행정기관의 목표체계와 성과지표의 적절성을 검토·조정하는 등 계획 수립을 지원 • 성과관리계획과 국정과제, 부처업무계획, 한국형 뉴딜 과제·탄소중립 과제 등 정부 핵심과제와의 연계를 강화
집행·점검	• 중앙행정기관은 주어진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정책을 추진하고 과제의 추진과정과 실적 등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목표달성에 차질이 없도록 관리
평가	•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평가계획을 수립하고, 연말실적을 기준으로 다음해 1월경 자체평가 실시 •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관리과제와 과제별 성과지표는 중앙행정기관 자체평가의 대상과제 및 성과지표로 활용
운영실태 점검	• 국무조정실은 중앙행정기관의 성과관리·자체평가 운영에 대한 점검을 통해 정부 내 성과관리 발전 지원·유도
평가결과의 환류	• 〈기관차원의 평가결과 환류〉 1)정책개선 자체평가와 자체평가에 대한 평가총괄 관련기관의 확인·점검 결과 정책등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자체 시정조치 또는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정부업무평가위원회'에 제출하는 등 정책의 지속적인 개선을 추진, 2)조직관리에 활용 : 평가결과에 따라 인력증원, 직급별 정원 조정 등 부처의 조직관리에 대한 자율권을 차등적으로 부여 • 〈개인차원의 평가결과 환류〉1) 개인성과 및 인사와 연계, 2) 성과정보 종합관리체계 반영

자료: 정부업무평가. (2024.1.29.검색) https://www.evaluation.go.kr

나. 광역지자체별 관련 규칙

광역지자체의 정책 사업 모니터링 관련 법령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라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지자체별로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 또는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으로 마련되어 있다. '업무평가'는 평가대상기관의 정책, 사업, 업무 등에 관하여 계획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분석·평정하고 그 결과를 업무에 반영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으며, '성과관리'는 시의 비전을 달성하기 위하여 전략목표와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능률성·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이고, '성과평가'는 성과목표 달성도, 추진상황 및 집행성과와 역량 등을 점검·분석·평정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 지역별 규칙을 살펴보면,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에서도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업무평가'가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설정되어 있다.

〈표 Ⅱ-23〉 광역 단위 지역별 관련 법령

구분	내용	업무평가	성과관리/성과평가
서울	서울특별시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	
부산	부산광역시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		●
대구	대구광역시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		●
인천	인천광역시 업무평가에 관한 규칙	●	
광주	광주광역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
대전	대전광역시 업무평가규칙	●	
울산	울산광역시 주요업무 평가 규칙	●	
세종	세종특별자치시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
경기	경기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
강원	강원특별자치도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		●
충북	충청북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
충남	충청남도 주요업무 평가 규칙	●	
전북	전북특별자치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
전남	전라남도 주요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	
경북	경상북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
경남	경상남도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성과관리·평가에 관한 규칙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2024.1.29.검색). https://www.law.go.kr

‘업무평가’로 관련 규칙을 명시한 지역으로는 서울, 인천, 대전, 울산, 충남, 전남, 경남이 있다. 평가대상 및 종류의 측면에서 대상업무는 성과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전략목표·성과목표·성과지표와 주요업무 계획·시행계획의 주요 시책 및 사업으로 하고 있다. 대전의 경우에는 다수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시책,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과 같이 보다 구체적으로 기준을 설정하였으며, 경남의 경우에는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시·군이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 사항으로 평가대상기관의 소관 업무 전체로 설정하기도 하였다. 대상기관은 대부분 시 본청의 실·국·본부, 기관의 장이 3급 이상인 직속기관 및 사업소, 출장소 등이다. 인천의 경우에는 필요 시 기관의 장이 4급 이하인 사업소 등 소속행정기관, 지방공공기관으로 확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대전은 성과관리는 소속행정기관으로서 부서장이 4급 이상인 부서로 하고 있다. 평가 종류는 기본적으로 정기평가/자체평가와 수시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서울의 경우에는 기관의 역량, 업무추진에 대한 시민 만족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기관평가, 기관의 공무원이나 전문가 등과 합동으로 평가하는 합동평가,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성과를 시민의 입장에서 평가하는 시민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평가 절차의 측면에서 평가계획 수립은 시장 또는 도지사가 매년 성과관리계획, 업무평가계획 수립지침을 평가대상 기관에 시달하고, 평가대상 기관은 성과관리계획과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여 시장 또는 도지사에 제출하고 성과관리시스템에 따라 관리하며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효과적인 평가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하거나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하도록 하고 있으며, 평가에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기 위하여 서류 제출, 관계 공무원의 진술, 현지조사 등을 요청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평가 결과 활용 측면에서는 대전과 충남에서는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시정이 필요한 경우 평가대상 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명령 또는 권고하고 이행상황을 확인·점검하도록 하고 있다. 평가 결과를 예산, 조직운영, 부서 및 직무성과평가에 반영하고 우수 부서 또는 공무원에게는 예산지원, 상금 지급, 표창수여, 인사상 우대 등을 조치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한편, 인천에서는 부진한 부서·기관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부서 및 감사부서에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였다.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측면에서는 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평가실시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 평가대상 주요업무 선정 및 평가방법, 평가결과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전남의 경우에는 이외에도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에 대한 심의도 포함하고 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최대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대전, 충남, 전남에서는 전체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다.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로 관련 규칙을 명시한 지역으로는 부산, 대구,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제주가 있다. 성과관리의 측면에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매년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 수립·시행하고 있으며, 부산에서는 기관의 임무·비전·전략목표·성과목표 등을 포함하여 4년간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성과관리전략계획을 수립하고, 2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보완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성과평가의 측면에서 대상업무는 성과관리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전략목표·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와 시정 주요정책 등이고, 주요 대상 기관은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의 부서장이 4급 이상인 부서 단위이나, 필요한 경우 기관의 장이 5급 이하인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까지 포함하고 있고, 충북의 경우에는 「충청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전 부서로 설정하고 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매년 성과평가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나, 전북은 「전북특별자치도 직무성과평가 운영지침」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정기평가는 종합평가 또는 분기평가로 나누어 진행하고, 필요 시 시정 전반 또는 특정업무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하도록 설정하였다. 효과적인 성과평가를 위하여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 시민으로 구성된 평가단을 구성하고 필요 시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하도록 규정하였다.

성과평가결과 활용 측면에서 평가 결과를 행정포탈 및 인터넷 홈페이지, 성과관리시스템 등에

공개하도록 하였으며,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성과평가대상에게 시정을 명령하고, 결과는 예산, 조직운영 및 직무성과평가에 반영하고, 우수부서 또는 유공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포상금, 실적 가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도록 명시하였다.

성과평가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위원회의 주요 심의사항으로 성과관리전략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 성과평가계획, 성과평가결과,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제도 개선을 설정하고 있으며, 대구의 경우에는 시장 공약사항 추진상황에 관한 자문 및 평가까지 위원회의 역할로 설정하고 있다.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 최대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설정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위원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하였다. 또한 위원회 운영 상 필요 시 관계 부서 및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다.

〈표 II-24〉 지역별 업무 등의 평가에 관한 규칙 구성 현황

구분		서울	인천	대전	울산	충남	전남	경남
평가 대상 및 종류	대상업무	•성과관리계획서의 성과목표·주요사업과 주요업무 계획·시행계획의 주요 시책 및 사업 •자치구가 행하는 국가 또는 시의 위임사무와 보조금 등 각종 지원사업	•성과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전략목표 · 성과목표 · 성과지표와 시정 주요 정책 등 •군·구가 행하는 국가 또는 시의 위임 및 재위임 사무와 보조금 등 각종 지원사업	•다수 시민의 권리·의무와 관련된 시책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 •시장 공약사업 •다수 시민과 관계된 자치법규 제·개정 •관련 법령과 협약 등에 따라 민간과 시가 일정한 역할을 정하여 협력하는 사업 •자치구가 국가/시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는 사무와 보조금 등을 통하여 추진되는 각종 지원 사업	-	•도지사가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시책 및 사업	•도가 추진하는 주요시책과 사업	•본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및 시·군이 추진하는 업무 및 관련 사항
	대상기관	•본청의 실·국·본부 •기관의 장이 3급이상 소속 행정기관 •투자기관 및 출연기관	•본청의 실·국·본부 •기관의 장이 3급 이상인 직속기관 및 사업소, 출장소 등 •필요 시 기관의 장이 4급 이하인 사업소 등 소속행정기관, 지방공공기관	•소속행정기관, 출자기관, 출연기관 및 자치구 •성과관리는 소속행정기관으로서 부서장이 4급 이상인 부서	•실·국장,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및 출장소장	-	-	•본청의 실·국·본부장과 직속기관의 장 및 사업소의 장
	평가 종류	•정기평가 •수시평가 •기관평가 •합동평가 •시민평가	•자체평가 •수시평가	•정기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	•자체평가 •직무성과평가 •수시평가 •전문심사평가 •전략과제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 •성과평가	•정기평가 •수시평가

구분		서울	인천	대전	울산	충남	전남	경남
평가 절차	평가계획 수립	●성과관리계획, 주요 업무계획 수립, 평가 지침 시달 ●평가의 목적 및 필요성, 평가대상기관, 평가의 대상 및 범위, 평가시기, 평가방법,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매년 수립 ●평가대상기관의 임무, 전략목표 및 성과목표, 당해연도 주요 정책 등의 내용, 평가의 기본방향, 평가 대상 및 방법, 평가결과의 활용	●매년 수립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평가 대상 및 방법	●업무평가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달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평가대상 주요업무의 선정기준, 주요 업무시행계획의 작성 방법, 평가내용 및 절차 ●시행계획을 단위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	●소속기관을 포함한 해당 기관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기·장기 계획(성과관리 전략계획)을 수립 ●해당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연도별 시행계획(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시행	●중장기 계획에 기초하여성과관리계획을 매년 수립 ●성과관리 및 평가의 기본방향, 도의 임무,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 대상과 방법, 성과평가 결과 활용 및 조치 ●기획조정실장은 주요 업무 시행계획을 단위 시책 또는 사업별로 작성	●매년 당해연도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부서의 장에게 시달 ●당해연도 업무 등의 평가 실시방향, 평가대상업무,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지표, 평가결과의 활용계획 등
	성과괸리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매년 다음 연도의 성과관리계획과 주요업무계획 수립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매년 해당 연도의 성과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	●대상부서의 장은 시의 비전, 전략 등에 기초하여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성과관리시스템에 따라 관리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소관 시행계획의 집행상황에 따른 자체평가 계획에 따라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	-	●성과관리 대상 부서의 장은 도의 비전, 전략 등에 기초하여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성과관리시스템에 의하여 관리	-
	평가단 구성	-	-	●시 소속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단을 운영	●관계공무원·평가위원 또는 관계전문가와 합동으로 평가실무반을 구성	●별도의 평가단을 구성·운영	●관계공무원 또는 외부 전문가와 합동으로 평가실무반을 구성·운영	-
	자료 요청	●평가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등	●평가관련 자료·서류 등의 제출 요청 ●관계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관계 행정기관 등에 대한 현지조사 등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요청	●평가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제출을 평가대상기관에 요구	●심의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부서장에게 요구	-	●관련 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거나 의견의 청취
	위탁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	-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	-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위탁	-

구분		서울	인천	대전	울산	충남	전남	경남
평가 결과 활용	결과 공개	-	-	•홈페이지 등에 공개	-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부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통보	-	-
	평가결과 처리	•시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 명령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 확인·점검	•시장은 관계기관의 장에게 시정 명령 •시정명령에 대한 이행상황 확인·점검	•시장은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시정 권고 •시정권고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점검 •시정권고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감사부서에 감사 의뢰	•평가대상기관의 장은 자체 평가결과 보완 및 개선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체없이 시정하거나 그 시정방안을 강구하여 시장에게 보고	•최종 평가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부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통보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부서장 또는 시장·군수에게 통보	•소속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	•부서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
	평가결과의 반영	•예산에 반영 •평가결과 모범사례 확산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	•조직과 예산에 반영 •평가결과 모범사례 확산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 •부진한 부서·기관의 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 및 감사부서 통보	•예산, 조직운영, 부서 및 직무성과평가에 반영 •우수기관 및 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포상금, 실적가점 및 인사상 우대 등	•우수한 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예산지원, 부서시상금 지급, 표창수여, 그 밖의 인사상 우대조치 등	•우수 사례로 인정되는 부서장 또는 시· 군,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과 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	•우수 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 및 인사상 우대 등	•우수부서 및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지원·포상 및 인사상의 우대
평가 위원회 구성·운영	심의사항	•당해연도 평가 실시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 •평가 대상업무 선정 및 평가 방법 •평가 결과	•당해연도 평가 실시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 •평가 대상업무 선정 및 평가 방법 •평가 결과	•성과관리 제도 및 평가방법에 관한 사항 •성과평가 결과에 관한 사항	•평가실시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 •평가대상 주요업무 선정 및 평가방법 •평가결과	•평가방향 및 평가계획	•당해연도 평가실시 방향 및 평가계획 수립 •평가대상과제 선정 및 평가방법 •평가결과 •성과관리 운영 계획수립 및 평가 •도지사 공약사항 추진상황	•평가계획 •평가 결과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구성	•위원장 2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2024.2.19.검색). https://www.law.go.kr

〈표 II-25〉 지역별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에 관한 규칙 구성 현황

구분		부산	대구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제주
성과관리	시행계획	•중·장기계획(성과관리전략계획)을 수립 •해당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	•성과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	•성과관리시행계획을 매년 수립	•매년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 수립·시행	•매년 성과관리계획 수립·시행	•매년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 수립·시행	•다음 연도 업무계획 수립지침 통보 •주요업무계획 제출 •연도별 시행계획(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시행	-	•매년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 수립·시행	•다음연도의 성과관리 시행계획 작성지침을 작성하여 평가대상기관에 통지
성과평가	대상업무	•성과관리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전략목표·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관리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전략목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개발하여 성과관리 시스템에 의하여 관리	•성과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전략목표·성과목표와 시정 주요정책 등	•성과관리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전략목표·성과목표 및 성과지표와 도정 주요정책 등	-	•성과관리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전략목표·성과목표 및 지표	-	-	-
	대상기관	•본청의 실·국·본부 및 과·담당관·팀 •기관장이 4급 이상인 직속기관·사업소 및 그 하부조직	•본청의 실·국·본부 및 실·과 •기관장이 4급 이상인 직속기관·사업소 및 그 하부조직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합의제행정기관의 부서장이 4급 이상인 부서단위 •직속기관·사업소장의 직근 하위 부서장이 5급인 부서와 사업소장이 5급인 부서	•시 본청·직속기관·사업소·합의제행정기관의 실·과·담당관 등의 부서단위 및 읍·면·동 •사업소·합의제행정기관에 하부조직이 없는 경우 사업소	•도 본청의 실·국, 실·과 및 그에 준하는 조직 •기관장이 4급 이상인 직속기관·사업소 및 그 하부조직	•도 본청 및 직속기관, 출장소, 사업소의 부서장의 직급이 4급 이상인 부서단위	•「충청북도 행정기구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따른 전 부서	-	-	•본청의 실·국·단·본부·과·담당관, 기관의 장이 4급 이상인 소속기관·합의제행정기관·하부행정기관 •필요한 경우, 기관의 장이 5급 이하인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계획수립	•매년 성과평가 계획 수립	•매년 성과평가 계획 수립	-	•매년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 수립·시행	•매년 평가계획 수립	•매년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 수립·시행	-	•「전북특별자치도 직무성과평가 운영지침」에 따름	•매년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 수립·시행	•평가계획을 수립하여 3월 말까지 평가대상기관에 통지

구분		부산	대구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제주
	정기평가	•분기평가, 종합평가 •성과평가에 따른 추진실적을 성과관리시스템에 입력	•분기평가, 종합평가 •성과평가에 따른 추진실적을 성과관리시스템에 입력	•종합평가(필요시 분기 및 반기)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추진실적으로 평가	•중간평가, 종합평가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추진실적에 대한 성과목표 달성도 및 역량 등을 종합평가	•반기평가, 종합평가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추진실적에 대한 목표달성도 및 성과와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지표달성도 평가와 종합평가로 나누어 실시
	수시평가	•시정성과와 관련하여 전체 또는 특정업무에 대하여 실시	•시정 전반 또는 특정업무에 대하여 실시	•시정 전반 또는 특정업무에 대하여 실시	-	•도민의 관심도가 높거나 현안으로 대두된 주요 정책 등에 대하여 수시평가	-	-	•주요업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수시평가 실시	•주요정책 등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시	•전체업무 또는 특정업무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
	평가단 구성	-	-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 시민으로 구성	-	-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 등으로 구성	•소속 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로 구성	-	-	•관계 공무원으로 평가실무반 운영
	위탁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	-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	-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	•필요한 때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
성과평가결과활용	결과공개	•시 행정포탈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	•성과관리시스템 및 시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	-	•성과관리 시스템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	•시스템 및 인터넷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	-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	-
	시정요구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성과평가대상에게 시정 명령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성과평가대상에게 시정 명령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 평가대상 부서에 시정 명령	•시정할 사항이 있는 경우 평가대상에게 그 시정을 명령	•평가대상에게 시정 명령	•성과평가 대상에게 시정 명령	•부서장에게 그 시정 명령	-	•평가대상 부서·기관장에게 시정 명령	•평가대상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 명령
	결과반영	•조직관리와 예산편성 등에 반영	•조직관리와 예산편성 등에 반영	•예산, 조직운영 및 직무성과평가에 반영	•조직관리와 예산편성 등에 반영	•성과관리 및 평가 결과를 인사, 조직 관리	•조직관리와 예산편성 등에 반영	•예산, 조직운영 및 직무평가에 반영	•우수기관 및 공무원 등에 대하여 예산	•인사, 조직관리와 예산편성 등에 반영	•조직·예산·인사·보수체계에 반영

구분		부산	대구	광주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전북	경북	제주
		•우수한 기관 및 공무원에게 포상이나 성과급의 지급 그 밖에 인사상 우대 조치 등	•우수한 기관 및 공무원에게 포상이나 성과급의 지급 그 밖에 인사상 우대 조치 등	•우수부서 또는 유공공무원에 대하여 표창, 포상금, 실적가점 등 인센티브 부여	•우수한 부서·기관 및 공무원에게 포상, 성과급지급, 인사상 우대조치 등	와 예산편성 등에 반영 •우수기관 및 공무원 포상, 성과급 지급, 인사상 우대 조치 요청 등에 활용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포상이나 성과급 지급 또는 그 밖에 인사상 우대 조치 등	•우수한 부서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이나 성과급 지급 또는 그 밖에 인사상 우대 조치 등	지원, 상훈, 인사상 우대 등	•우수한 부서·기관 및 공무원에게 포상이나 성과급 지급 그 밖에 인사상 우대 조치 등	•우수기관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표창수여, 포상금·성과급 지급, 인사 상 우대 등
성과평가위원회	심의사항	•성과관리전략 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 •성과평가계획 •성과평가결과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제도 개선	•성과관리전략 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 •성과평가계획 •성과평가결과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제도 개선 •시장 공약사항 추진상황에 관한 자문 및 평가	•성과관리 제도 및 평가방법 •평가결과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 •성과관리 및 평가결과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의 운영·개선	•성과관리계획 •평가계획 및 결과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개선 •도정평가에 관한 주요사항	•성과관리 및 평가계획 •성과평가 및 결과 •성과관리 및 성과평가제도 개선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 결과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	•성과관리 계획 •평가계획 및 결과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개선	•성과관리 시행계획, 평가계획의 수립 및 추진 •성과관리·평가와 관련한 제도 개선 •평가대상 범위 및 평가방법 •성과목표·성과지표 검증 •평가 결과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상 2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상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상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	•위원장 1명을 포함한 20명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
	자료요구	•성과평가대상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요구	•성과평가대상에게 자료 또는 의견 요구	•부서장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 요구	•성과관리 및 평가대상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	•관계 공무원에게 의견의 진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	•성과평가대상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을 요구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	-	•관계 공무원 에게 의견의 진술 또는 자료의 제출 요구	•관계 부서 및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 제출을 요구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2024.2.19.검색). https://www.law.go.kr

다. 기초지자체의 관련 규칙 사례

기초지자체 단위에서 정책 사업 모니터링 관련 법령 규정 사례로, 가평군의 「가평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을 살펴보았다. 기초지자체 단위에서도 실행 주체와 평가대상기관만 다르게 적용되고 성과관리계획, 성과평가, 성과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에 대해서 광역지자체 단위의 규칙과 동일하게 규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표 II-26〉「가평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주요 내용

구분		내용
성과관리	제4조 성과관리 전략계획	•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이하 "성과관리 전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성과관리 전략계획에 이와 관련이 있는 다른 법령에 따른 중·장기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 군수는 성과관리 전략계획에 기관의 임무·비전·전략목표·성과목표 등을 포함하여 4년간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2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성과관리 시행계획	• 군수는 성과관리 전략계획에 기초하여 해당 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성과관리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각 부서의 장은 다음 연도의 부서별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성과관리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 성과관리 시행계획에는 기관의 임무 · 전략목표 · 성과목표 · 성과지표와 과거 2년간의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객관적·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성과평가	제8조 성과평가 대상업무	• 성과평가 대상업무는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전략목표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로 한다
	제9조 성과평가 대상	• 군 본청의 담당관, 과·소 및 읍·면 • 기관장이 5급 이상인 직속기관·사업소 및 그 하부조직
	제10조 성과평가 계획의 수립	• 군수는 해당 정책 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성과평가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 정기평가	• 정기평가는 연 1회 실시한다. • 정기평가는 다음 해 1월에 실시하며 성과목표 달성도와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제12조 수시평가	• 군수는 군정성과와 관련하여 전체업무 또는 특정업무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성과평가 등의 위탁	• 군수는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평가·조사·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성과평가 위원회	제15조 구성 및 임기	•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제19조 자료요구	•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성과평가 대상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성과평가 결과의 활용	제22조 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 군수는 성과관리 및 평가 결과를 군 행정포탈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군수는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성과평가 결과를 조정하며, 이의신청 인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23조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	• 군수는 성과평가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성과평가 대상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 제1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받은 성과평가 대상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성과평가 결과의 반영	• 군수는 성과평가 결과를 조직관리와 예산편성 등에 반영하고, 성과가 우수한 기관 및 공무원에게 포상이나 성과급의 지급, 그 밖에 인사상 우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2024.2.26. 검색). 가평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

제3절 시행계획의 이행력 제고 방안 모색을 위한 교육 정책 모니터링 사례 분석

1. 정부 및 지자체 모니터링 사례

가. 교육부의 자체평가

교육부의 자체 평가의 중점 평가 방향은 투입보다 실제 창출한 성과에 비중을 두고 성과목표 달성도·정책효과의 평가 배점을 국조실 권고 수준 (60%)보다 높은 70%로 유지하고 있으며 상반기에는 부문별 이행상황을 점검하여 계획대비 이행실적, 문제점 등을 도출하고 하반기 성과 제고를 위한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정책 성과 창출 정도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체평가위원회 대면평가를 실시하는 등 점밀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자체 평가 결과를 부서평가에 반영(45%배점) 하여 개인 성과급과 연계하고, 자체평가위원회 지적사항을 이후 정책 개선에 반영하도록 하여 체계적인 성과 관리를 유도하고 있다.

평가에 있어서는 교육 분야 전문가 30인(외부위원 29명, 내부위원 1명)으로 구성된 자체 평가위원회를 두어 성과관리 시행계획, 자체평가 계획 등의 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 자체 평가업무 관련 주요사항 심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평가의 전문성 및 효율성을 위해 5개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성과목표 최계 및 성과지표의 적절성 검토, 관리과제 이행실적 점검 및 평가 실시, 점검(평가) 결과에 따른 정책제언, 이의 신청에 대한 타당성 등을 검토 하도록 하고 있다.

평가 방법으로는 전략 목표 및 성과목표와 연계한 관리과제별 분기별 정책 추진계획의 이행정도 및 주요실적을 점검하고 성과관리시행계획의 관리과제 실적자료를 서면으로 1차 확인·점검하고 관리과제 담당부서와 대면평가를 진행한 후 평가지표별 측정기준에 따라 정량·정성평가를 병행하고 있다. 또한 평가의 관대화를 방지하기 위해 소위별로 7등급 [1등급은 (~상위 5%), 2등급(5%~15%), 3등급(15%~30%), 4등급(30%~70%), 5등급(70%~85%), 6등급(85%~95%), 7등급(95%~)] 으로 등급화 하고, 편차 조정을 통해 과제별 최종 점수를 산정하고 있으며 2023년 평가 대상은 「2023년 성과관리 시행계획」의 61개 관리 과제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평가지표는 다음과 같다.

〈표 II-27〉 교육부 자체 평가 평가 지표 및 평가 기준

평가지표	평가기준
계획수립의 적절성 (10점)	• 관리과제가 국정기조 (국정과제, 부처업무계획 또는 기타주요 국정기조· 철학) 및 전략목표· 성과목표와 연계된 정도 • 관리과제 설정 시 내부토론, 전문가 의견수렴 반영정도 • 추진계획이 과제 목표 달성에 적절하게 수립된 정도 • 과제 목표 달성을 위한 예산·법령·인력·조직의 적절성 • 과제가 지행하는 기대효과의 적절성

평가지표	평가기준
집행과정의 충실성(20점)	• 과제 추진계획 정상 추진 정도 • 미완수 과제에 대한 조치방안의 적절성 • 전년도 자체평가 결과 (개선·보완필요사항)환류 정도 • 외부지적 (여론, 국회, 감사원 등)에 대응한 정책개선 노력 • 과제 추진과정에 국민참여, 의견수렴, 현장소통 정도 • 과제 추진시 관련 부처· 부서와의 협업 노력
성과목표 달성도(30점)	• 성과지표의 관리과제 대표성 • 성과지표와 국민 체감 성과창출 간의 연계성 • 성과지표 목표치가 도전적·적극적으로 설정된 정도 • 성과지표 달성여부 및 정도
정책효과(40점)	• 관리과제가 당초 의도한 정책효과 발생정도 • 당초 의도한 효과 외에 부수적 효과가 있을 경우 함께 고려하여 정성평가 • 현재 발생한 정책효과의 지속·발전가능성, 향후 경제적 ·사회적 효과가 파급될 것으로 기대되는 정도 • 과제 이행 및 성과 창출을 위해 기울인 노력(대내외적 불리한 여건/ 외생변수 극복노력 포함) 정성평가

출처: 교육부 2023년 자체 평가결과 보고서

교육부의 성과관리 체계의 구성은 국정과제를 중심으로 4대 개혁분야를 발굴하고 그에 따른 10대 핵심정책을 기반으로 전략목표와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을 개발 하여 평가하고 있다.

〈표 II-28〉 평가지표의 주요 내용

평가영역	평가근거	성과지표	세부지표	담당기관(조사처)
Ⅰ.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한 맞춤교육의 실현으로 학생 한 명 한 명을 미래사회의 인재로 양성한다 [학생 맞춤]	국정과제 82 등	교육현장 만족도 종합지수	수업혁신 연수 만족도	한국교총종합교육연수원
			학교업무경감 만족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수요자 나이스 세비스 만족도	교육부
Ⅱ. 국가 교육·돌봄 채임을 강화하고,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사회정책 추진체계를 고도화 한다 [가정 맞춤]	국정과제 84 등	초등학생 방과후 활동참여율		시도 교육청
		범부처 협업체계 운영 횟수		교육부
Ⅲ. 규제 없는 과감한 지원으로 교육을 통해 지역발전을 선도한다 [지역 맞춤]	국정과제 83 국정과제 85 등	지자체 내 대학 관련 업무 전담부서 설치(개)		교육부 지역인재정책과
Ⅳ. 누구나 인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기반을 구축하고, 평생학습 지원을 강화하며,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 한다. [산업·사회맞춤]	국정과제 81 등	평생학습 참여율		한국교육개발원
Ⅴ. 교육개혁을 뒷받침하는 최고의 교육행정 서비스를 제공한다 [행정 지원분야]	국정과제 63, 64 등			

출처: 교육부 2023년 자체 평가결과 보고서

나. 시도교육청에 대한 평가

교육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에 대한 평가는 개별평가로 이루어 지고 있으며 평가편람으로 3개항목 17개 (2023년도 기준) 지표로 구성된 평가지표 체계를 사전에 제시하고 있으며 시도교육청별 국가시책 추진현황 등 자료에 기반하여 교육부에서 운영하는 시도교육청 평가위원회에서 점검·분석 후 평가 결과를 확정하며 평가 영역별 총평, 우수사례, 시도교육청별 총평 및 평가지표별 획득 점수 및 만족도 조사 결과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다.

근거법령으로는 법률「초중등교육법」제9조 (학생, 기관, 학교평가) 제2항에 따르며 대상기관은 17개의 시도 교육청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시책사업에 대한 추진현황 점검, 교육공동체 만족도 조사 및 주제별 심층 분석 진단을 통해 시도 교육청 정책의 질 제고 및 교육자치 역량 강화가 평가의 주요 목표이다

〈표 II-29〉 시도교육청 평가 지표의 주요 내용

평가영역	평가근거	세부평가지표
미래인재 양성	국정과제 '100만 디지털인재양성'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	고교학점제 도입기반 조성노력
		AI 교육기반 마련 및 디지털 교육격차 해소
		직업교육 경쟁력 강화
		임용예정자 대상연수 실적
		교육실습 협력학교 증가율
		학생 1인당 진로체험 참여회수
국가교육 책임강화	국정과제 '국가교육책임제 강화로 교육격차해소'	기초학력향상지원
		한글책임교육 내실화
		통합교육 내실화
		방과후 초등돌봄 지원 강화
		유아교육 교육력제고
		다문화교육지원 강화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환경 조성	「학교폭력예방법」,「학교보건법」 안전·건강 관련 법령	학교폭력 예방 역량 지원
		미세먼지 계기교육 실적
		교내보차도 분리바 학생안전교육
		학생자살예방을 위한 노력
		학교 성희롱· 성폭력 근절기반 강화 및 양성평등 교육활성화

출처: 정부업무평가 자료 재구성

다. 시행계획의 이행력 제고를 위한 사례 분석 : 경기도교육청의 주요정책사업에 대한 예산 분석

경기도교육청의 사업비 지출은 연평균 2.8% 증가 전망이며 그 중 교육사업비는 교육감 정책사업과 국가주요 정책사업을 연계하여 책임돌봄 교육 사업(유보통합 추진, 늘봄학교 확산),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사업(에듀테크 활용 학력향상 등) 등의 추진으로 교수학습활동지원, 방과후학교운영, 돌봄교실운영, 디지털교육기반마련, 학생복지지원 등 3.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설사업비는 국가주요정책사업인 학교시설 복합화 지원, 학교신증설 및 과밀학급 해소,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등을 위해 연평균 2.2%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4~2028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의 예산전망에 있어 교육감정책사업과 국가 주요 정책사업의 연계에 따른 예산의 계획의 명시가 되어 있으나 예산의 근거에 따른 자료는 부족해 보인다.

〈표 II-30〉 경기도교육청 중기 예산 전망

(단위: 백만원, %)

구분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연평균 증가율
계	43,636,596	7.724.714	8,713,898	9,489,459	9,094,503	8,614,022	2.8
교육사업비	23,643,438	4.440.140	4,653,525	4,718,841	4,798,664	5,032,268	3.2
교수활동지원	1,866,488	344,563	357,175	359,907	385,826	419,017	5.0
누리과정교육비	5,406,264	1.082.473	1,068,366	1,069,366	1,074,366	1,111,693	0.7
유아교육지원	784,622	151.290	152,874	156,528	160,393	163,537	2.0
방과후학교운영	136,163	29,385	24,713	25,089	25,472	31,504	1.8
돌봄교실운영	956,519	161,608	172,208	188,676	206,790	227,237	8.9
디지털교육기반마련	1,225,733	172,139	259,682	260,877	262,201	270,834	12.0
특수교육진흥	588,817	103,571	110,139	117,214	124,838	133,055	6.5
직업계고교육지원	619,425	122,746	123,275	123,829	123,881	125,704	0.6
학생복지지원	803,163	156,208	157,328	158,581	160,669	170,377	2.2
기타교육사업배	11,256,244	2,116,157	2,227,765	2,259,784	2,274,228	2,379,310	3.0
시설사업비	19,993,158	3,284,574	4,060,373	4,770,618	4,295,839	3,581,754	2.2
학교 신· 증설	9,774,324	1,508,342	2,875,081	2,862,649	1,726,192	802,060	△14.6
학교교육환경개선	10,218,834	1,776,232	1,185,292	1,907,969	2,569,647	2,779,694	11.8

출처: 2024~2028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경기도교육청)

경기도교육청의 정책사업별 지출전망을 살펴보면 유아 및 초등등 교육부문에서는 국가주요정책사업인 유보통합 추진, 늘봄학교 확대 등 책임돌봄강화, 디지털기반 교육혁신, 학교 교육력 제고 등을 위해 교수학습활동지원, 학교재정지원관리, 학교시설여건 개선과 관련된 정책사업 등이 증가할 전망이며 유아 및 초등교육 부문은 연평균 2.7%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4~2028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경기도교육청)

〈표 Ⅱ-31〉 중기 유아 및 초중등교육 부문 지출 전망

(단위: 백만원, %)

구분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연평균 증가율
계	54,538,204	9,917,529	10,506,357	11,550,692	11,513,484	11,050,142	2.7
인적자원운영	888,074	175,537	175,507	176,526	177,841	182,963	1.0
교수학습활동지원	6,205,682	1,117,405	1,223,236	1,238,506	1,278,277	1,348,258	4.8
교육복지	8,243,341	1,608,668	1,603,394	1,621,779	1,660,294	1,749,206	2.1
보건급식	5,772,581	1,049,397	1,152,368	1,152,989	1,154,231	1,263,596	4.8
학교재정지원관리	14,708,269	2,842,444	2555,039	2,853,534	3,210,262	3,246,990	3.4
학교시설여건개선	18,720,257	18,720,257	3,797,113	4,507,358	4,032,579	3,259,129	1.1

출처: 2024~2028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경기도교육청)

평생교육부문에 있어서는 연평균 1.5%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는데 이는 평생교육 기회 확대 등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표 Ⅱ-32〉 중기 평생교육 부문 지출 전망

(단위: 백만원, %)

구분	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2028년	연평균 증가율
계	125,723	24,561	24,554	25,074	25,458	26,076	1.5
평생교육	125,723	24,561	24,554	25,074	25,458	26,076	1.5

출처: 2024~2028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경기도교육청)

라. 지자체 단체장의 공약에 대한 모니터링 사례

매니페스토(manifesto)는 '선거 매니페스트(electoral manifesto)'라고 불리는 것으로 정당들이 선거에 당선되어 집권하게 될 경우 추진할 입법 내용의 대강과 정책의 방향을 문서화 한 것을 말한다.(김선혁, 2010) 매니페스토 운동은 정당들의 정강과 후보들의 정책공약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유권자에게 제공해 주고 정강과 정책공약들을 분석 및 평가하여 책임정치를 촉구하고 정책선거에 대한 대중의 관심을 고조시켜 시민의 정치참여를 촉구하는 정치 개혁 시민 운동이라 할 수 있다.(김선혁, 2010)

오늘날에는 주로 선거와 관련하여 출마자가 유권자에게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공약'과 함께 실천내용을 쉽게 검증할수 있도록 주기적으로 약속의 이행과정 정보를 밝히는 것을 의미하며 선거 매니페스토 운동은 정책공약을 만드는 과정부터 실천 과정까지 유권자의 의사를 제대로 반영하였는지에 대한 평가와 함께 당선 이후에도 시민들의 의사를 반영하고 실천하고 있는지에 대한 주기적인 평가가 필요하다.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2024.3.13.일 검색)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는 대통령, 국회의원, 지자체, 교육감,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매니페스토 이행평가 및 토론회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각각의 대상 들은 자체적인 평가결과에 대해 홈페이지 상에 공개하고 있다. 이러한 매니페스토 운동이 자리 잡게 된다면 국가의 정책 기반자 들의 공약 이행력에 대한 욕구가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마. 시행계획의 이행력 제고 관점에서 민선 4기 경기도 교육감 공약 이행에 대한 평가 현황 분석

1) 공약이행 평가 개요

공약이행 평가에 대한 근거는 제4대 주민직선 경기도 교육감 공약사항 실천 및 관리계획(2019.3) 및 경기도 교육감 공약이행 관리지침 (제5장 공약이행 평가 및 공개)에 의거하고 있다

공약이행 종합평가 실시 대상은 4대분야 51개 과제로 대상기간은 2018년 7월 1일 부터 2022년 3월 31일 까지이다. 평가단은 경기 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할 수 있는 외부 · 내부 교육현장 구성원을 평가단으로 교장(단장)외 16명으로 구성되며 공약과제별 추진 사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결과, 공약평가 보고서 개발 등을 수행한다.

평가는 공약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를 기본자료로 활용하며 교육감인수위 백서, 공약이행 중간평가보고서, 경기도교육청 자체 평가보고서 등 경기교육 주요 정책에 관한 실천계획과 평가와 관련된 각종보고서를 활용하고 있으며 경기교육 정책과 관련된 각종 연구자료 및 통계자료 등을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세부적 공약관리는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공약사업을 추진하면서 공약관리카드를 작성 관리 하게 된다. 이후 담당부서 안에서 공약이행에 대한 자체평가를 실시하며 실적이행률 등을 총괄부서에 제출하면 총괄부서에서는 실적 및 이행률 등을 확인하고 내부 평가를 통해 실무부서와의 협의를 통해 공약의 실천 변경 조정 등을 할 수 있다. 공약관리위원회에서는 공약의 종합평가를 실시하며 공약의 변경 조정 등에 대한 심의를 한다. 평가내용은 공약과제 별 정책의 가치성, 충실성, 효과성 등을 평가한다

경기도교육청은 '공약이행 종합평가서'를 발표하고 평가결과를 환류하는 절차를 밟게 되며 평가결과를 교육청 홈페이지 및 매니페스트 홈페이지 공개하고 있다.

〈표 Ⅱ-33〉 경기도 교육청의 공약관리 체계

공약관리 체계	내용
1.기본방침	• 실천계획을 통한 공약사업 추진의 내실화 • 공약사항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공약별 주관부서와 담당자 지정 • 공약 추진상황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내부평가 • 공약 이행 여부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인 외부평가 진행 • 평가 결과 경기도 교육청'공약&매니페스토' 홈페이지 공개
2. 공약관리체계	
3. 공약평가 체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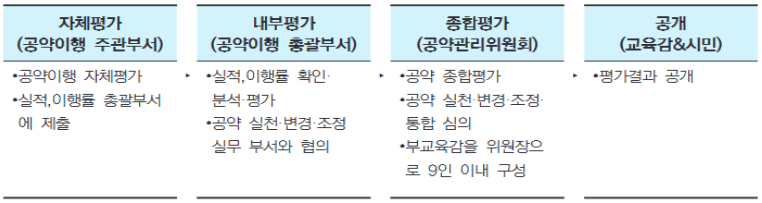 • 평가주체: 공약이행 주관부서 및 총괄부서 • 평가시기: 매년 2회 이상 공약이행 점검 및 자체평가 실시 • 평가내용 : - 공약과제별 목표에 따른 추진 실적 및 예산현황 - 공약 추진실적 분석 및 대책, 향후 추진계획(발전방향) - 공약과제별 정책의 가치성, 충실성, 효과성 등 평가
4. 공약이행 종합평가	• 공약이행 중간평가 • 공약이행평가단 구성: 교장외 9명구성 • 평가방법과 결과 정리 • 공약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 검토 및 분석 • 정책의 가치성, 집행의 충실성, 집행의 대응성, 목표 달성도, 정책의 효과성 평가 • 공약 이행 실적 및 현장 의견 등을 종합하여 5단계 척도 평가 • 공약이행 평가를 바탕으로 '공약이행 중간평가 보고서' 개발 및 결과 환류 • 공약이행 종합평가 • 공약이행 평가단 구성: 교장(단장)외 16명구성 • 평가기간: 2022.03.18.~5.30 • 평가방법과 결과 정리 • 공약 주관부서에서 제출한 자체평가보고서를 기본자료로 활용, 주요정책에 대한 각종 보고서 및 고약 추진과 관련된 기타자료를 참고하여 평가 • 경기교육 정책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 및 경기교육 발전과제 도출 • '공약이행 종합평가보고서' 개발 및 평가 결과 환류

출처: 경기도교육청 공약이행 종합평가 내용 재구성

공약과제별 자체 평가 결과보고서에서는 세부평가 항목에 대한 주요사업 내용 및 관련법적 근거 공약이행 추진 실적 및 예산 집행 현황 등을 제공하고 있다.

자체평가의 평가항목은 정책의 가치성, 집행의 충실성, 정책의 효과성으로 5단계 척도에 의해 평가하고 있다.

〈표 Ⅱ-34〉 경기도 교육청의 자체 평가 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5단계 척도				
		매우 높음	높음	보통	낮음	매우 낮음
정책의 가치성	공약이 중요한 과제로 시대적, 사회적, 교육적 가치 추구, 경기교육 정책방향 및 가치 반영					
집행의 충실성	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관리, 추진성과(우수사례)발굴 및 홍보, 공약 추진과정의 민주적 절차와 집행의 효율성					
정책의 효과성	공약에서 제시한 정책 시행을 통한 교육적 효과(수혜자 만족도, 교육현장에 미친 영향정도)					

출처: 경기도교육청 공약이행 종합평가 내용 재구성

2) 4대 경기도 민선교육감의 공약 이행도 및 예산 현황

경기도교육청 민선4기 교육감의 공약은 총 51개로 22년 3월까지의 종합평가 결과 완료(공약 이행이 완료되어 종료) 사업은 총 2개였으며 이행 후 계속 추진(공약 이행 완료 후 계속 추진중인) 사업은 39개, 정상추진 (임기종료 시점까지 완료가 예상되는) 사업은 3개 일부 추진(추진하고 있으나 예상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부진한) 사업은 7개로 나타났다.

일부추진 사업은 경기꿈의 학교 확대·발전 및 교육협동조합 활성화 사업, 특수교육지원 확대 사업, 학교 안팎 대안교육 강화 사업, 고교평준화 지역확대 및 상향평준화 여건조성사업,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 여건 강화 사업, 성(性)인권 보호 강화와 인권 친화적 생활문화 확산사업, 주민과 함께하는 학교시설 이용 확대사업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공약 이행률은 97.7%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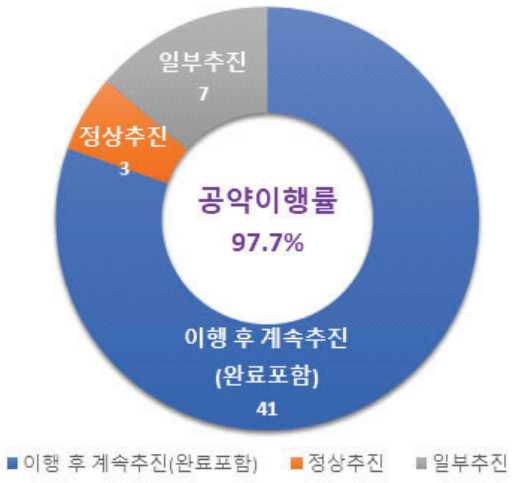

[그림 Ⅱ-13] 공약 이행률

〈표 II-35〉 4대 민선교육감 공약 중 일부 추진사업

공약관리번호	공약과제명	공약이행률	이행완료도
123	경기꿈의 학교 확대· 발전 및 교육협동조합 활성화	94%	일부추진
143	특수교육 지원확대	90%	
144	학교 안팎 대안교육강화	81%	
148	고교평준화 지역 확대 및 상향평준화 여건 조성	80%	
212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 여건 강화	90%	
232	성(性)인권 보호 강화와 인권 친화적 생활문화 확산	62%	
325	주민과 함께하는 학교시설 이용 확대	84%	

출처: 경기도교육청 공약이행 종합평가 내용 재구성

분야별 관련 예산을 살펴보면 행복한 성장으로 꿈을 키우는 학교혁신사업에 4,671,735 백만원을 계획하였으나 5,899,501 백만원을 사용하여 임기 내 가장 재원을 많이 투입한 사업으로 나타났다. 임기 전체 기간으로 볼 때 총 예산은 6,239,609 백만원으로 계획 대비 22.7% 예산 사용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I-36〉 공약 예산 현황 (2018~2022)

공약관리번호	계획	연도별 확보내역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1. 행복한 성장으로 꿈을 키우는 학교 혁신	4,671,735	633.890	757,366	1,363,028	1,642,291	1,502,926	5,899,501
2. 참여와 소통으로 만들어 가는 교육자치	161,477	1.552	2,373	1,976	1,707	1,836	9,444
3. 상상과 도전으로 학생이 주도하는 미래교육	418,841	46.444	34,953	119,021	47,059	79,510	326,987
4. 공감과 지원으로 실천하는 행정혁신	54,801	312	592	999	1,035	739	3,677
합계	5,306,854	682.198	795,284	1,485,024	1,692,092	1,585,011	6,239,609

출처: 경기도교육청 공약이행 종합평가 내용 재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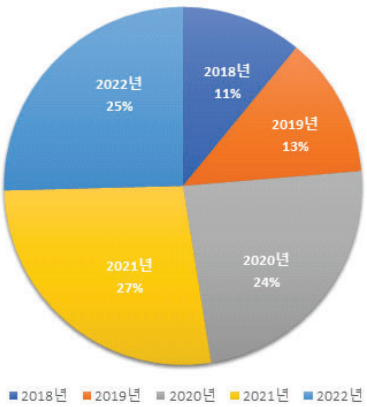

[그림 II-14] 공약예산 현황

공약 과제별 예산현황을 살펴본 결과 51개의 공약사업 중 17개 사업에서 계획 대비 예산의 증가가 보였고 34개의 공약과제 사업은 계획대비 예산의 감소가 있었다. 성과분석에 있어서 적절한 예산의 계획과 투입의 결과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짜임새 있는 예산계획은 성과결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이므로 국교위에서의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평가를 시행함에 있어서도 예산사용에 대한 평가는 중요할 것이다.

〈표 II-37〉 공약과제별 예산현황

공약관리번호	공약과제	계획	연도별 확보내역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11.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		316,651	13,787	51,713	61,713	73,406	82,414	282,493
111. 학생학습 선택권 확대		157.151	6.011	7.853	9.867	13.507	19.302	56.540
112. 교사별 교육과정 도입(교사의 수업 및 평가권 보장)		760	100	190	190	190	190	800
113. 창의적 문제해결 중심의 융합교육강화		38,442	6,566	14,598	12,864	13,910	11,776	59,713
114. 사고력신장을 위한 독서토론 교육강화		120,298	1,109	29,072	38,252	45,799	51,147	165,379
12. 혁신학교 심화		353,250	47,808	61,098	66,071	65,347	84,036	325,169
121.혁신학교 심화 확대		115,682	15,240	18,625	22,354	22,148	37,830	116,199
122. 경기도 전 지역의 혁신교육지구 추진		76.716	8.045	16.171	16.195	14.410	15.135	69.955
123. 경기꿈의학교 확대·발전 및 교육협동조합 활성화		117,531	17,160	19,772	19,388	20,548	22,902	99,770
124. 경기꿈의대학 프로그램 다양화와 내실화		37,269	7,362	7,027	7,327	7,627	7,556	36,898
125.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마을 속으로 확대		6,052	-	313	807	614	614	2,347
13.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		432,707	454,435	111,385	360,523	292,218	304,804	1,523,366
131. 공동체 관계회복을 위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원 및 치유강화		1,279	232	238	250	300	370	1,389
132. 위(wee)프로젝트 운영 확대		49,539	5,835	7,100	7,920	7,015	7,100	34,970
133.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240,961	447,177	101,627	348,831	281,034	292,089	1,470,758
134. G-스포츠클럽 육성 및 학생선수 보호		98,099	986	2,349	3,508	3,857	5,196	15,895
135. 학생 참여형 교육급식 운영		42,830	205	73	15	11	49	354
14. 공정한 교육기회보장		3,569,126	117,861	532,360	875,261	1,211,320	1,031,671	3,768,473
141. 기초학력보장		19,635	3,395	3,680	3,980	4,559	9,200	24,814
142. 유아교육의 공교육확대		498,112	100,135	341,825	249,836	300,2958	28,370	1,020,462
143. 특수교육 지원 확대		265,591	5,481	6,043	5,650	6,061	6,408	29,641
144. 학교 안팎 대안교육 강화		25,690	2,375	2,610	2,541	2,592	2,984	13,103
145. 교육복지 통합지원체제 구축 및 지역협력 강화		비예산						
146. 고교무상교육 단계적 실현과 교육복지 확대		2,742,571	780	171,016	606,702	884,705	965,866	2,626,068
147. 외고·국제고·자사고의 단계적 일반고 전환		6,647	3	2	2	4	3	15
148. 고교평준화 지역 확대 및 상향 평준화 여건 조성		10,880	5,692	7,183	9,550	13,104	18,840	54,369
21. 학교민주주의 체제 강화		2,099	128	224	274	282	206	1,114
211. 교육 3주체의 학교운영 참여·결정권 확대		2,099	128	224	274	282	206	1,114
212.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 여건 강화		비예산						
22.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157,771	1,280	1,783	1,505	1,209	1,430	7,207
221. 교직원의 교육활동 전문성 신장		157,001	1,022	1,230	1,170	926	1,018	5,366

공약관리번호	공약과제	계획	연도별 확보내역					
			2018	2019	2020	2021	2022	계
222.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280	50	225	75	75	35	460
223. 학부모역량 강화 연수프로그램 및 이수 인증제 운영		480	208	328	260	207	377	1,381
23. 교육공동체 인권 존중		840	48	134	52	57	3	293
231. 교육활동 보호 예방기능 강화 및 치유지원 확대		155	45	42	43	38	-	168
232. 성(性) 인권 보호 강화와 인권 친화적 학교생활 문화 확산		685	3	92	9	18	3	125
24. 정책참여와 소통 활성화		768	96	232	144	160	198	830
241. '청소년교육의회'추진		396	73	151	95	95	60	473
242. 정책참여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책참여 및 소통 활성화		372	25	81	49	65	138	357
31. 학생주도 교육확산		25,452	2,616	5,660	7,338	6,872	3,340	25,825
311. 학생주도 프로젝트 활동 강화		21,868	2,397	4,867	4,840	4,209	4	16,218
312. 현장체험(8대분야)교육 활성화		2,295	-	530	128	1,065	1,704	3,427
313. 학습 플랫폼 몽실학교 확대		1,268	219	262	2,370	1,597	1,632	6,081
32. 다양한 미래교육 환경 구축		193,169	23,296	5,228	81,695	8,525	38,952	157,695
321. 미래기술 적용 교육환경 개선		146,081	19,287	1,385	67,300	5,968	3,226	97,166
322. 학교공간 재구성		4,883	142	60	505	1,097	33,771	35,575
323.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합시설 조성		18,125	104	1,496	4,395	-	-	5,995
324. 학교 시설 개방 활성화		비예산						
325. 주민과 함께하는 활교시설 이용 확대		24,080	3,763	2,287	9,495	1,460	1,955	18,960
33. 미래형진로· 직업교육 생태계 구축		160,825	16,821	18,555	23,480	24,667	29,186	112,709
331. 학생 선택 중심 맞춤형 진로교육 운영		7,914	1,194	2,785	2,205	2,734	2,320	11,238
332. 미래형 직업교육 확대		130,399	13,740	13,880	17,146	18,524	23,796	87,087
333.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및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강화		23,266	1,888	1,889	4,129	3,409	3,069	14,384
34. 평화교육확대		39,382	3,711	5,510	6,508	6,996	8,033	30,758
341.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8,713	5	337	7	106		455
342. 다름을 존중하는 다문화 교육 강화		30,669	3,705	5,173	6,502	6,890	8,033	30,303
41. 교육청 조직 혁신		50,000	-	-	20	80	-	100
411. 학교 자치 지향 교육청 조직 개편 및 일하는 방식 개선		36	비예산					
412. 현장중심의 교육행정 구현을 위한 행정기구 신설 및 기능강화		50,000	-	-	20	80	-	100
42 교직원 인사혁신		2,947	24	275	674	696	564	2,233
421. 비정규직 고용 안정화와 차별없는 직장 문화 조성		비예산						
422. 교원·교육전문직원 인사제도 개선		1,739	-	35	39	72	50	195
423. 일반직 인사 혁신		1,208	24	240	635	624	515	2,038
43. 청렴문화정착		1,818	289	317	306	259	174	1,345
431. 반부패 청렴도 강화 및 투명한 감사 행정실현		1,818	289	317	306	259	174	1,345
44. 교육재정혁신		비예산						
441.학교 예산의 편성· 운영 자율권 확대		비예산						

출처: 경기도교육청 공약이행 종합평가

3) 4대 민선교육감의 공약 평가 근거 및 추진 부서

다음은 공약에 따른 공약과제 및 관련근거 및 담당 부서를 제시하였다. 대부분의 공약의 관련 근거는 교육법 및 경기도교육청 조례에 근거하고 있으며 국정과제를 근거로 하고 있는 공약과제는 51개 과제 중 6개로 나타났다. 2022년도에 경기도 교육감이 바뀜에 따라 공약이행평가에 시민·교직원·청소년 평가단이 참여하는 등 공약이행 평가 방법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표 II-38〉 제 4대 민선교육감의 공약 평가 근거 및 평가 부서

공약		공약과제	관련근거	평가부서
목표 1. 행복한 성장으로 꿈을 키우는 학교혁신	11 학생중심 교육과정 운영	111. 학생학습 선택권 확대	• 경기교육발전계획 • 국정과제 50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44조 3항, 국정과제 50-4	학교교육과정과
		112. 교사별 교육과정 도입(교사의 수업 및 평가권 보장)	• 초·중등교육법 제 20조 제 1항, 제4항 • 경기교육발전계획 1-1-2 • 초·중등교육법 제 29조	학교교육과정과
		113. 창의적 문제해결 중심의 융합교육강화	• 과학·수학·정보 교육 진흥법 제 4조, 제 5조 • 경기도 교육청 메이커교육 활성화 조례 • 경기도 교육청 4차 산업혁명 교육진흥을 위한 조례 • 경기도교육청 사물인터넷 구현을 위한 인재양성에 관한 조례	융합교육정책과
		114. 사고력신장을 위한 독서토론 교육강화	• 독서문화진흥법 제 10조 • 학교도서관진흥법 제 12조 및 15조 • 경기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 제 14조	도서관정책과
	12 혁신학교 심화	121. 혁신학교 심화 확대	• 경기도교육청 혁신학교 운영·지원조례 • 2021~2023 경기교육 기본계획 3-2-1	학교정책과
		122. 경기도 전 지역의 혁신교육지구 추진	• 경기도교육청 혁신교육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	학교정책과
		123. 경기꿈의학교 확대·발전 및 교육협동조합 활성화	• 경기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 사회적 경제 인재양성 종합계획(교육부 2018.7.3.) •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학교 내 협동조합 지원계획(교육부 2018.8)	마을교육공동체 정책과
		124. 경기꿈의대학 프로그램 다양화와 내실화	• 경기꿈의 대학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마을교육공동체 정책과
		125. 방과후학교, 돌봄교실 마을 속으로 확대	• 100대 국정과제, 49-2 •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운영 실행계획 (2018.4.4.) • 초·중등교육과정 총론 (교육부 고시)	마을교육공동체 정책과
	13 안전하고 건강한 학교문화 조성	131. 공동체 관계회복을 위한 학교폭력 사안처리 지원 및 치유강화	•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 16조, 제 17조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 18조 • 2021~2023 경기교육 기본계획	학생생활인권과

공약		공약과제	관련근거	평가부서
		132. 위(wee)프로젝트 운영 확대	• 초·중등 교육법 제 19조의 2, 제 28조 • 위(WEE)프로젝트 사업관리·운영에 관한 규정	학생생활인권과
		133.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교육환경개선과
		134. G-스포츠클럽 육성 및 학생선수 보호	• 학교체육진흥법 제 3조, 제 42조, 제 52조 등	학생건강과
		135. 학생 참여형 교육급식 운영	• 2017-2022 경기교육 발전계획 등	학생건강과
	14 공정한 교육기회 보장	141. 기초학력보장	• 초·중등교육법 제 28조 등	학교교육과정과
		142. 유아교육의 공교육확대	• 교육기본법 제 9조 등	유아교육과
		143. 특수교육 지원 확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 5조 등	특수교육과
		144. 학교 안팎 대안교육 강화	• 초·중등 교육법 제 28조 및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 54조 등	학생생활인권과
		145. 교육복지 통합지원체제 구축 및 지역협력 강화	• 교육기본법 제 27조 제 1항 •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교육복지기획과
		146. 고교무상교육 단계적 실현과 교육복지 확대	•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등	재무기획관
		147. 외고·국제고·자사고의 단계적 일반고 전환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76조의 3 등	학교정책과
		148. 고교평준화 지역 확대 및 상향 평준화 여건 조성	• 경기교육 발전계획 • 국정과제 50	진로직업정책과
목표 2. 참여와 소통으로 만들어가는 교육자치	21 학교민주주의 체제 강화	211. 교육 3주체의 학교운영 참여·결정권 확대	• 초·중등교육법 제 17조, •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 운영 조례	민주시민교육과
		212. 교원의 교육활동 전념 여건 강화	•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 64조 • 국정과제 50-5 미래사회에 부합하는 교원 전문성 신장 등	학교정책과
	22 교육공동체 역량 강화	221. 교직원의 교육활동 전문성 신장	• 교육공무원법 제 40조 (특별연수) 제1항 등	교육역량개발과
		222. 학생자치활동 활성화 지원	• 초중등교육법 제 17조 등	민주시민교육과
		223. 학부모역량 강화 연수프로그램 및 이수 인증제 운영	•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교육기본법 제13조 등	학부모시민협력과
	23 교육공동체 인권존중	231. 교육활동 보호 예방기능 강화 및 치유지원 확대	•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 헌법 제 31조 제 4항, 교육기본법 제 14조	교육역량개발과
		232. 성(性) 인권 보호 강화와 인권 친화적 학교생활 문화 확산	• 경기도 교육청 성 인권 보호 종합대책	학생생활 인권과
	24 정책참여와 소통 활성화	241. '청소년교육의회' 추진	• 청소년 기본법 제5조의 2 • 초중등 교육법 제 17조	민주시민교육과

공약		공약과제	관련근거	평가부서
		242. 정책참여시스템 구축을 통한 정책 참여 및 소통 활성화	• 경기도 교육정책자문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 등	정책기획관
목표 3. 상상과 도전으로 학생이 주도하는 미래교육	31 학생주도 교육 확산	311. 학생주도 프로젝트 활동 강화	• 초·중등학교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융합교육정책과
		312. 현장체험(8대분야) 교육 활성화	• 초중등교육법 제 23조 • 경기도교육청 자유학기제 및 현장 체험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	융합교육정책과
		313. 학습 플랫폼 몽실학교 확대	• 경기도교육청 몽실학교 설치·운영 조례	마을교육공동체 정책과
	32 다양한 미래교육환경 구축	321. 미래기술 적용 교육환경 개선	• 교육기본법 제 23조(교육의 정보화)	교육정보담당관
		322. 학교공간 재구성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 26조 등	미래학교 기획과
		323.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복합시설 조성	• 학교 복합시설 설치 및 운영·관리에 관한 법률 등	시설과
		324. 학교 시설 개방 활성화	• 초 ·중등교육법 제 11조 등	재무기획관
		325. 주민과 함께하는 활교시설 이용 확대	• 경기도교육청 경기학교 예술창작소 운영·지원 조례	학생건강과
	33 미래형 진로·직업 교육생태계 구축	331. 학생 선택 중심 맞춤형 진로교육 운영	• 진로교육법 및 동법 시행령 등	진로직업정책과
		332. 미래형 직업교육 확대	• 직업교육훈련 촉진법 제 6조 • 국정과제 52-3, 직업교육 국가책임 강화 등	진로직업정책과
		333. 학습중심 현장실습 운영 및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강화	•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제 7조 등	진로직업정책과
	34 평화교육 확대	341. 평화통일교육 활성화	• 통일교육지원법 제 8조, 동법 시행령 제 6조의 2 등	민주시민교육과
		342. 다름을 존중하는 다문화 교육 강화	• 교육기본법 제 4조, 다문화가족지원법 제 10조 등	민주시민교육과
목표 4. 공감과 지원으로 실천하는 행정혁신	41 교육청 조직 혁신	411. 학교 자치 지향 교육청 조직 개편 및 일하는 방식 개선	• 교육청 조직 개편 특별위원회 구성·운영계획 (2019.7.31.) 등	행정관리담당관
		412. 현장중심의 교육행정 구현을 위한 행정기구 신설 및 기능강화	•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 34조 등	행정관리 담당관
	42 교직원 인사 혁신	421. 비정규직 고용 안정화와 차별없는 직장 문화 조성	• 경기도교육청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무기계약직 전환 등에 관한 조례 등	노사협력과
		422. 교원·교육전문직원 인사제도 개선	• 교육공무원법 등	교원정책과
		423. 일반직 인사 혁신	•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등	총무과

공약		공약과제	관련근거	평가부서
	43 청렴 문화정착	431.반부패 청렴도 강화 및 투명한 감사 행정 실현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감사관
	44 교육재정 혁신	441.학교 예산의 편성·운영 자율권 확대	• 경기도 공립학교 회계 규칙 제 9조(예산 편성 기본지침)	정책기획관

출처: 경기도교육청 공약이행 종합평가 내용 재구성

바. 서울특별시 민선8기 공약 이행에 대한 평가

1) 공약 이행 평가 개요

서울특별시 민선 8기의 기획담당관으로 공약사항 전반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및 조정을 통해 총괄관리를 하며 공약사업 추진상황에 대한 분석·평가·모니터링 및 이행 실적에 대한 대시민 공개 및 외부평가를 수행하고 있다. 공약사업 추진 담당부서는 사업별 실천계획 및 공약사업 추진상황 관리를 수행에 있어 공약실명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사업별 실천계획서에 따라 정기 및 수시 자체 평가 및 관리를 하고 있다.

공약에 대한 전반적인 관리는 도시 경쟁력 포럼 등을 통해 공약사업별 목표 설정의 적정성, 추진계획의 이행가능성, 선결 또는 극복과제, 시민체감· 만족도 제고방안 및 외부평가 대응 전략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수렴을 시작으로 공약실천계획서 수립하고 총괄부서 (기획담당관)에서 민선 8기 서울시정의 철학과 비전, 핵심공약, 연차별 추진계획, 재원 투자계획 등을 작성한다

이에 따른 실천 계획은 주관부서에서 작성하게 되어 있는데 공약사항의 적정성, 실현가능성, 투자재원의 조달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정책목표, 공약사업 내용, 사업기간, 연차별 추진계획, 연차별 투자수요, 타 기관 등과의 협조사항, 시민참여 계획 및 실적 등을 작성하게 된다. 이후 시민공약평가단을 위촉하여 회의를 거쳐 민선 8기 공약사업을 확정하고 시민에게 공개하게 된다

이 후 확정된 공약 실천계획을 바탕으로 공약사업을 추진하며 이행상황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주관부서는 공약관리 카드를 작성하게 된다. 공약실천계획서 상 목표치 등은 원칙적으로 임의조정(폐기·변경 등)이 불가하며 반기별로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하며 외부기관 평가시 기본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공약이행에 대한 평가는 반기 연도별로 공약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 평가하고 공약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사항 검토를 위해 공약 점검보고회를 연 1회 개체하고 공약사항 평가결과는 필요시 부서평가 및 성과관리 등에 반영되며 추진상황 및 평가결과는 시 누리집에 정기적(반기별)로 게시, 시민과 공유하고 있다

공약점검의 기준은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평가기준을 준용하여 완료, 이행 후 계속 추진, 정상추진, 일부추진, 보류 등으로 평가한다.

〈표 Ⅱ-39〉 서울특별시 민선8기 공약관리 체계

공약관리 체계	내용
1. 기본방향	• 공약에 대한 철저한 분석 및 실천계획 수립을 통해 공약 이행력 학보 • 시민의 눈높이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하여 공약확장 및 발전 • 주기적 공약 이행관리 및 외부기관 공양이행평가 대응, 시정 신뢰도 제고
2. 공약관리체계	• 총괄부서: 기획담당관 • 공약사항 전반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 총괄 관리 및 조정 • 공약사업 추진상황 분석·평가·모니터링· 이행실적 대시민 공개 및 외부평가 수검
3. 공약관리 추진내용	• ① 전문가 자문 등 의견수렴 • 공약사업별 목표 설정의 적정성, 추진계획의 이행가능성, 선결 또는 극복과제, 시민체감·만족도 제고방안, 외부평가 대응전략 등 공약달성 전반에 관해 자문(서울비전 2030 위원회 위원 중심) • ② 공약실천계획서 수립 (주관부서) 및 지표관리 • ③ 공약사업 확정 및 공유 (시민공약평가단 구성·운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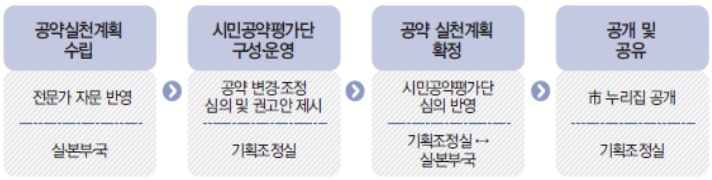
4. 공약사업 추진	• 확정된 공약실천계획을 바탕으로 공약사업 추진 • 이행상황 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공약관리카드 작성(주관부서) • 목표관리 내재화가 수시로 가능하도록 추진실적, 예산집행액 등 작성 • 공약실천계획서 상 목표치 등은 원칙적으로 임의조정(폐기·변경 등) 불가 • 반기별로 자체평가실시, 결과공개 및 외뷥기관 평가 시 기본자료로 활용 • 이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 발생시 시민심의를 거쳐 유연하게 조정 • 공약 조정으로 당초 공약의 취지와 시정목표에 더욱 부합할수 있는 경우 등으로 엄격히 대상을 한정하여 조정실시 • *(예시) 법령개정이나 국가정책의 변화 등 외적환경의 변화, 행정수요의 변경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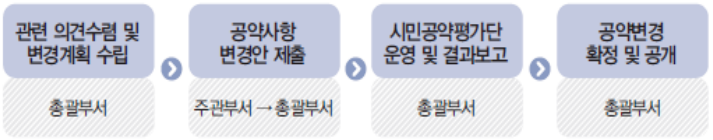
5. 공약 이행관리 및 평가	• 공약이행 평가 - 공약'완료' 이행 후 계속추진 평가는 이행실적과 함께 성과달성 여뷰 등 공약 이행상황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결정 - 공약사업의 계획 대비 이행이 완료되고, 당초 목표한 성과를 달성했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총괄부서(기획담당관)로 공약이행완료도 변경 요청 • 점검기준: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평가기준 준용 • (완료) 공약이행이 완료되어 종료된 사업 (재정 및 입법완료) • (이행 후 계속추진)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추가 목표를 세워 추진중이거나 공약내용 이행완료 후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사업 • (정산추진) 내용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고, 임기종료 시점까지 이행완료가 예상되는 사업 • (일부추진) 추진하고 있으나 ,예상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부진한 사업 • (보류) 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추진을 보류한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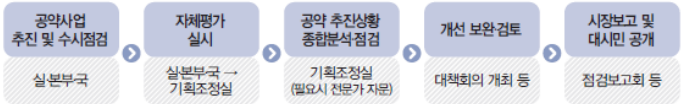

출처: 서울시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 자료 재구성

서울시 민선8기의 공약평가에 대한 개별 평가는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평가 방법을 준수하고 있는데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평가항목은 4대분야 35개 지표를 사용하고 있으며 4개분야는 갖춤성(60점 만점)은 종합구성(45점 만점)으로 공약실천계획서에 설명된 종합적인 내용의 갖춤성을 평가하고 개별구성(15점 만점) 항목은 각 공약별 계획과 세부 내용의 구체성 등을 평가한다. 민주성(25점) 항목은 공약관리 제도와 주민참여, 홈페이지 콘텐츠의 민주성 등을 평가하고, 투명성(15점)은 페이지 통해 공개된 공약정보의 접근성과 명확성을, 공약일치도(PASS, FAIL)은 선거 공약과 현재 공약실천계획서의 일치 여부 등을 평가하고 있다. 세부지표별로 절대평가하여 90점이상은 SA등급, 80점이상 A등급으로 평가하고 이에 대한 평가결과를 누리집에 공지하고 있다.

〈표 II-40〉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의 공약평가기준

항목	평가지표		배점	주요분석내용
갖춤성 (60점)	종합구성 (45점 만점)	지역 비전 및 소명 제시 여부	3	· 지역 비전 및 소명이 표시되어 있는가?
		사회·경제적 여건분석 제시 여부	3	· 산업, 인구, 기후, 팬데믹 등 사회 경제적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가?
		종합적 기대효과 명시 여부	2	· 향후모습(종합적 기대효과)을 충분히 설명하고 있는가?
		핵심공약과 우선순위 제시 여부	5	· 5대 핵심공약과 우선순위가 잘 설명되어 있는가?
		공약관리 체계 구축 여부	3	· 이행점검 및 보완 평가체계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국책사업과 지자체 사업 구분 여부	3	· 국책사업과 지자체 사업을 구분하여 분야별 총 수 등을 표시하고 있는가?
		연차별 투자수요 제시 여부	5	· 연차별 투자수요를 밝히고 있는가?
		연차별·분기별 추진계획 제시 여부	5	· 연차별·분기별 추진계획(로드맵)을 자세히 제시하고 있는가?
		공약가계부 제시 여부	5	· 수입과 지출 등을 표시한 공약가계부를 제시하고 있는가?
		분야별 예산배부 제시 여부	5	· 분야별 예산 배분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가?
		지역재정의 현황 및 문제점 제시 여부	3	· 지역재정의 현황 및 문제점을 제시하고 있는가?
		4년간 재정운영계획 제시 여부	3	· 4년간의 재정운영계획을 제시하고 있는가?
	개별구성 (15점 만점)	정책목표 설정 여부	3	· 사업별 현황 및 정책목표가 명확히 설정되어 있는가?
		정책개요 정리 여부	3	· 사업별 정책개요가 잘 정리되어 있는가?
		연차별 추진계획 일정, 소요예산	3	· 사업별로 연차별 추진계획과 일정, 소요예산을 명기하고 있는가?
		사업별 확인지표 제시 여부	3	· 사업별 확인지표가 제시되어 있는가?
		권한의 명확성 표시 여부	1	· 중앙부처의 도움(제도, 재정, 권한)이 필요한 사업을 별도로 표시하고 있는가?
		임기 내, 후의 사업 구분 표시 여부	1	· 임기 내, 임기 후의 사업을 구분할 수 있도록 표시되어 있는가?
		지속사업 및 신규정책공약 표기 여부	1	· 새로운 공약사업인지, 지속적인 정책사업을 공약화 했는지를 표기해 놓고 있는가?
민주성 (25점)	제도부문 (15점 만점)	제도적 기반 마련 여부	5	· 매니페스토실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가?(조례, 규칙, 훈령, 내규 등)
		공약사업 확정 및 실천계획 기한 유무	2	· 공약사업의 확정 및 실천계획서 수립 기한이 있는가?
		실천계획서 재설계 과정의 민주적 절차성	3	· 실천계획의 수정 또는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민승인을 명시하고 있는가?
		정기적 자체평가 및 결과 공개	2	· 정기적인 자체평가 계획이 있는가?
		주민참여 평가단 활동의 민주성	3	· 아래로부터 주민들이 참여하는 민주적 평가단 활동계획이 있는가?

항목	평가지표		배점	주요분석내용
	참여부문 (5점 만점)	실천계획서 확정과정에서의 주민참여	5	· 공약실천계획서 확정과정에서 대표성을 고려한 주민들의 참여 및 숙의가 이루어졌는가?
	e민주주의 (5점 만점)	온라인 투표(E·vote)	1	· 온라인 투표기능이 운영되고 있는가?
		온라인 여론조사(E·poll)	2	· 온라인 여론조사 기능이 운영되고 있는가?
		온라인 제안(E·suggest)	2	· 온라인 제안 기능이 운영되고 있는가?
투명성 (15점)	웹소통 (15점 만점)	정보접근성(메인 페이지 연결)	5	· 매니페스토이행 관련 정보가 메인화면에 눈에 잘 띄게 표시되어 접근성이 높은가?
		정보명확성(공약, 매니페스토, 약속 표기)	4	· 공약이행에 관련한 내용임을 분명하게 표시해 주고 있는가?
		정보독립성(공약이행 코너 별도 마련 여부)	3	· 매니페스토이행 관련 정보를 독립적인 컨텐츠로 구성하여 제공하고 있는가?
		정보적실성(주민과의 계약으로서의 정보)	2	· 단체장 홍보를 위한 정보와 매니페스토 정보를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는가?
		주민참여성(주민참여 게시판 운영 여부)	1	· 주민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코너가 마련되어 있는가?
공약일치도 (Pass/ Fail)	일치성	공약내용의 일치성	P/F	· 선관위 5대 공약, 공약집·선거공약서, 선거공보의 내용과 이행계획서 내용이 일치하는가?
	과정 설명 여부	수정, 변경, 보류 과정 설명 여부	P/F	· 공약 수정, 변경 보류 과정과 내용을 책임 있게 설명하고 있는가?

2) 서울틀별시 민선8기 공약목표 및 추진부서

서울특별시 민선8기 공약 중 교육관련 공약의 목표와 지표 관리 부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공약 관련하여 중앙부처의 공약과 관련성의 파악해보자 했으나 목표나 지표에 대한 근거자료는 찾을수가 없었다.

〈표 II-41〉 서울틀별시 민선8기 공약목표 및 추진부서

공약	공약목표	확인지표	부서
'서울런' 으로 교육격차 해소, 교육사다리 실현	• '서울런' 지원 대상의 소득기준을 중위소득 85% 이하까지 점진적 확대 • 교재지원 1인당 1권에서 5권가지 확대하여 수요자 부담 대폭 완화 • 취약계층 청소년들의 취업 지원을 위한 어학, 자격 등 비교과 콘텐츠 확대 • 맞춤형 멘토링에 초점을 두고 예체능·디지털 분야까지 멘토링 확대	• 지원대상 확대 • 조례제정 및 사회 보장제도 변경 협의 • 콘텍츠 확대 • 진로· 취업 등 비교과 콘텐츠 확대 • 멘토링 운영 • 맞춤형 멘토링 운영 및 멘토링 분야 확대 시원 • 서울런 학습실 • 시설수요조사(50개소) • 청년수당 지원	교육지원정책과 아동담당 청년사업반
대학과 학점연계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추진	• 시민의 직업관련 역량강화 및 학점 취득 기회 확대 제공을 위해 시민대학 연계협력사업으로 학점인정이 가능한 평생교육 프로그램 추진	• 대학연계학점 취득과정 운영 • 서울시 학점 은행제 운영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진흥원

공약	공약목표	확인지표	부서
노후학교 시설개선 지속 지원 및 도심학교 복합화 추진	• 학교 내 노후시설 보수 및 시설 복합화를 통해 학생에게는 쾌적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지역사회에 공공서비스 확대 기여	• 학교 시설물 안전관리 및 노후시설 개선 • 도심학교 복합화 추진	교육지원정책
직장인을 위한 인생전환 준비센터 미래 시민학교 조성	• 학습활동과 비즈니스를 연계하는 미래시민학교(가칭 인생전환지원센터)조성· 운영을 통해 주도적 시민성장과 직업 창출 등 새로운 인생전환 활동 강화	• 미래시민학교 조성	평생교육과
신산업 특화 '복합 평생학습 공간' 조성 확대	• 4차산업 시대에 걸맞는 신산업 분야의 특화된 평생학습센터를 조성·운영하여 신산업 평생교육의 선도적인 역할 실현	• 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 조성·운영	평생교육과
미래 인재가 자라나는 교육도시 조성	• 창의적인 미래형 인재육성 • 청소년에 다양한 체험활동 지원, 서울대학생 연계 교육 멘토링 봉사 '서울동행' 확대 등	• 청소년 에듀투어 운영(참여인원) • 유스내비활성화(이용자수) • 서울동행 확대 운영(연간활동 대학생)	청소년정책과 자치행정과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대상 평생학습 장학금 통한 학비보조 추진	•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취·창업 준비를 위한 전문교육 및 훈련 경비를 지원하는 평생학습 장학금 지급 추진	• 평생학습 장학금 도입 (500명~3,000명으로 확대)	평생교육과 평생교육진흥원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	• 학업중단 청소년 지속 증가 및 참여욕구 (학업형·진로형·무업형 등 다양화에 따른 맞춤형 대응 강화) • 자기개발 학습비·인턴십·상담 지원 등 지원규모 확대(2배)	• 학교밖 청소년 학업지원 • 자기개발 학습지원 • 대안교육기관 수업료 지원 • 학교 밖 청소년 자립 지원 • 인턴십 지원 • 직업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청소년 정책과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지원센터 전국 최초 설치·운영	• 교육과 복지정책에서 소외되고 있는 경계선지능인에 대해 생애 주기별 맞춤형 지원을 통해 자립과 사회 참여를 촉진	•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운영	평생교육과
서울시립대학교를 취업·창업교육의 요람으로	• 서울시립대학교 내 융·복합 창업학부의 효율적인 설치 및 운영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 융· 복합 창업학부 내 5대 창업트랙을 개설하여 취업· 창업 특화교육 제공	• 융·복합 창업학부 신설	기획과 시정연구담당
은평구 아동·청소년을 위한 예술문화교육센터 건립	• 지역아동 청소년 대상 특화된 예술활동 (무용)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조성으로 전문분야 문화체험 기회 확대 및 관련 인재 육성	• 은평예술교육센터 건립	문화시설과 문화예술과
양천구 신정동 서울대표 청소년 음악창작 센터 건립	• 청소년 특화시설인 시립청소년 음악센터완공하여 청소년 문화예술 활동 공간 조성	• 시립청소년 음악센터 건립	청소년 정책과

공약	공약목표	확인지표	부서
신영동 시립청소년센터 다기능 복합화 건립 추진	• 자치구 중 유일하게 청소년센터가 없는 종로구에 청소년센터를 건립하여 청소년 복지 향상에 기여 (1자치구 1청소년센터 건립)	• 시립종로 청소년센터 복합 건립	청소년 정책과 종로구
강북구 아동·청소년 예술문화교육선터 건립	• 지역아동· 청소년 대상 특화된 예술 활동을 체험할수 있는 공간조성으로 전문분야 문화체험 기회 확대 및 관련 인재 육성	• 강북구 예술 교육 센터 건립	문화시설과 문화예술과
서초구 반포동 동남권 아동·청소년 예술문화교육센터 건립	• 지역 아동· 청소년 대상 특화된 예술 활동(음악)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조성으로 전문분야 문화체험 기회 확대 및 관련 인재 육성	• 신반포 예술교육센터 건립	문화시설과 문화예술과
성북구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	• 지역 아동· 청소년 대상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 조성으로 문화적 감성 발달 도모 및 창의적 인재육성	• 성북구 예술교육 센터 건립	문화시설과 문화체육과

출처: 서울시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 자료 재구성

3) 서울특별시 민선8기 교육공약 분야별 예산

서울특별시 민선 8기의 교육분야의 총 예산은 334,363백 만원이며 이 중 국비는 354백 만원이다.

〈표 II-42〉 민선8기 교육분야 예산

(단위: 백만원)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6월	임기 후
총계	334,363	67,547	52,758	65,620	64,443	49,011	34,984
국비	354	59	59	59	59	59	59
시비	333,999	67,488	52,689	65,561	64,384	48,952	34,925
기타	10	-	10	-	-	-	

출처: 서울시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 자료 재구성

서울특별시 민선8기의 교육관련 공약은 총 14개이며 각 공약에 따른 예산 현황은 다음 표에서 보는 바와 같다. 시설확충 및 건립 등을 제외하고 예산이 높은 순서로는 '콘텐츠 확대'에 대한 예산이 69,801백만원으로 가장 높았으며 '청년수당지원' 42,000백만원 '멘토링 운영' 30,494백만원 순이었다. 민선8기 사업별 예산에 있어 주목할 점은 예산 계획에 있어 임기 후 까지 지속되어야 할 사업에 대한 예산 계획이 세워져 있다는 점이다. 정책이나 사업에 있어서 특히 교육사업에 있어서는 사업의 지속성이 유지되는 것은 중요한 평가 항목이라 할 수 있다.

〈표 Ⅱ-43〉 민선8기 단위사업별 예산

(단위: 백만원)

공약번호	공약명	단위사업	구분	계	2022	2023	2024	2025	2026.6	임기후
11-1	'서울런' 으로 교육격차 해소, 교육사다리 실현	콘텐츠 확대	시비	69,801	7,790	12,481	18,503	20,141	10,896	-
		멘토링운영	시비	30,494	5,537	6,324	7,025	7,560	4,048	-
		서울런 학습실	시비	908	-	300	300	300	-	-
		청년수당지원	시비	42,000	-	12,000	12,000	12,000	6,000	-
11-2	대학과 학점연계형 평생교육프로그램 추진	대학연계 학점 취득과정 운영	시비	970	20	150	170	190	210	230
		서울시 학점 운행제 운영	시비	230	-	25	25	50	50	80
11-3	노후학교 시설개선 지속 지원 및 도심학교 복합화 추진	학교시설물 안전관리 및 노후 시설 개선	시비	29,500	12,000	5,000	5,000	5,000	5,000	
		도심학교 복합화	시비	14,900	2,400	-	5,000	2,500	2,500	2,500
11-4	직장인을 위한 인생전환 준비센터 미래 시민학교 조성	미래시민학교 조성 및 운영	시비	19,984	9,235	4,049	1,500	1,700	1,700	1,800
11-5	신산업특화'복합평생학습 공간'조성확대	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 조성운영	시비	8,575	1,928	1,851	1,894	1,924	978	
11-6	미래인재가 자라나는 교육도시 조성	에듀투어	시비	180	30	30	30	30	30	30
		유스내비	시비	2,015	386	429	300	300	300	300
		서울동행	시비	6,906	760	1,099	1,228	1,251	1,284	1,284
11-7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대상 평생학습 장학금 통한 학비보조 추진	평생학습 장학금	시비	6,000	-	300	900	1,200	1,800	1,800
11-8	학교밖 청소년 맞춤형 지원강화	학업지원	시비	3,986	570	754	754	754	400	754
		자립지원	국비	354	59	59	59	59	59	59
		자립지원	시비	1,312	162	250	250	250	150	250
		심리·정서 및 건강지원	시비	213	9	46	46	46	20	46
		멘토그룹강화	시비	721	48	96	159	159	100	159
11-9	경계선지능인을 위한 평생교육 지원센터 전국 최초 설치·운영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지원센터 설치· 운영	시비	7,649	1,149	1,300	1,300	1,300	1,300	1,300
11-10	서울시립대학교를 취업·창업교육의요람으로	융·복합 창업학부 신설 정책과제 추진 및 학부 운영	기타	10	-	10	-	-	-	-
11-12	양천구 신정동 서울대표 청소년 음악창작센터 건립	시립청소년 음악센터 건립	시비	15,932	15,932	-	-	-	-	-
11-13	신영동 시립청소년센터 다기능 복합화 건립 추진	시립종호청년센터 복합건립	시비	46,256	59	203	9,177	7,729	14,696	14,392
11-14	강북구 아동· 청소년 예술문화 교육센터 건립	강북구 예술교육센터 건립	시비	15,475	9,473	6,002	-	-	-	-

출처: 서울시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 자료 재구성

사.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 정책 모니터링 사례 분석이 주는 시사점

앞에서 제시된 교육부나 시도교육청, 지방자치단체의 성과 모니터링의 주요 특징 중의 하나는 자체 평가를 실시한다는 것이다. 모든 평가 과정은 담당부서 및 총괄부서에서의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제시된 과제별 성과 지표별 목표를 설정하고, 목표에 따른 추진 실적 및 예산 현황 등을 분기별로 계획하고 문서화하여 모니터링하고 있다. 이런 문서화된 정보를 기초로 하여 자체적으로 전문가의 평가를 받고 개선사항 등을 발굴하고 상위기관의 평가에 대비한다.

앞에서 살펴본 지자체, 시도교육청의 성과 관리 또는 성과 평가 사례 분석을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단계에서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의 매년 실천과제들과의 정합성과 연계성을 확보해야 한다. 만약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매년 실천과제들과의 정합성이 떨어진 시행계획이 수립된다면,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이 제출한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업무는 매우 형식적으로 관리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다. 왜냐하면,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의 공약 또는 실천 과제의 모니터링 업무는 제시된 공약 및 실천 과제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부서를 지정하고 실천 과제별 예산을 투입한 후, 지정된 부서가 지속적으로 실천 과제를 모니터링하고 문서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효과적인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을 위하여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의 자체 평가 절차에 따라 자체적인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실시하고 제출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은 매년 '성과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자발적으로 실천과제별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업무 또한 매년 '성과관리계획'에 따라 자체적인 점검 절차를 수행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다만, 이행상황 점검 대비 별도의 자체 모니터링 점검 절차를 수행하도록 하기 보다는 현재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에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 자체평가(점검) 절차에 포함하여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셋째,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지표 또는 기준(정보요소)은 현재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지표 및 정보요소를 활용하도록 하여, 담당자의 업무 부담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예를들면, 교육부는 계획수립의 적절성, 집행과정의 충실성, 성과목표달성, 정책 효과를 평가하고 있는 반면, 경기도교육청은 정책의 가치성, 집행의 충실성, 정책의 효과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업무의 추가는 인원이 충원되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할 때, 업무 담당자들에게 업무 부담이 될 수 있으므로, 이행상황에 관한 지표 또는 기준을 현재 활용되고 있는 성과지표 등으로 설정하는 것은 국가교육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해야 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시도교육청 일선 담당자들에게는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다. 이를 위하여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지표를 '필수핵심지표'와 '자율지표' 형태로 구분하여 설정하고, '필수핵심지표'는 국가교육발전계획의 핵심 아젠더들을 점검할 수 있는 최소한의 지표로 제시하고, 그 외의 아젠더들은

‘자율지표’형태로 지자체 및 시도교육청이 운영할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넷째,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피드백 단계 포함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현 국가교육위원회법에 따르면,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후,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지만, 공개 목적, 공개 대상, 점검 결과의 활용, 점검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제기 등에 관한 사항은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에서 교육정책관계자협의회를 구성하여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수립, 변경 및 그 이행상황 점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 상황이다. 위에서 제시한 이행상황 점검 결과 공개 목적, 대상, 결과 활용, 이의신청 제기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야 한다.

2. 교육 정책 모니터링을 위한 조사 실시 사례 : 국가 평생교육통계 조사

가. 국가 평생교육통계 조사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평생교육분야 정책 수립 및 연구 등에 활용하기 위해 매년 전국의 성인과 평생교육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고 있다(교육부, 2022).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는 대한민국 국민 중 조사 국내 거주하는 만 25~79세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하는 조사로,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 및 불참요인 등을 조사한다. 평생교육통계조사는 교육청 관할 평생교육기관, 평생학습관, 대학(원)부설 평생교육원 등을 조사대상으로 하며, 기관개황, 프로그램 및 학습자, 교·강사, 사무직원, 평생교육사 양성현황 등을 조사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목적을 고려하여 개인이 아닌 기관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평생교육통계조사의 추진체계 등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1) 평생교육통계조사 개요

평생교육통계조사는「평생교육법」제18조에 의거하여 교육청 관할 평생교육기관, 평생학습관, 대학(원) 부설 평생교육원을 대상으로 교육부, 한국교육개발원, 전국 시·도교육청 및 시·도평생교육진흥원과 함께 매년 공동으로 실시하는 법적 국가통계조사 사업으로 우리나라 평생교육기관의 기본적인 현황 파악을 통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평생교육정책 입안 및 지원,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하고 평생교육 관련 통계를 대국민 서비스 하는데 목적이 있다(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 2023).

〈표 Ⅱ-44〉 평생교육통계조사 개요

근거	평생교육법 제18조(평생교육 통계조사 등) ① 교육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평생교육의 실시 및 지원에 관한 현황 등 기초자료를 조사하고 이와 관련된 통계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평생교육과 관련된 업무 담당자 및 평생교육기관 운영자 등은 제1항의 조사에 협조하여야 한다.
조사 목적	• 평생교육 및 평생학습에 대한 국가, 사회적 관심과 차여가 증대됨에 따라, 평생교육의 현황 및 추이변화에 대한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정보 수요 발생 • 우리나라 평생교육기관 현황 파악을 통해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평생교육정책 입안 및 지원, 평생교육 활성화에 기여 • 평생교육법 제18조에 의거 평생교육 실시 및 지원현황 관련 통계를 온라인/오프라인으로 대국민 서비스 실시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한국교육개발원 국가평생교육통계 홈페이지(2024.3.13. 검색)

이러한 법령에 근거하여 2004년부터 2년여에 거쳐 평생교육통계 조사를 체계화하고 2006년 조사시스템 구축 및 시범조사를 실시한 후, 2007년부터 정기조사가 시행되어 2023년 17회째 시행되어 오고 있다.

한편 2021년 6월에는 평생교육 통계조사를 위한 자료 연계, 국가평생교육통계센터 지정 등 평생교육 통계조사를 위한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목적으로 「평생교육법」이 개정됨에 따라 기관 간 자료 연계, 수집된 자료의 제공, 통계조사 업무의 위탁 근거가 마련되었으며(제18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조항 신설(제18조의 2신설)을 통해 평생교육 관련 정보의 체계적·효율적 관리 기반을 구축하였다.

2) 평생교육통계조사 추진체계

평생교육통계조사는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주관하며, 조사시행은 관리기관과 조사기관을 중심으로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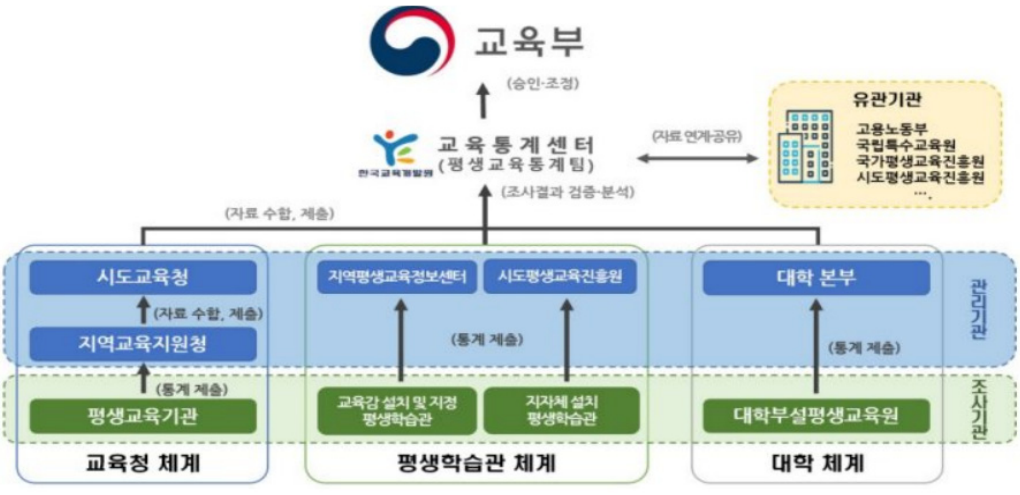

[그림 Ⅱ-15] 평생교육통계조사 추진체계

출처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3). 2023년 평생교육통계조사 지침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자료 CRM 2023-36

〈표 Ⅱ-45〉 평생교육통계조사 추진 체계

역할	기관구분		주요업무
사업 주관	교육부		• 기본계획 수립, 사업 관련 정책 결정 • 사업 시행 관련 행정 사항 지원
	한국교육개발원		• 조사계획 수립 • 조사도구 정비(조사지침, 조사시스템 등) • 평생교육통계 담당자 연수 지원 • 평생교육통계 조사 시행 지원 • 조사 결과 분석 및 산출물 발간, 배포 • 사업 개선 방안 탐색(조사시행체제, 조사항목, 조사일정 등)
조사 시행	관리 기관	시 · 도교육청 지역평생교육정보센터 시 · 도평생교육진흥원 대학본부	• 관할기관 조사 시행 지원 및 모니터링 • 조사 결과 집계 및 검증, 조사 결과 제출
	조사 기관	교육청 관할 평생교육기관 평생학습관 시 · 도평생교육진흥원 대학(원)부설 평생교육원	• 조사 시행 • 조사 결과 집계 및 검증 • 조사 결과 제출

출처 : 교육부 • 한국교육개발원(2023). 2023년 평생교육통계조사 지침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자료 CRM 2023-36

3) 평생교육통계조사 대상 및 내용

평생교육통계조사 조사대상은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항에 명시된 기관으로 하며, 직접조사와 간접조사로 구분하여 볼 수 있는데 직접조사는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직접 수행하는 조사를 의미하며, 간접조사는 타 기관 DB 와의 연계를 통한 자료 수집을 의미한다. 조사 내용은 기관 개황, 프로그램 및 학습자, 교강사, 사무직원, 평생교육사 양성 현황 등으로 구분되며, 대학부설 기관의 경우 일부 추가 항목을 포함하여 조사가 이루어진다.

〈표 Ⅱ-46〉 평생교육통계조사 대상 및 주요내용

조사대상	[직접조사] 교육청 관할 평생교육시설, 평생학습관(교육감 설치 및 지정, 지자체 설치),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간접조사] 교육통계연구센터 DB, 학점은행제 및 독학학위제 DB, 방송통신중고등학교 DB, 주민자치센터 DB, 학원 및 교습소 DB, 평생교육사 양성 현황 DB
조사내용	기관 개황, 프로그램 및 학습자, 교강사, 사무직원, 평생교육사 양성 현황 * 대학부설의 경우 추가 항목 있음

출처 : 한국교육개발원 국가평생교육통계 홈페이지(2024.3.13. 검색)

이상에서 살펴본 평생교육통계조사는 평생교육 기관, 참여 학습자 교과과정, 교수자 등 다양한 정보가 공표되고 있으며, 평생교육 통계조사를 통하여 기본적인 현황과 관련된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그러나 평생교육통계조사는 조사 대상의 범위가「평생교육법」제2조 제2항1)에 따라 제한되어 있어 다양한 평생교육 기관과 정보를 포괄하는 데 한계를 가지고 있다(오혁진 외, 2022).

4) 평생교육사업조사 체계

2021년 6월 개정된 평생교육법에서는 교육부장관의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조사 및 통보 의무가 법령에 포함되었다(「평생교육법」 제9조의 2).

〈표 Ⅱ-47〉 평생교육사업 조사 근거

근거	평생교육법 제9조의2(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등) ① 교육부장관은 매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는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조사·분석(이하 "분석등"이라 한다)을 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사업의 분석등을 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교육·훈련기관 및 평생교육사업에 참여하는 법인이나 단체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기관·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교육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분석등의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제10조의 평생교육진흥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1. 6. 8.]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2024.3.12. 검색)

이러한 법 조항 신설에 따른 평생교육사업에 대한 조사·분석 의무화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는 외부기관 위탁을 통해 평생교육조사분석의 개념과 내용 연구(오혁진 외, 2022), 평생교육사업 관련 법령 조사분석 연구(정해수 외, 2022)를 수행함과 동시에, 2021 평생교육사업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조사분석 연구(이희수 외, 2023)를 수행한 바 있으며, 현재 2022 평생교육사업을 대상으로 2차 시범조사가 추진되고 있다.

평생교육사업조사는 2022년에 2021년도 평생교육사업을 대상으로 시범 성격의 첫 조사가 수행되었으며, 2022년도 사업을 대상으로 2차 시범수행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이에 현재까지도 평생교육사업조사 · 분석을 체계화해나가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오혁진 외(2022)는 평생교육조사분석의 개념과 내용 연구에서 평생교육추진체계(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 바 있다.

〈표 Ⅱ-48〉 오혁진 외(2022)가 제시한 평생교육사업 조사·분석 추진체계(안)

역할	기관구분	주요업무
주관 기관	교육부	• 평생교육사업 조사 · 분석 수행 기본계획 수립 • 조사 · 분석 기준 및 지침 마련 • 조사 추진과정에서 행정사항 지원 • 조사 · 분석 결과 통보(평생교육진흥위원회 및 관련부처, 지자체 대상 통보)
수행 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 조사 · 분석 계획 수립 • 조사시스템 등 조사 · 분석 도구 정비 • 부처 및 지자체 제출 자료 검증 • 분석 결과 보고 및 보고서 발간 · 배포 • 분석 결과 일반인 공개
조사 (대상)기관	관련 부처 및 지자체	• 관련 자료 제출 • 결과를 통보 받음 (결과 활용)

2022년 이루어진 1차년도 시범조사에서는 오혁진 외(2022)가 제시한 내용을 전반적으로 준용한 것으로 보이는데, 실제 조사 · 분석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외부기관에 위탁하여 추진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중앙부처 및 지자체 대상 공문조사 및 자체조사를 통해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자체조사의 경우 예 · 결산 자료, 시 · 도평생교육진흥계획 등의 자료를 활용한 분석이 이루어졌음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분석 결과 일부를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3]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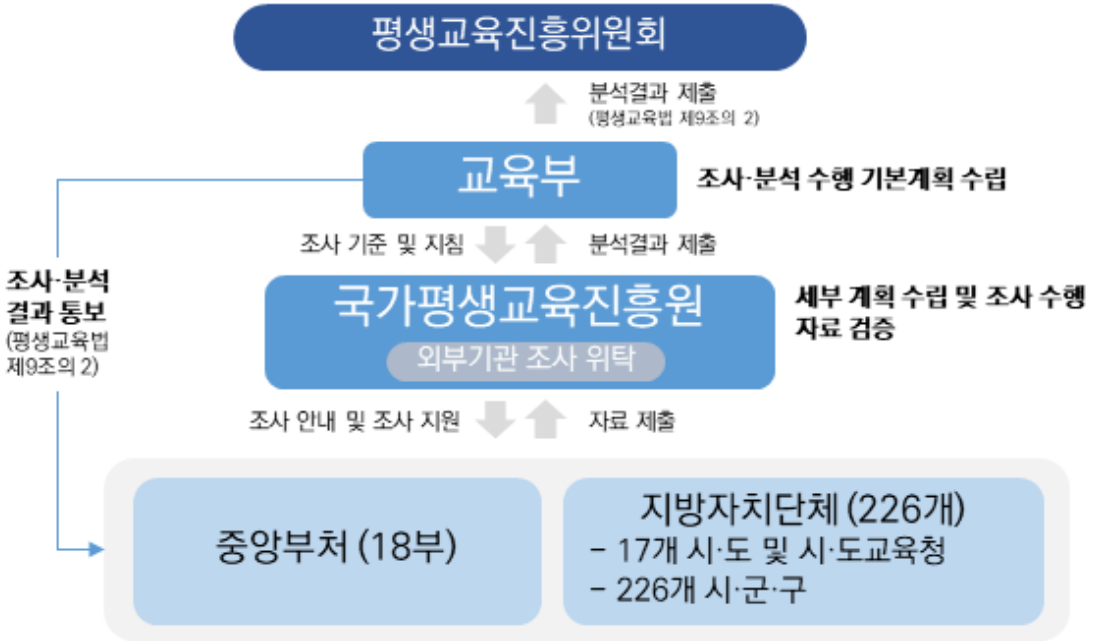

[그림 Ⅱ-16] 평생교육사업조사 추진체계 (2022년 기준)

주 : 2022년 수행된 2021대상 조사에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시·도평생교육진흥원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었으나, 본 그림에서는 제시하지 않음

평생교육사업 조사대상기관은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로 조사대상 및 범위를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3) 부록자료 중 시도 2021평생교육사업 및 추진근거, 시도교육청 2021평생교육사업 및 추진근거, 시군구 2021평생교육사업 및 추진근거, 기타공공기관 2021평생교육사업 및 추진근거 자료는 공문회신처 다수의 자료 비공개 요청에 따라 2024.03.13.일자 기준 비공개 조치되어 있음

〈표 Ⅱ-49〉 평생교육사업 조사 대상 기관 및 범위

구분		2021 사업 (2022 조사) 조사대상 기관 및 범위	2022 사업(2023 조사 중)	
			조사대상 기관	조사범위
중앙부처		18부 교육부 :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시행한 사업 타 중앙부처: 「평생교육법」 제2조의4에 근거하여 평생교육으로 간주할 수 있는 사업	18부, 4처, 18청	• 사업연도 : 2022년도(본예산 기준) • 사업단위 : 기관의 직제로 편성된 단위 조직이 사업예산을 갖추고 평생교육적 가치를 목적으로 하여 계획수립부터 * * 1) 결과보고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사업 체계를 갖춘 단위 사업 2) 사업배경 : 법령, 조례 등 제도적 근거에 따른 평생교육사업 / 국정과제, 시정·도정 과제, 시정·군정·구정 과제 등 정책과제에 의한 평생교육사업 / 기타 사회이슈·지역이슈의 해소 등을 목적으로 한 평생교육사업
지방자치단체	광역	17개 시·도: 2021년 시·도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한 평생교육사업 17개 시·도교육청: 시·도교육청에서 2021년 추진한 평생교육사업	17개 시·도청 17개 시·도교육청	
	기초	226개 시·군·구:2021년 시·군·구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한 사업	226개 시·군·구	

주 : 2021 사업조사에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센터, 시 • 도평생교육진흥원이 조사대상에 포함되었음
출처 : 2021 사업은 이희수 외(2023) 보고서, 2022사업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23.4)의 「평생교육사업 조사·분석 제2차 시범 수행 연구」제안요청서 참고

2021년 첫 조사 시에는 중앙부처의 경우 평생교육법에 근거하여 시행한 사업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개별 지자체의 사업계획에 따라 추진된 사업을 조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반면 2022년에는 중앙부처는 18부에서 4처와 18청을 포함하도록 조사대상 기관을 확대하였으며, 조사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한다는 특징이 있다.

5)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자체 조사 실시 가정하에서 고려 사항

평생교육통계조사 및 평생교육사업조사 분석 결과 평생교육통계조사는 평생교육 기관을 중심으로 기관현황, 교육과정, 교수자 등 정보를 조사하여 「평생교육법」 제2조 제2항1에 따른 기관의 기본적인 현황과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질 것이다. 또한 추진 체계 측면에서 평생교육기관 특성을 고려한 조사 체계가 수립되어 있고, 타 기관과의 DB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자료조사가 추진됨에 따라 조사에 따른 현장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인 정보관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 측면에서 교육기관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음에 국가 및 지자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평생교육사업을 포괄하지 못한다는 한계를 보인다.

반면 평생교육사업 조사는 평생교육조사대상 기관 측면에서 범위를 확대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나, 아직 조사체계 등을 갖추어 나가는 단계로 조사 과정에서 평생교육 사업범위의 모호성, 평생교육통계조사와 중복조사에 따른 민원 제기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이에 2021년 평생교육사업 조사 분석 단계에서 지적된 조사 · 분석 관련 문제점을 중심으로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행계획의 증거 기반한 이행상황 점검을 위하여 자체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 대상인 시행계획에 제시된 실천과제들의 범위를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2021 평생교육사업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 또한 이러한 문제점을 가장 먼저 지적하고 있는데, 평생교육사업은 「평생교육법」 제2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국민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하여 예산 또는 기금으로 조직적인 교육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명기되어 있으나 '국민과 주민의 평생교육을 위한 사업'이라는 표현은 자의적 판단의 소지가 있다. 비록 동 조항에서 평생교육의 정의를 '학교의 정규교육과정을 제외한 학력보완교육, 성인 문자해득교육, 직업능력 향상교육, 성인 진로개발역량 향상교육, 인문교양교육, 문화예술교육, 시민참여교육 등을 포함하는 모든 형태의 조직적인 교육활동'으로 제시되어 있으나 이 또한 평생교육이나 교육활동의 명확한 정의 보다는 영역에 가까워 조사대상 사업을 명확히 규정한다고 볼 수는 없다.

둘째,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단계에서 자체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 기존 교육통계 조사와의 차별화되고 구체적으로 조사 설계를 마련해야 한다. 앞에서는 평생교육통계조사와 평생교육사업의 조사항목을 상세히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평생교육사업의 조사대상 중 평생교육통계조사에서 다루고 있는 항목과 중첩되는 부분이 상당 수 존재하며 이러한 문제는 현장의 업무 부담으로 이어진다. 실제 평생교육통계조사에서는 다른 기관과의 DB 연계 방식을 통해 직접 조사 항목을 최소화하고 있다. 2021년 평생교육사업 조사 시에는 공문방식을 활용하였으나, 미회신 등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였으며, 자체적으로 관련 자료를 분석하는 형태를 병행하다 보니 입력 불가 항목 발생, 주관적 개입 소지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여 조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 2021 평생교육사업 조사 결과 보고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 조사 체계를 갖추어 나가는 시범성격의 조사 기간 동안은 공문방식을 활용한 조사로 일원화하고, 자체적으로 수집한 예·결산 자료 등은 데이터 검증에 활용하는 방식으로 개선이 필요함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조사시스템을 구축하여 유관기관 데이터를 연계하여 조사부담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데이터 구축이 가능하도록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셋째,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조사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하는 목적을 교육정책관계자협의회를 통하여 조사 대상 기관에 충분히 공유하고, 조사 지침 등을 사전에 명확히 제시할 필요가 있다. 국가 평생교육조사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조사 초기에 조사업무 담당자가 따로 지정되어 있지 않고, 지정된 담당자들이 조사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자료를 입력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 이에 2021년 평생교육사업 조사 결과보고서에서는 조사 전 담당자 지정, 조사설명회 개최 등을 통해 평생교육사업 조사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여야 함을 언급하고 있으며, 현재 추진 중인 2022년 평생교육사업에서는 조사관련 설명회 개최 등을 과업으로 포함하고 있다. 평생교육사업 조사 목적이나 평생교육사업조사 관련 상세 안내는 담당자의 조사이해도를 높이고 효율적인 조사가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나.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협력 사업의 모니터링 사례 분석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근거하여 계획기간 5년('21~'25) 동안 매년 관계 중앙부처 및 비수도권 14개 시·도별 종합계획 수립한다. 모니터링에서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 지원을 위한 △ 정책목표 및 기본방향 △ 행·재정적 지원 방안 △ 제도 개선 △ 특성화에 관한 사항 등을 평가한다. 이 모니터링은 다음과 같이 육성지원위원회 이하 관계 행정기관, 교육부, 14개 시도 등이 참여한다.

[그림 Ⅱ-17]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추진 체계

기본계획의 모니터링은 법적으로 평가단을 구성하고 있지는 않으며, 매년 연구 성격의 모니터링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종합하여 육성지원위원회에 보고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매년 교육분야 연구 수행 기관에서는 중앙부처와 시도 담당자를 통해 추진 사항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받으며 이 내용을 종합·정리하여 지표별로 성과와 개선 필요사항을 도출하고 있다.

다. 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 모니터링 사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평가는 정부합동평가 중 자체평가 유형에 해당한다. 특히 이 중에서도 재정사업 부문의 일자리 평가에 해당한다.

세부적으로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효율화)에 기반하여 매년 일자리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하여 저성과사업 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2022년을 기준으로는 2021년 일자리사업 207개에 대해 데이터 기반 성과평가 실시하였다.

모니터링 및 평가 일정을 2021년 사업 기준으로 보면, 2021년 10월부터 2022년 1월까지 현장 모니터링을 시행하였다. 이는 수행기관·참여자 심층인터뷰(182개 사업), 만족도조사(143개 사업) 등으로 현장 애로사항과 개선사항을 발굴하였다. 이후 2022년 1월부터 4월까지 정량·정성평가를 시행하였는데, 실참여자 정보를 고용보험 DB 및 HRD-net 등과 연계하여 정량분석, 정성평가(외부

전문가), 실집행률 등 종합 평가 형태로 실시하였다.

[그림 Ⅱ-18]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업무 관리 시스템

한편 훈련사업 영역의 경우 평가지표를 취업률, 중도탈락률 등 해당 사업 영역의 핵심 지표 중심으로 관리하고 있다. 이러한 형태의 지표는 사업 목적, 방식 등에 따라 불리한 지표는 있으나, 직관적인 지표로 관리가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었다.

재정지원일자리사업평가는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사업평가팀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직업훈련, 고용서비스, 직접일자리, 창업지원 등 세부 분야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 평가데이터 구축 및 관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인원은 19명으로 구성되어 있다(한국고용정보원, 2024.4.5. 검색)

제4절 국가교육위원회의 시행계획 이행력 제고 방안 모색을 위한 시사점

첫째,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대상 정책의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 다수의 정부 및 교육 관련 기관의 평가를 보면, 평가의 대상이 되는 정책을 설정하고 있다. 이는 해당 부처나 관련된 모든 정책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의 평가는 핵심이 되는 정책을 사전에 설정하고 그 정책을 기준으로 해당 영역을 평가하고 있다.

이 두 가지 경우의 차이를 보면, 모든 정책을 평가하는 경우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과 같이 소관 분야 정책의 중요도나 핵심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모든 정책을 동일한 수준으로 판단하고 있다. 이 경우, 정책영역에 대한 모니터링 목적이 아닌 개별 정책 평가를 통한 평가 등급 설정, 이를 통한 예산 통제나 물량 배정 등에 활용하기 위한 경우가 해당 된다.

핵심이 되는 정책을 설정하는 경우는 교육, 사회문제, 경제 등과 같이 정책 영역을 전반적으로 모니터링하기 위한 목적일 경우 주로 사용된다. 이 경우는 해당 영역을 대표하거나 영역 내에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정책을 선정한 후 해당 정책을 통해 전체 영역을 평가하는 형태로 활용된다. 국가교육정책의 모니터링 시에도 정책 영역을 설정하고 해당 영역의 핵심 추진 과제를 특정하여 평가하는 정책 선정 기준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교육정책관계자협의회를 통하여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관계자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16조에 따라 교육정책관계자협의회 구성, 업무, 회의 소집 등에 관한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만, 구체적인 업무 수행 절차 등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이러한 절차 등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관련 사례를 분석한 결과, 정부업무평가의 경우 관련 법령인 정부업무평가법을 통해 근거를 마련하고 있으며, 부처의 상위 위상을 가지고 있는 총리실에서 주관하여 평가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피평가자인 각 부처나 지자체에서 평가에 대한 필요성과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러나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평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 모니터링 등은 평가 대상 기관의 공감대 형성이 부족하여 정확한 평가나 평가에 대한 협조가 어려운 상황이다.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경우, 고용노동부를 제외한 다수의 부처에서는 평가의 목적이나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부족하거나 예산이나 해당 정책의 결정에 관여하지 않는 고용노동부에서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점, 일자리 사업이 각 부처의 핵심 역할이 아니라는 점 등에서 평가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 한계가 있었다.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모니터링은 지자체에서 기본계획과 시행 체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 해당 기본계획이 별도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 아니라는 점, 지자체에서 기본계획에 대한 역할이나 수행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다는 점, 해당 기본계획을 관리하는 부서가 명확하지 않다는 점 등으로 인해 공감대 형성과 협조에 한계가 있었다.

국가교육정책 모니터링 시에도 교육부를 비롯한 정부부처, 지자체 및 교육청, 관련 공공기관 등

다양한 주체가 모니터링 대상이거나 협조 대상이 될 것이다. 따라서 모니터링 체계 설계 및 운영 시에 관계자 집단의 이해와 공감대 형성이 우선시 될 필요가 있다.

셋째,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목적에 맞는 모니터링 지표 선정이 필요하다.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방식은 실태 및 현황 중심의 체제적 모니터링 접근 방식과 정책 목표 달성 중심의 주제(가치) 모니터링 접근 방식이 있다. 특히 주제(가치) 모니터링 접근 방식에서는 국가교육발전계획에 제시된 아젠더들이 시행계획에 어느 정도 정합하게 반영되어 있고, 시행계획의 정책 과제들의 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하였는지에 관한 모니터링지표 설정이 필요하다. 앞에서 살펴본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정부업무평가 중 주요 정책 평가는 이행 노력, 목표 달성, 효과성, 만족도 등으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교육부 자체평가는 계획, 집행, 성과 달성, 정책 효과 등의 지표로 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경우 사업 영역에 따라 핵심이 되는 성과지표를 정량지표로 설정하고 관리하고 있다.

〈표 Ⅱ-50〉 국가교육정책의 모니터링 지표 설정을 위한 모형

구분	체제적 모형	주제(가치) 모형
목적	상황과 실태 모니터링	목표의 이행과 달성
성격	기술적(記述的)	가치지향적
기능	사후적 진단과 평가 후행적	목표에 대한 성과평가 선행적
지표체계	투입/여건-과정-산출-결과/성과	목표 및 영역별 체계
주요 지표체계	• 교육기본통계 주요지표(교육부 · KEDI) • e-나라지표의 교육영역지표(통계청) • 국가지표체계(K-indicators) 교육지표(통계청) • 사회보장통계 보육 · 교육부문 지표(보건복지부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OECD 교육지표(Education at Glance) • 한국의 교육지표(KEDI)	•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UN) • 국가지속가능발전목표 (K-SDGs, 환경부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 포용사회지표(교육부) • 교육의 질 지표 · 지수(KEDI)
장점	• 비교적 과거부터 안정적으로 자료가 누적되어 있음 • 현황자료가 부족한 분야의 지표개발에 적합 • 예기치 못한 충격과 사건이 체제에 미친 변화 관찰 가능	• 설정된 목표에 대한 모니터링과 피드백 가능 • 증거기반 정책 수립과 이행 · 평가를 위한 지표 개발에 적합
단점	• 앞으로의 변화를 반영하는 지표로 부족 • 안정된 체제에서는 지표의 변화가 의미 있게 나타나지 않음	• 목표가 추상적일수록 목표와 측정지표 간 정합성이 낮음 • 신규 지표에 대한 합의와 개발이 어려움

자료: 박성호 외(2020). 증거기반 교육정책 모니터링 및 이행을 위한 국가교육지표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따라서 국가교육정책 모니터링 시 계획-집행-성과-만족도 및 효과와 같은 형태의 지표체계를 확립할 필요가 있으며, 정책 영역을 구분하여 합당한 정량 지표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 단, 정량목표는 교육 정책의 성격에 따라 핵심지표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영역별로 핵심이 되는 지표를 산출하여야 한다.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평가의 경우, 구직자 대상 사업과 재직자 대상 사업으로 구분하고

각 집단에 특화된 정량 지표를 설정하고 있다. 국가교육정책의 경우도 학제별, 대상별 등 정책 성격에 맞는 지표를 선정하고 관리할 필요가 있으며, 국가교육정책 모니터링 지표 설정은 점검 목적, 성격, 기능, 지표 체계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접근하여야 한다.

넷째,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과정에 대한 설계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정부 정책은 1년 단위로 시행되며 다년 사업의 경우도 연차별 목표를 가지고 시행되고 있다. 따라서 1년을 기준으로 평가의 시기와 시기별 평가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계할 필요가 있다. 정부업무평가의 경우, 매년 초 평가 지침을 배포하고 부처 등에서 평가 대상 정책을 선정한 뒤 연간 계획을 보고하며 연말에 평가가 이루어진다. 교육부의 자체평가는 상반기 평가를 통해 이행상황 점검, 미비점 도출 등이 이루어지며, 하반기 평가를 통해 성과평가를 실시한다.

이와 같이 국가교육정책의 모니터링 시에도 연간 수행 내용에 대한 단순 성과 집계가 아닌 초기 정책별 연간계획 수립 단계, 반기별 집행 상황 점검, 연말 성과평가 등 평가 과정을 체계적으로 설계하여 평가를 위한 모니터링이 아닌 적합한 수행을 위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한편, 평가 과정 설계시에는 평가를 운영할 수 있는 조직이나 운영 방식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타 평가의 사례를 보면 1)정부차원에서 관련 근거와 조직을 구성하여 평가를 관리하는 경우와 2) 프로젝트 형태의 용역 과제를 통해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다.

정부차원의 관리의 사례로 고용노동부의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평가를 보면,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통해 평가의 근거를 마련하고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에서 평가를 관리하고 있다. 실제 평가는 한국고용정보원의 일자리정책평가실에서 지표 개발·개선, 기초정량분석, 정성평가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표 Ⅱ-51〉 재정지원일자리사업 평가 사례

구분	내용
근거법령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의2(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효율화)
평가대상	·정부(자치단체 포함)가 재정지출을 통해 취업취약계층 등의 고용안정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 ·OECD(Labor Market Programmes) 분류기준 준용, 7가지 유형으로 분류(①직접일자리, ②직업훈련, ③고용서비스, ④고용장려금, ⑤창업지원, ⑥실업소득 유지·지원, ⑦지원고용·재활)
주관부처	·고용노동부 일자리정책평가과
운영기관	·한국고용정보원 일자리정책평가실 일자리사업평가팀(19명)
평가방법	·정량평가, 정성평가(영역별 평가위원 구성)

자료: 연구진 자체 작성

프로젝트성 평가의 사례로 교육부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에 대한 모니터링을 보면, 매년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모니터링 연구 용역을 발주하며, 선정 기관에서 교육부와의 협의를 통해 자체적으로 모니터링 설계와 실시, 피드백 등이 이루어진다.

정부차원에서 관리·운영하는 경우는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지표, 데이터 수집, 평가 및 피드백 등이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전담 조직 구성, 관리, 행정적 소요 등이 다수 발생한다는 측면에서 단점이 있다. 프로젝트성 평가의 경우는 해당 년도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기관이 자체적으로 평가 조직을 구성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유연하게 평가가 이루어진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인 데이터 수집·관리, 모니터링 및 평가 제도에 대한 장기적 발전 등을 검토하는 데 한계가 발생할 수 있다.

다섯째,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정보 수집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정보 수집 단계에서는 누가 정보를 입력하고 신뢰성을 확보할 것인가와 어떤 절차를 통하여 정보를 관리할 것인가 등이 결정되어야 한다.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교육정책을 포함한 정부 단위의 평가를 위해서는 평가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 설정되어야 한다. 정부업무평가의 경우 부처에서 작성한 보고서를 기반으로 평가가 이루어진다. 이는 정책의 계획-작동-성과를 자체 보고서를 통해 평가위원의 정성적 평가 중심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러나 정량적인 지표를 다수 활용하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경우, 정량 지표 수집을 HRD-net이나 일모아 시스템 등을 통해 수집·분석 하고 있다. 또한, 지자체 합동평가의 경우 영역별로 다수의 정량 지표가 존재한다는 점, 지자체 내에서도 참여하는 부서가 다양하는 점, 각 지자체의 평가 정보를 타 지자체에서 확인하고 상호 검증한다는 점 등의 특성으로 지방행정평가정보시스템(VPS: Virtual Policy Studio)을 갖추고 시스템 상에서 데이터를 수집·관리하고 있다. 특히, 지자체 합동평가의 경우 입력한 데이터나 평가내용을 타 지자체에서 열람하고 사실관계나 적합성 등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제기된 이의에 대해서는 영역별 평가위원이 이상 여부를 판단하여 이의신청을 기각 또는 각하하여 최종 평가자료로 활용한다.

〈표 Ⅱ-52〉 지자체 합동평가 데이터 입력 및 확인 과정

구분	내용
(1단계) 자료 입력	· 각 지자체에서 평가지표별 필요 자료 입력
(2단계) 이의신청	· 시스템 내에서 열람을 통해 타 지자체에서 이의 또는 확인 필요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
(3단계) 이의확인	· 평가위원이 이의 신청 사항에 대한 검토 · 필요시 해당 지자체 담당자와의 통화 등을 통해 이의사항 확인, 추가 검토 자료 필요시 요청
(4단계) 최종확정	· 이의사항 확인을 통한 최종 평가 자료 확정

자료: 연구진 자체 작성

반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의 모니터링은 제대로 된 시스템이 갖춰지지 않고 보고서나 엑셀 등 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가 수집되고 있어 모니터링을 위한 데이터 정제, 데이터 오류에 대한 확인 등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국가교육정책 모니터링을 위해서는 각 주체별로 정책의 상황이나 성과를 입력하여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수집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한편 시스템에서는 지표별로 입력값의 기준 설정, 데이터 기준 및 단위 등을 명확히 제시하여 통일성 있는 데이터 수집이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제시된 NHRD-Net의 운영 사례 분석을 통하여 국가교육위원회의 국가교육정책 시행계획에 관한 조사 점검에 필요한 정보 시스템 구축 및 운영의 시사점을 도출할 수 있다.

(1) 국가교육위원회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른 중앙부처와 지자체의 시행 계획 수립시 관련 정보의 생성, 가공, 2차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쌍방향적 고객 지향 정보 시스템 구축을 고려해야 한다. (2)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교육정책 동향과 최신 정보를 제공하고, '국가교육위원회 소식지(가칭)'를 통해 국민들에게 국가교육정책에 관한 기초통계 정보 및 실증 분석한 자료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며, 미래국가교육포럼(가칭)을 통해 중장기 국가교육 정책의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3) 대한민국 교육 정책의 가장 큰 장애요인은 중장기 교육정책의 모니터링 및 성과 체계가 미흡할 뿐만 아니라, 중앙 부처 및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교육정책 관련 정보 또한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교육위원회에서는 중앙부처, 지자체의 정책자료, 보도자료, 업무 추진계획, 사업별 추진계획 등과 같은 국가교육 정책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분석·제공할 수 있는 정보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4) 교육 정책 영역별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창출하는 통계 DB 등을 활용하여 중장기 국가교육정책의 수립과 정책들의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도록 국가교육위원회 내부 조직의 확대와 함께 외부 연구기관간의 네트웤을 강화해야 한다. (5) '중장기 국가교육정책'과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리고, 다양한 네트웤을 활용하여 시의성 있는 해외 교육훈련 정책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기 위한 국가교육위원회 자체의 뉴스클리핑 서비스 등 홍보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섯째,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결과의 활용 방안 설계가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평가는 상벌적 의미에서 시행되며, 정책 평가의 경우 결과에 따라 예산 증감, 담당자의 인센티브 지급 등으로 활용된다. 정부업무평가 중 특정평가의 경우 기관별로 등급 공표, 우수기관 포상금 지급, 업무유공자 포상 등을 실시하며, 미흡한 경우 개선·조치 계획을 수립·이행하며, 국무조정실에서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재정지원일자리사업의 경우 평가 결과를 우수·양호·개선·감액의 4개 등급으로 구분하며, 우수등급 사업은 차년도 평가 유예, 감액등급 사업은 차년도 예산 감액과 제도개선을 추진하게 된다. 반면 평가의 목적이 아닌 모니터링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우수사항과 미흡사항을 점검하고 차년도 사업에 반영하는 목적으로 활용한다.

국가교육정책 모니터링의 경우, 상벌의 목적이 아닌 정책의 모니터링과 계획 이행 정도 확인이 목적일 경우 평가 결과에 따라 정책 영역 및 각 정책별 우수·미흡 사항을 점검하여 문서화하며, 각 지표별로 평가 결과를 정리하여 종합 분석과 해당 정책 담당자 안내 등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류 체계 속에서의 결과 활용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제3장

국가교육정책 모니터링 체계 설계에 관한 요구 조사

제1절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시행사항 점검에 관한 전문가 자문 결과
제2절 시행계획의 이행력 제고와 점검 체계 설계에 주는 시사점

제3장 국가교육정책 모니터링 체계 설계에 관한 요구 조사

제1절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시행사항 점검에 관한 전문가 자문 결과

1. 전문가 자문 개요

본 장에서는 교육정책모니터링 및 성과체계 현황 분석을 토대로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시행사항 점검에 관한 전문가 자문을 실시하고 향후 방안 마련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조사는 서면형태로 진행되었으며 2024.04.09.~2024.04.11. 기간에 거쳐 이루어졌다. 조사대상은 학계를 비롯한 교육정책 관련 전문가로 구성하였으며, 총 29명을 대상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다. 다만, 전문가 패널 중 법학 전공자는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의 효율성 개선을 위한 법적 개정 사항 중심으로 자문하였다.

〈표 Ⅲ-1〉 전문가 자문 대상

No	이름 및 직위	소속	영 역	No	이름 및 직위	소속	영역
1	노00 박사	중소기업연구원	기업	15	김00 교수	한국교원대학교	유아
2	배00 교수	성균관대	평생	16	이00 교수	공주대학교	유아
3	강00 교장	무학여자고등학교	중등	17	백00 소장	고등교육연구소	고등
4	이00 교수	청주교육대학교	초등	18	김00 장학사	광주광역시교육청	중등
5	최00 교수	중앙대학교	공학	19	장00 부총장	한성대학교	고등
6	장00 교수	연세대학교	평생	20	김00 이사	교육의 봄	일반
7	김00 교수	순천향대학교	평생	21	엄00 박사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기업
8	박00 교수	한국공학대학교	공학	22	고00 박사	한국고용정보원	기업
9	남00 교수	원광대학교	공학	23	최00 교수	서울대학교	중등
10	김00 박사	학교안전공제중앙회	일반	24	이00 교수	경남정보대학	고등
11	김00 본부장	한국교육개발원	일반	25	오00 소장	고등직업교육연구소	고등
12	김0 교수	한국교원대학교	중등	26	김00 대표	한국스킬문화연구원	기업
13	김00 대표	KM plus	기업	27	이00 교수	충남대학교	고등
14	강00 교수	서울대학교	평생	28	김00 부총장	영산대학교	고등
				29	이00 박사	법제연구원	제도

조사 문항은 국가교육정책의 개념과 구성요소에 관한 인식, 중장기 국가교육정책 모니터링 체계의 설계시 고려 사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앞선 문헌 검토 결과를 토대로 문항별 상세 설명과 주요 이슈를 제시하여 응답자의 이해를 도모하고자 하였다.

〈표 Ⅲ-2〉 전문가 자문 조사 문항 구성

영역	항목	조사문항 구성	비고
Ⅰ. 국가교육정책의 개념과 구성요소에 관한 인식	국가교육정책 개념 정의의 적절성	• 국가교육정책에 대한 동의여부(정량) • 관련 의견(정성)	• 참고자료로 국가인적자원개발의 개념 제시
	국가교육정책 범위 결정기준의 적절성	• 생애단계(정량) • 정책영역(정량) • 정책주제(정량)	• 범위와 함께 법적 근거 제시 • 적정성이 낮은 응답자 정성의견 작성
	국가교육정책 범위 적절성	• 인력양성(정량) • 인력배분 · 활용(정량) • 인력기반조성(정량)	• 참고자료로 국가인적자원개발분류체계 제시
Ⅱ. 중장기 국가교육정책 모니터링 체계의 설계시 고려 사항	국가교육위원회의 국가교육발전 이행상황 점검 이슈	• 국가교육위원회의 국가교육발전 이행상황 점검 관련 이슈(정성)	• 연구진 이슈 및 예상이슈 각 3가지 제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 아젠더의 성과지표 반영 방안 (제도적 장치 마련)	•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성과지표로서 점검결과 반영(정량) • 지자체 성과관리규칙의 성과지표로서 점검결과 반영(정량) • 국교위 점검결과의 성과지표 반영(정량)	• 정부업무평가기본법 및 지방자치단체 성과관리 규칙 사례 제시
	이의신청 제기 조항 신설	• 이의신청 조항 제정 필요성(정량)	
	시행계획 점검 업무 수행 조직 구성 및 업무 분장	• 정책점검조사과 신설 적절성(정량) • 정책조사분석팀 업무분장 적절성(정량) • 시행계획점검팀 업무분장 적절성(정량) • 점검정보관리팀 업무분장 적절성(정량)	• 현 국가교육위원회 조직표 시행계획점검업무 수행 조직 제시
	국가교육정책 점검 관리 정보시스템	• 국가교육정책 점검 관리 정보시스템 필요성 (정량+정성)	

한편 조사지 서두에는 조사의 목적을 상세히 설명하고 조사 전 응답자와의 사전 통화를 통해 서면 자문 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하였으며, 답변한 내용은 통계목적으로만 활용됨을 고지하여 연구윤리를 준수하였다.

2. 전문가 자문 결과

가. 국가교육정책의 개념과 구성요소에 관한 인식

국가교육정책의 개념과 구성요소에 관한 인식과 관련해서는 국가교육정책의 개념 정의, 국가교육정책의 범위 결정 기준, 국가교육정책의 범위와 관련한 적절성 관련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국가교육정책 개념 정의의 적절성

국가교육정책 개념 정의의 적절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문헌 검토 결과를 토대로 국가교육정책 개념(안)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지지되는 교육이념 또는 이를 구현하는 국가적 활동의 기본 방침이나 지도 원리라고 정의하고, 정책 대상(전 생애에 걸친 모든 국민), 정책 영역(비전과 방향, 제도 개선, 거버넌스 및 재정), 정책 주체(국가, 지자체, 사회) 등에서의 교육 제반 방침이나 활동을 포함함"으로 제시하였으며, 전문가 검토 결과 응답자의 64.3%(18명)이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국가교육정책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표 Ⅲ-3〉 국가교육정책 개념 정의 적절성 분석 결과

구분	명	(%)
동의	18	(64.3)
비동의	10	(35.7)
전체	28	(1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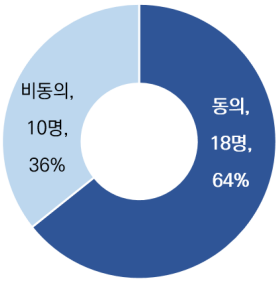

2) 국가교육정책 범위 결정기준의 적절성

국가교육정책 범위 결정기준의 적절성과 관련해서는 앞선 문헌 검토를 토대로 생애단계는 헌법 31조와 교육기본법 제3조에 근거하여 영유아, 청소년, 청년, 중장년, 고령자로 제시하였으며, 정책 영역은 국가교육위원회법 10조에 근거하여 교육비전, 중장기방향, 교육제도 개선, 거버넌스 개편, 재정 운영을 제시하였다. 정책 주체는 국가교육위원회법과 평생교육 관련 기존조사에 근거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및 기업을 제시하고 이와 관련한 적절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정책 주체와 관련해서는 지방자치단체체와 관련하여 기초자치단체를 제외하고 광역자치단체로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에 관한 추가 문항을 제시하여 구체적인 의견을 수렴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Ⅲ-4〉 국가교육정책 범위 결정기준의 적절성 분석 결과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1 .생애 단계 : 영유아, 청소년, 청년, 중장년, 고령자	27	4.11	1.15
2. 정책 영역 : 교육비전, 중장기 방향, 교육제도 개선, 거버넌스 개편, 재정 운영	28	4.07	1.18
3. 정책 주체 :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학교 및 기업	28	3.61	1.29
3-1. 광역자치단체로 범위 제한(기초자치단체 제외)	28	3.32	1.25

주) 5점 Likert 척도

분석결과 생애단계는 4.11, 정책영역은 4.07로 나타난 반면 정책 주체와 관련해서는 3.61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또한 광역자치단체로 범위를 제한하는 것과 관련하여서도 3.33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3) 국가교육정책 범위의 적절성

국가교육정책 범위의 적절성과 관련해서는 이상의 결정기준에 따른 범위를 상세 제시하고, 이와 관련한 인식 수준을 조사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Ⅲ-5〉 국가교육정책 범위의 적절성 분석 결과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Ⅰ. 인력 양성	Ⅰ-1 초·중등 교육	1-1-1 영유아교육 지원	27	4.59	0.57
		1-1-2 초등학교 교육 지원	27	4.74	0.53
		1-1-3 중등학교 교육지원(일반고, 특성화고, 특수학교 포함)	27	4.78	0.51
	Ⅰ-2 고등교육(학부)	1-2-1 전문대학(고등직업교육) 지원	27	4.81	0.48
		1-2-2 대학교(고등교육) 지원	27	4.85	0.36
	Ⅰ-3 고등교육 (대학원)	1-3-1 대학원 교육 지원	27	4.63	0.63
		1-3-2 첨단 핵심 인력 양성	27	4.41	0.93
		1-3-3 지식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27	4.15	0.99
		1-3-4 연구개발(R&D) 역량 강화	27	4.52	0.94
Ⅱ. 인력 배분·활용	Ⅱ-1 평생교육(협의적 정의)	2-1-1 청소년 활동 지원	27	4.30	0.72
		2-1-2 사회교육 운동 지원	27	4.04	0.81
		2-1-3 성인 경력 개발 지원	24	4.42	0.88
	Ⅱ-2 재직자 및 실업자 직업훈련	2-2-1 재직자 직업능력개발	27	4.37	0.84
		2-2-2 실업자·취업예정인력 직업훈련	27	4.48	0.80
	Ⅱ-3 여성/군경/공공 분야 인력	2-3-1 여성 인력	27	4.30	0.91
		2-3-2 군·경 인력	27	4.00	0.96
		2-3-3 공공분야 인력	27	4.11	1.01
	Ⅱ-4 취약 계층 인력	2-4-1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인력	27	4.52	0.64
		2-4-2 중고령층 인력	27	4.37	0.69
Ⅲ. 인력 기반 조성	Ⅲ-1 인력 수급 및 정보생성·제공	3-1-1 분야별·중장기 인력수급전망	27	4.59	0.84
		3-1-2 인력 통계·정보체제구축	27	4.59	0.75
	Ⅲ-2 인력 평가/인증 및 지식권리보호	3-2-1 인력 조사·분석·평가	27	4.37	0.93
		3-2-2 인력 및 능력인증 체제	27	4.26	0.76
		3-2-3 지식재산권 보호	27	3.74	1.13
	Ⅲ-3 지역인력	3-3-1 지역인력 추진체제	27	4.19	0.88
		3-3-2 지역산업인력 양성 지원	27	4.33	1.07
	Ⅲ-4 산학협력	3-4-1 산학연 협력 체제 구축 및 활동 지원	27	4.00	1.04
	Ⅲ-5 국제협력	3-5-1 해외 인력 활용	27	4.22	0.80
		3-5-2 국제 인력 양성·활용 지원	27	4.11	0.89

주) 5점 Likert 척도

분석결과 대학교(고등교육)지원이 4.85로 전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지식재산권 보호가 3.74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영역별로 살펴보면 먼저 인력양성 측면에서는 고등교육이 전문대학 지원 4.81, 대학교 지원 4.85 순으로 전체 영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으며, 초·중등교육의 경우 중등학교 교육지원 4.78 및 초등학교 교육지원도 4.74, 영유아교육 지원 4.59의 순으로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고등교육은 대학원 교육지원이 4.63로 높았고, 다음은 연구개발(R&D) 역량 강화 4.52, 첨단 핵심인력 양성 4.41 순으로 나타났으며, 지식서비스 전문인력 양성은 4.15로 해당 영역 내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였다. 인력배분·활용 측면에서는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인력 지원이 4.5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실업자·취업예정인력 직업훈련 4.48, 성인 경력 개발 지원 4.4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군·경 인력은 4.00으로 해당 영역 내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인력기반 조성 측면에서는 인력수급 및 정보생성·제공과 관련하여 분야별 중장기 인력수급전망과 인력 통계·정보체제 구축이 각 4.59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인력 조사·분석·평가 4.37, 지역산업인력 양성 지원 4.33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지식재산권 보호는 3.74로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나. 중장기 국가교육정책 모니터링 체계 설계 시 고려사항

중장기 국가교육정책 모니터링 체계 설계 시 고려사항과 관련해서는 문헌검토 및 연구진 협의를 통해 도출된 내용을 토대로 국가교육위원회의 국가교육발전 이행상황 점검 관련 발생 이슈,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 아젠더의 성과지표 반영 방안(제도적 장치 마련), 이의신청 제기 조항 신설, 시행계획 점검 업무 수행 조직 구성 및 업무 분장, 국가교육정책 점검 관리 정보시스템 관련 인식을 조사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국가교육위원회의 국가교육발전 이행상황 점검 관련 발생 이슈

국가교육위원회의 국가교육발전 이행상황 점검 관련 발생 가능한 쟁점 사항으로는 첫째,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라는 쟁점, 둘째, 국가교육위원회는 무엇을 목적으로 어떤 절차와 기준으로 이행상황을 준비할 것인가? 라는 쟁점, 셋째,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를 어떤 목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점검 결과를 제공하고 활용하게 할 것인가?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시되었다. 그 외에도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업무의 효율성과 참여 적극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적 개정 사항이 필요한가? 라는 쟁점 등이 제시되었다.

2)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 아젠더의 성과지표 반영(제도적 장치 마련) 적절성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 아젠더의 성과지표 반영(제도적 장치 마련) 관련 의견 수렴을 위해서는 정부업무평가기본법 혹은 지자체 성과관리규칙의 성과지표로서 반영하는 방안의 적절성과 국가교육위원회 점검결과의 성과지표에 반영하는 방안과 관련한 상세 문항을 제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Ⅲ-6〉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 주요 아젠더의 성과지표 반영 적절성 분석 결과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1. 국무조정실 주관의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성과지표로서 국교위 점검 결과 반영하도록 조정		27	4.52	0.51
2. 지자체의 성과관리 규칙의 성과지표로서 국교위 점검 결과 반영하도록 조정		27	4.30	0.72
3. 국교위 점검 결과의 성과지표에 반영하는 방식	3-1. 정부업무평가시 해당 지표에 국교위 점검 결과를 그대로 활용	27	3.78	0.89
	3-2. 국교위 점검 사항을 평가 지표로 개발하여 정부업무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	27	3.96	0.81
	3-3. 지자체 성과평가시 해당 지표에 국교위 점검 결과를 그대로 활용	27	3.78	0.85
	3-4. 국교위 점검 사항을 평가 지표로 개발하여 지자체 성과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	27	3.89	0.85

주) 5점 Likert 척도

분석결과 국무조정실 주관의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성과지표로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점검 결과를 반영하도록 조정하는 안이 4.5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지자체의 성과관리 규칙의 성과지표로서 국가교육위원회의 점검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안이 4.30으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국가교육위원회의 점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및 지자체 성과지표로 활용하는 방안은 각 3.78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국가교육위원회의 점검사항을 평가지표로 개발하여 정부업무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하는 안 3.96 및 국교위 점검 사항을 평가 지표로 개발하여 지자체 성과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하는 안도 3.89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3) 이의신청 제기 조항 신설 필요성

이의신청 제기 조항 신설 관련 문항은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수립한 매년 시행계획에 관한 이행상황을 점검한 후,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되어 있는데 반해, 국가교육위원회법에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이의신청 제기 조항이 누락되어 있기에 이와 관련한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문항을 제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Ⅲ-7〉 이의신청 제기 조항 신설 필요성 분석 결과

구분	명	(%)
전혀 필요하지 않다	1	(3.6)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1	(3.6)
보통이다	2	(7.1)
필요한 편이다	11	(39.3)
매우 필요하다	13	(46.4)
전체	28	(100.0)

주) 5점 Likert 척도, 평균 4.21 및 표준편차 0.9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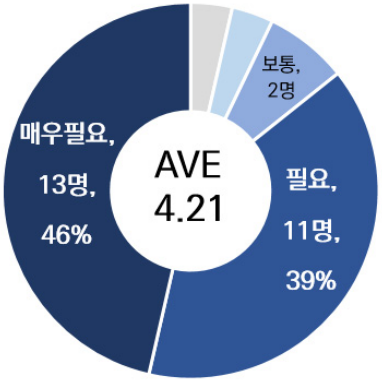

분석결과 '매우 필요하다'가 13명(46.4%)으로 가장 많았으며, '필요한 편이다'도 11명(39.3%)으로 높게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85.7%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평균은 4.21로 나타났다.

4) 시행계획 점검 업무 수행 조직 구성 및 업무 분장의 적절성

시행계획의 점검업무 수행 조직과 관련해서는 현 국가교육위원회 조직표에 '시행 계획 점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 구성(안)으로 (가칭)정책점검조사과 신설(안)을 제시하고 이의 적절성 인식을 조사하는 문항을 제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Ⅲ-8〉 시행계획 점검 업무 수행 조직 구성 및 업무 분장의 적절성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1. 정책점검조사과(가칭) 신설		28	4.36	0.83
1-1. 정책점검조사과 아래 정책조사분석팀 신설		27	4.22	0.70
1-2. 정책점검조사과 아래 시행계획점검팀 신설		27	4.22	0.64
1-3. 정책점검조사과 아래 점검정보관리팀 신설		26	3.96	0.82
2. 정책조사 분석팀의 업무 분장의 적절성	2-1.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국내 및 해외 관련 정책 현황의 조사 계획 수립	27	4.22	0.89
	2-2.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협력 요청에 관한 사항	27	4.30	0.87
	2-3. 국내외 교육 및 유관 통계 조사 자료의 수집·분석·정리	27	4.41	0.89
	2-4. 유엔, 유네스코, 유럽연합,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의 교육 정책 관련 발간 자료의 수집·분석·정리	27	4.00	0.96
	2-5. 교육 관련 정책 동향, 정책 집행 현황, 교육 연구 정보 수집 및 분석을 위하여 국가교육연구센터와의 협력 사항	27	4.33	0.88
	2-6. 위 업무 수행을 위한 인원(3명)은 적절한가 ?	27	3.15	1.06

구분		N	평균	표준편차
3. 시행계획 점검팀의 업무 분장의 적절성	3-1. 국가교육시행계획 점검을 위한 제반 실행 계획 수립	27	4.44	0.70
	3-2. 국가교육시행계획 관련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의 업무 협력	27	4.52	0.58
	3-3. 국가교육시행계획 점검 관련 위원회 운영 지원	27	4.19	0.74
	3-4. 국가교육시행계획 점검 결과 분석 및 활용 계획 수립 및 운영	27	4.52	0.51
	3-5. 위 업무 수행을 위한 인원(3명)은 적절한가 ?	27	3.15	1.03
4. 점검정보 관리팀의 업무 분장의 적절성	4-1. 국가교육시행계획 점검 및 점검 결과 게시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27	4.11	0.93
	4-2. 국가교육시행계획 점검 업무를 위한 정보시스템 활용 지원	27	4.22	0.80
	4-3. 국가교육시행계획 점검 관련 정보 관리 및 분석 업무 지원	27	4.15	0.86
	4-4. 국가교육시행계획 점검 결과 문의 및 의견수렴에 관한 정보시스템 활용 지원	27	4.15	0.77
	4-5. 위 업무 수행을 위한 인원(3명)은 적절한가 ?	25	4.08	0.81

주) 5점 Likert 척도

분석결과 (가칭)정책점검조사과 신설 적절성은 4.36으로 나타났으며, 하위 부서의 경우 정책조사분석팀 및 시행계획점검팀이 각 4.22로 나타난 반면 점검정보관리팀은 3.96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조직 내 업무분장의 적절성과 관련해서는 정책조사분석팀의 경우 국내외 교육 및 유관 통계 조사 자료의 수집·분석·정리가 4.41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교육 연구 정보 수집 및 분석을 위하여 국가교육연구센터와의 협력 사항 4.33,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협력 요청에 관한 사항 4.30,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국내 및 해외 관련 정책 현황의 조사 계획 수립 4.22, 유네스코, 유럽연합,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의 교육 정책 관련 발간 자료의 수집·분석·정리 4.00 등의 순으로 나타난 반면 업무수행을 위한 인원(3명)의 적절성은 3.1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시행계획점검팀의 업무분장의 경우 국가교육시행계획 관련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의 업무 협력과 국가교육시행계획 점검 결과 분석 및 활용 계획 수립 및 운영이 각 4.52로 가장 높았으며, 다음은 국가교육시행계획 점검을 위한 제반 실행 계획 수립 4.44, 국가교육시행계획 점검 관련 위원회 운영 지원 4.19 순으로 나타난 반면 업무수행을 위한 인원(3명)의 적절성은 3.15로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점검정보관리팀의 경우 국가교육시행계획 점검 업무를 위한 정보시스템 활용 지원이 4,22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은 국가교육시행계획 점검 관련 정보 관리 및 분석 업무 지원와 국가교육시행계획 점검 결과 문의 및 의견수렴에 관한 정보시스템 활용 지원이 각 4.15, 국가교육시행계획 점검 및 점검 결과 게시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4.11 순으로 나타났고 업무수행을 인한 인원(3명)의 적절성은 4.04로 다른 영역 대비 높게 나타났다.

5) 국가교육정책 점검 관리 정보시스템

국가교육정책 점검 관리 정보시스템과 관련해서는 구축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한 문항을 제시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Ⅲ-9〉 국가교육정책 점검 관리 정보시스템 필요성 분석 결과

구분	명	(%)
전혀 필요하지 않다	1	(3.6)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2	(7.1)
보통이다	2	(7.1)
필요한 편이다	14	(50.0)
매우 필요하다	9	(32.1)
전체	28	(100.0)

주) 5점 Likert 척도, 평균 4.00 및 표준편차 1.02

분석결과 '필요한 편이다'가 14명(50.0%)으로 가장 많았으며, '매우 필요하다'도 9명(32.1%)으로 높게 나타나 전체 응답자의 82.1%가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평균은 4.00으로 나타났다.

제2절 시행계획의 이행력 제고와 점검 체계 설계에 주는 시사점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수립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터하여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작성한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국가교육위원회의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에 관한 전문가의 인식 및 요구를 분석하기 위하여 유아교육정책, 초·중등교육정책, 고등교육정책, 직업교육훈련정책, 평생교육정책, 과학기술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 법학 등을 전공한 전문가 패널 29명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를 개발하고 이에 터하여 심층면담조사를 실시하였다. 앞에서 제시된 심층면담 조사 결과에 기반하여 국가교육위원회가 준비해야 할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체계 설계시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업무의 효율성과 관련 참여 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현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1조 7항에 따라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점검 결과를 게시하게 되어 있지만, 이행상황 점검의 구체적인 목적, 점검 대상, 점검 절차, 점검 기준, 점검 결과의 게시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조항들이 하위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서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을 고려할 때,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 수립 및 이행상황 점검에 대한 참여 등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국가교육발전계획과 관련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들이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상황 점검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한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개정이 필요하다.

둘째,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준비단계의 필요성과 노력을 확대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연구를 통하여 매년 시행계획 수립을 담당할 중앙부처의 담당과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조직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인력 양성 및 활용 관련한 중앙부처의 재정지원사업 담당과를 파악하였고, 광역 자치단체 수준에서 인력 양성 및 활용 관련 사업을 담당하는 조직을 파악하였다. 이를 통하여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할 '매년 시행계획'의 담당 예상 조직을 파악함으로써,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교육위원회간의 '매년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업무' 수행의 협력 체계를 마련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다만,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와 국가교육위원회간의 '시행 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절차'를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 현 국가교육위원회법에는 수립된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관련 구체적인 절차를 제시하지 않고 있고,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관한 계획도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할 '매년 시행계획'의 목적과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의 목적 등이 명확하지 않다면 국가교육위원

회의 역할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을지에 대한 어려움이 예상된다.

셋째, 국가교육정책 중에서 핵심적인 아젠더 중심의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영유아단계부터 고령자까지의 전 생에 걸친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핵심 아젠더가 구안되고 사회적 숙의 과정을 거쳐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이 수립될 것이다. 이와 같이 방대한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터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이 어떻게 이행되고 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현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직과 예산으로는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결국 국가교육위원회의 주요 업무인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시행계획에 관한 이행상황을 점검할 수 있는 조직의 신설과 인원의 확대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현 국가교육위원회의 교육발전총괄과, 교육과정정책과, 참여지원과 이외에 정책점검조사과(가칭)를 신설함과 동시에 앞에서 말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조사분석팀', '시행계획점검팀', '점검정보관리팀'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특히 교육부, 고용노동부 등의 5개년 기본계획과 달리 10년간 추구해야 할 국가교육정책 비전과 아젠더를 발굴하고, 발굴된 비전과 아젠더에 따라 중앙부처의 5개년 계획과 매년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의 일관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국가교육위원회의 조직 신설 및 확대가 선행되어야 한다.

넷째, 국가교육위원회가 '매년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어떤 목적과 절차와 기준으로 점검할 것인지에 관한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다. 국가교육위원회의 이행상황 점검 업무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서 제시된 비전, 중장기 발전 방향, 주요 아젠더 등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정책 사업화되고 정책 수혜자인 개인 학습자에게 지원 및 긍정적인 혜택으로 이어지는지를 점검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다만, 이행상황 점검 업무의 궁극적인 목적은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제시된 비전, 가치, 중장기 방향, 핵심 아젠더 등이 개인 학습자 모두에게 적용되는 과정을 모니터링하고, 점검 결과의 환류작용을 통한 국가교육발전계획과 매년 시행계획 유지 및 조정'이라 할 수 있다.

또한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세부 기준은 증거 기반한 시행계획 점검을 전제로 설정되어야 한다. 특히, 사회적 숙의 과정을 거쳐 수립될 10년 국가교육발전계획과 매년 시행계획에 관한 이행상황 점검은 증거 기반 모니터링이 가능한 점검 지표를 개발하되, 되도록 기존 통계 DB를 활용하여 해당 점검 지표가 잘 설명될 수 있어야 한다.

제4장

시행계획의 모니터링체계 설계를 위한 과제

제1절 시행계획의 모니터링 체계 설계(안) 방향
제2절 시행계획의 모니터링 체계 설계를 위한 추진 과제

제4장 시행계획의 모니터링체계 설계를 위한 과제

제1절 시행계획의 모니터링 체계 설계(안) 방향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1조와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는 교육정책관계자협의회를 통하여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른 관계행정기관장이 수립한 매년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16조에는 교육정책관계자협의회의 이행상황 점검 업무를 규정하고 있고, 교육정책관계자협의회 구성 및 회의 운영과 기타 제반 사항 규정의 절차 등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 국가교육발전계획이 수립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장의 시행계획 수립 및 수행 성과의 제출 등의 구체적인 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결정되어 있지 않다. 뿐만 아니라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업무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도 제시되지 않은 상황이기에 여기에서는 시행계획의 점검(모니터링) 체계를 설계할 때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의 목적을 명확히 해야 한다. 앞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1안) 시행계획의 실천 과제별 운영 현황 및 실태 중심으로 한 체제적 모니터링 모형을 선정할 것인지와 (2안) 시행계획의 실천 과제별 적합성과 효과성을 모니터링하는 주제(가치)모니터링 모형을 선정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1안인 체제적 모니터링 모형을 선택하는 경우에는 교육부 정보공시제 중 '학교 알리미' 시스템과 같이 정책영역(이행상황 점검에서는 아젠더에 해당됨)별 주요 계획과 실적 파일을 탑재하여, 실천 과제별 이행상황 현황과 실태를 관리하고, 공개하는 '소극적 이행상황 점검 및 결과 공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2안인 주제(가치) 모니터링 모형의 경우에는 정부업무평가 시스템과 같이 이행상황 점검 지표 확정 → 이행상황 점검 계획 수립 → 관계행정기관 대상 점검 실시 → (점검 결과의 이의신청 제기) → 점검 결과 공개 → (점검결과의 설명회) 등의 절차로 추진하는 '적극적 이행상황 점검 및 결과 공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괄호 부분으로 되어 있는 이의신청과 점검 결과의 설명회 단계는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거 업무에 대한 정책적 판단과 의지가 반영되어야 할 부분이며, 공론화를

통하여 단계의 필요성과 제도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정보의 범위와 정보 관리 절차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유사한 성과관리지표와 정보 관리 체계 등의 사례를 보면, 10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서 추구하는 비전, 목표, 아젠더 등을 관계 행정기관의 매년 국가교육시행계획에서 어떻게 적합하게 반영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뿐만 아니라 시행계획에서 제시된 실천과제들의 이행상황을 어떤 정보(예: 정량지표, 정성지표 등)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를 논의해야 한다.

1안인 체제적 모니터링 모형에서는 시행계획에 제시된 실천 과제별로 해당 기관에서 관리되는 양식에 따라 계획과 실적을 탑재하도록 하고, 이를 종합하여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결과로서 공개하는 방식을 들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국가교육발전계획에 제시된 비전, 목표, 아젠더와 연결된 관계 행정기관의 실천과제를 제시하도록 하고, 해당 기관에서 관리되는 실천과제 성과관리 계획과 실적(성과)의 파일을 제시하는 방안이다. 이를 통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행정 업무를 최소화하고, 실천과제의 계획 및 실적에 관한 원자료 형태로 정보를 수립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2안인 주제(가치) 모니터링 모형에서는 위에서 제시된 현황 및 실태 관련 정보와 함께 국가교육발전계획의 비전, 목표, 아젠더와 연계된 중장기 성과지표와 관련된 정보 항목도 포함하여, 시행상황에 관한 점검 정보를 수집, 가공, 창출 등을 관리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중장기 성과지표의 예로는 ① 국가교육발전계획에 제시된 중장기 비전과 목표의 달성도, ② 국가교육발전계획에 제시된 아젠더의 이행 노력, ③ 시행계획의 실천과제별 정책 효과, ④ 시행계획의 실천과제별 국민 만족도와 국민 체감도, ⑤ 교육기획 균등 및 기초학력보장, ⑥ 학습비 부담 완화, ⑦ 학습자 역량 강화, ⑧ 교육여건 개선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을 위하여 점검 준비단계, 점검 시행 단계, 점검 결과 공개 단계 등 체계화된 점검 절차가 마련되어야 한다. 점검 준비단계에서는 ①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체계(목적, 절차, 결과 활용 등)별 정책 의사결정을 확정하고, ② 시행계획 이행상황 검점 관련 지표와 정보 항목들을 결정하며, ③ 시행계획 이행상황 점검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④ 시행계획 이행상황 점검 관련 담당자들 대상으로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적용하며, ⑤ 시행계획 이행상황 점검 정보 시스템 구축을 위하여 ISP 과제와 시스템 구축 사업을 수행하고, ⑥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의 이행력 제고를 위한 법, 규정 등의 개정을 추진하며, ⑦ 국교위 내부에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조직을 신설하고, 인원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점검 실시 단계에서는 ① 국가교육위원회법 16조에 제시된 교육정책관련협의회를 구성하고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에 관한 업무를 준비 수행하여야 하며, ②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관련 정보의 입력, 가공, 결과 공개 절차를 수행하여야 하고, ③ 국가교육연구센터와 연계하여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관련 Q&A 콜센터를 운영함과 동시에 국가교육위원회 관련 위원회를 운영하여야 한다.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결과의 공개 단계에서는 ① 이행상황 점검 (예비) 결과를 확정하고, 관련 행정기관에게 통보한

후 법령 개정을 전제로 하여 이행상황 점검 결과의 이의신청 절차를 추진해야 한다. ② 이의신청 절차를 완료한 후 점검 결과를 국가교육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고, ③ 제도 개선을 전제로 하여 작년 시행계획 이행상황 점검 결과와 차년도 계획 수립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제2절 시행계획의 모니터링 체계 설계를 위한 추진 과제

국가교육위원회의 국가교육발전 이행상황 점검 관련 발생 가능한 쟁점 사항으로는 첫째,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국가교육위원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라는 쟁점, 둘째, 국가교육위원회는 무엇을 목적으로 어떤 절차와 기준으로 이행상황을 준비할 것인가? 라는 쟁점, 셋째,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한 결과를 어떤 목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점검 결과를 제공하고 활용하게 할 것인가? 등이 주요 쟁점으로 제시되었다. 그 외에도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업무의 효율성과 참여 적극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적 개정 사항이 필요한가? 라는 쟁점 등이 제시되었다. 이러한 쟁점들을 해소하기 위한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추진과제 1.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을 준비하기 위한 조직을 신설하고,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원의 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국가교육위원회법에 따른 시행 계획 점검을 위한 '정책 점검조사과(가칭)'를 신설하고, 그 아래 정책조사분석팀과 시행계획점검팀, 점검정보관리팀을 두고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서면 자문 결과에 기초하여 조직에서 수행하여야 할 업무 분장을 조항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정책점검조사과(가칭)의 주요 업무는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국내 및 해외 관련 정책 현황의 조사, 국가교육시행계획 점검 관련 제반 사항 수행,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의 영·유아교육, 초·중등교육, 고등교육, 교육훈련고용, 평생교육, 특별지원 교육 관련 국내외 정책 및 집행 현황의 조사 등을 담당한다. 이를 위하여 정책점검조사과는 총괄하되, 관련 정부출연연구소 및 기업 연구소 등으로 구성된 '국가교육연구센터' 와의 연계를 통한 '증거기반 정책 점검 및 조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정책조사분석팀의 주요 업무는 첫째,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국내 및 해외 관련 정책 현황의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둘째,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협력 요청에 관한 사항을 다루며, 셋째, 국내외 교육 및 유관 통계 조사 자료의 수집·분석·정리하여 제공하고, 넷째, 유엔, 유네스코, 유럽연합,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의 교육 정책 관련 발간 자료의 수집·분석·정리하며, 다섯째, 교육 관련 정책 동향, 정책 집행 현황, 교육 연구 정보 수집 및 분석을 위하여 국가교육연구센터와의

협력 사항을 다룬다.

시행계획점검팀의 주요 업무는 첫째, 국가교육시행계획 점검을 위한 제반 실행 계획을 수립하고, 둘째, 국가교육시행계획 관련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의 협력 업무을 담당하며, 셋째, 국가교육시행계획 점검 관련 위원회 운영을 지원하고, 넷째, 국가교육시행계획 점검 결과 분석 및 활용 계획을 수립 및 운영한다.

점검정보관리팀의 주요 업무는 첫째, 국가교육시행계획 점검 및 점검 결과 게시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을 지원하며, 둘째, 국가교육시행계획 점검 업무를 위한 정보시스템 활용을 지원하고, 셋째, 국가교육시행계획 점검 관련 정보 관리 및 분석 업무를 지원하며, 넷째, 국가교육시행계획 점검 결과 문의 및 의견수렴에 관한 정보시스템 활용을 지원한다.

이를 위하여 정책점검조사과(가칭)에는 과장을 두며, 각 팀에서는 최소 3명 이상의 인원을 배치하여 운영하는 것을 권고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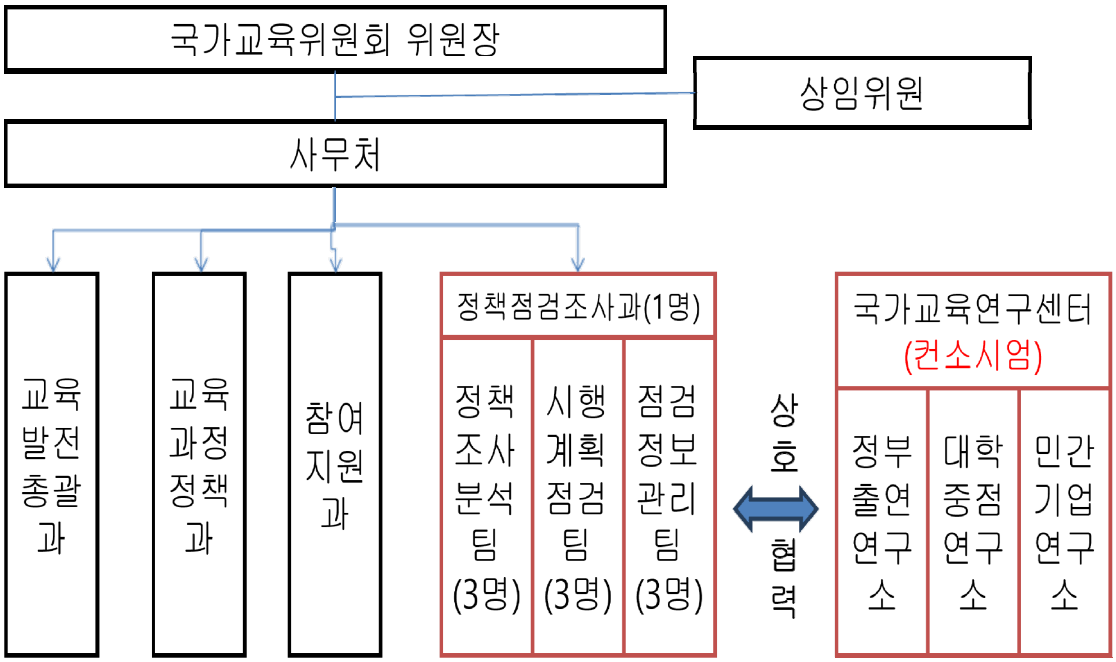

[그림 Ⅳ-1]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을 위한 정책점검조사과(가칭) 신설 개요도

추진과제 2.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 터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근거 법령을 마련해야 한다.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의 경우, 중앙부처 등의 통합적인 성과관리체제 구축과 자율적인 평가역량의 강화를 통하여 국정운영의 능률성·효과성 및 책임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일반법에 해당한다. 국가교육위원회법에 따른 국가교육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에 기초하여 실시되는 정책의 추진성과 등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정무업무평가의 직·간접적 대상이 되므로, 이미 두 법률은 내용적으로 연계적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국가교육위원회법에 따른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그 결과 공개는 국가교육위원회법이라는 특별법적 성격의 법률에서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서 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서, 정부업무평가법에 우선하여 적용되는 구조로 이해할 수 있다.

따라서, 국가교육위원회법에 따른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과 그 결과에 기초한 방향으로의 수립과 실행을 권고하는 방안을 고려하는 경우, 국가교육위원회법 및 동 하위법령에서 완결적으로 그러한 법적 근거를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일반적으로 법에서 정하는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 또는 평가하도록 하는 방식으로는 ㉠ 이행상황을 점검 또는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만 두는 경우(여성경제활동법 제6조, 등대보존활용법 제5조, 국외산림탄소축적증진법 제6조), ㉡ 점검 또는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과 함께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거나 시행계획 등에 변경·반영 요구하도록 규정하는 경우(여성과기인법 제5조, 건강가정기본법 제17조), ㉢ 점검 또는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과 함께 시정조치 요구, 점검대상, 점검절차, 점검범위 등을 규정한 후, 구체적인 평가기준 등에 관하여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이 정하도록 위임하는 경우(재난안전법 시행령 제29조의3, 저출산·고령화 기본법 제21조)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러한 입법사례 중에서 설문에서 의도하는 방안은 ㉢의 입법사례인 것으로 보이며, 이에 기초하여 교육위원회법 개선방안을 도출할 수 있다.

아래와 같이 이미 국가교육위원회법에서는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과 결과 공개를 대통령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제11조 제7항), 이러한 위임에 근거하여 규정된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8조를 위 ㉢의 입법사례를 참조로 개정하는 방안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이행상황 점검결과를 반영한 개선의견 통보 등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행정적 의무를 수반하는 내용으로서 법률에서 규정함이 적절한 것으로 보여, 국가교육위원회법 제11조 제8항을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국가교육위원회법(현행)	국가교육위원회법(현행)
제11조(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① 위원회는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교육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②-④ (생략)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전계획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한 전년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⑧ 그 밖에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1조(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 등)** ① 위원회는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국가교육발전계획(이하 “발전계획”이라 한다)을 10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⑤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발전계획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추진하여야 한다. ⑥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라 추진한 전년도의 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위원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⑧ 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7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반영한 개선의견을 통보할 수 있다.** ⑨ 그 밖에 발전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또한 현행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 제8조를 위 ㉢의 입법 사례를 참조로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현행)	국가교육위원회법 시행령(개선안)
제8조(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른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결과 공개) ① 관계행정기관의장등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전년도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그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를 추진실적을 제출받은 해의 3월 31일까지 관계행정기관의장등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를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신설) ③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장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신설)	**제8조(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른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및 결과 공개)** ① 관계행정기관의장등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라 전년도 추진실적을 작성하여 그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추진실적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그 점검결과 **및 개선의견**을 추진실적을 제출받은 해의 3월 31일까지 관계행정기관의장등에게 통보해야 하며, 이를 국가교육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개선의견을 통보받은 관계행정기관의장등은 그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개선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여 국가교육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④ 국가교육위원회는 법 제11조제7항에 따라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거나 **제3항에 따라 제출된 개선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행정기관의장등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방법, 범위 및 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가 정한다.**

추진과제 3. 국가교육시행계획의 증거기반한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또는 시도교육청 평가와 연계하여 이행상황 점검 결과의 활용도를 높이고,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사회적 숙의 절차를 거쳐 10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교육발전계획에 터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국가교육위원회는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함과 동시에 점검 결과를 국가교육위원회 홈페이지에 제시하도록 되어 있다.

앞에서도 제시한 바와 같이, 10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에서 제시된 국가교육의 비전, 중장기 발전 방향, 교육 영역별 핵심 아젠더들을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주요 정책 사업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는 정책적 도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국가교육위원회법에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 도구가 매우 필요한 상황이다. 따라서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결과를 정부업무평가 또는 시도교육청의 성과지표로 개발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하여 사회적 합의를 거친 국가교육 비전과 중장기 발전 방향, 교육 영역별 핵심 아젠더 등과 관련된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정책 사업으로 신설 또는 기존 사업과의 연계 등의 형태로 협력할 수 있다.

또한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른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점검하기 위한 정보를 매년 관리함과 동시에 최소 10년간의 변화 추이 등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국가교육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할 때, 어떤 목적으로 누구를 대상으로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게시할 것이며,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한 논의도 추가되어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감안할 때,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과정과 점검 결과 게시는 다음 두가지 유형의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첫 번째 유형은 수립된 시행계획 내용과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정보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이 전체 파일을 등록하고, 이에 터하여 국가교육위원회에서 전문가를 구성하여 전체 파일의 내용을 개발된 이행상황 점검 지표에 따라 점검하는 절차이다. 결국, 개발된 이행상황 점검 지표별 전체 보고서를 제시하고, 점검에 참여한 전문가들이 이행상황 점검 지표에 따른 정보를 찾아 이행상황의 점검 결과를 제시하는 형태이다.

두 번째 유형은 개발된 이행상황 점검 지표에서 요구되는 정보를 상세화한 후, 상세화된 정보를 중앙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담당자들이 입력하고, 입력된 정보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인한 후, 정보시스템을 활용하여 정량적인 이행상황 점검 결과를 도출하여 운영하는 방식이다.

참고문헌

〈국내 문헌〉

경기도교육청.(2023). 공약이행종합평가보고서

경기도교육청(2023) 2024~2028년 중기지방교육재정계획,

교육부 2022.01.19.일자 보도자료. 「2021년 국가평생교육통계조사」결과 발표

교육부. (2016). 창의혁신인재 양성을 위한 대학 학사제도 개선방안.

교육부(2022) 교육부 성과관리 전략계획 (2022~2026)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2023). 2023년 평생교육통계조사 지침서, 한국교육개발원 연구자료 CRM 2023-36

국가평생교육진흥원(2023.4). 「평생교육사업 조사·분석 제2차 시범수행 연구」제안요청서

국무조정실(2022). 정부업무평가백서[2017~2021].

국무조정실(2023). 2023년도 정부업무평가 시행계획(안)

김신혁 (2010) 매니페스토 제도의 등장과 운용, 한국정책학회 춘계학술대회

김현구(2006).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의 논리와 과제 : 평가성공의 제도적 요인 분석.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6(4), p.1-28

민보경 외(2021). 미래사회 대응지표 체계 및 모니터링 방안 연구. 국회미래연구원.

박동열 외(2019). 평생직업교육훈련정책의 모니터링 및 성과 체계 구축 방안.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박동열 외. (2020). 평생직업교육훈련 주요 정책 모니터링 및 혁신 방향과 과제. 한국직업능력연구원.

박성호 외(2020). 증거기반 교육정책 모니터링 및 이행을 위한 국가교육지표 개발 연구. 한국교육개발원.

박현욱. (2022). 지방자치단체 증거기반정책 정착을 위한 방안. 지방자치정책 Brief, 155, 1-4.

서울특별시(2023) 민선8기 공약실천계획서

오혁진·김영석·이재민(2022). 평생교육사업 조사·분석의 개념과 내용 연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FR 2022-12

이병기, 박현욱. (2022). 데이터 기반 정책평가 체계 연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이희수·박효선·최홍석·황영아·송영선·이소연·이희수(2023). 2021평생교육사업 조사·분석 보고서. FR 2023-05.

장창원, 김해동, 장세현, 나현미, 이상준, 김병우, 김상호, 김금주. (2001). 국가인적자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사업(Ⅰ).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정동열 외(2017). 청년고용활성화를 위한 청년지표 체계화 및 수요자 맞춤형 전달 방안. 한국고용

정보원.
정성호. (2019). 증거기반 정책결정과 성과주의 예산에 관한 소고.
정해수·한정현(2022). 평생교육사업 관련 법령 조사·분석 연구. 국가평생교육진흥원 FR2022-13
제갈돈·제갈욱(2008). 새로운 정부업무평가제도의 발전을 위한 개선방안 모색. 정책분석평가학회보, 18(1), p.65-99
한국매니페스토 실천본부 2023.4.17.일자 보도자료「전국 시·도지사 및 교육감 공약실천계획서 평가」결과 발표
한승훈, 안혜선. (2021). 증거기반 정책의 쟁점과 한국적 맥락에서의 적용 가능성. 한국정책학회보, 30(1), 289~314.
한준 외(2017). 사회통계 프레임워크 작성 및 국가주요지표 체계 영역별 진단연구 Ⅲ: 교육·훈련 통계 프레임워크 작성 및 국가주요지표 체계 진단연구. 통계개발원.

경기도 교육청 홈페이지
교육부 홈페이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국무조정실 홈페이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파주시 교육청 홈페이지
한국고용정보원 홈페이지
한국교육개발원 국가평생교육통계 홈페이지
행정안전부 내고장알리미 홈페이지
e-나라지표 홈페이지

Gray, J. A.(1997). Evidence-Based Healthcare: How to Make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Decisions. London: Churchill Livingstone.

부 록

1. 심층면담조사지

[부록 1] 심층면담조사지

중장기 국가교육정책 모니터링 체계 설계를 위한 인식 및 요구 조사지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가운데 귀중한 시간을 내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국직업능력연구원은 국무총리 산하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 국가교육위원회의 정책 과제로 “중장기 국가교육정책 모니터링 체계 설계를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광복 이후 수많은 국가교육정책이 수립되고 실행되어 오면서, 어떤 국가교육정책이 수립되었고 무엇이 어떻게 바뀌었으며, 그런 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은 무엇인가 등에 관한 국가교육정책에 관한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 체계 연구는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 연구에서는 브레인스토밍을 통하여 ‘국가교육정책의 개념과 구성요소’는 무엇이고, 국가교육정책 모니터링 체계를 설계하기 위한 다양한 고려 사항을 도출함과 동시에 국가교육정책 모니터링 결과를 어떻게 수요자인 국민들과 정책입안자들에게 제공할 것인지를 구안하고자 합니다.

본 조사에서의 응답 사항 및 전문가님의 인적사항은 당해 연구의 통계 목적에만 사용되며 일체 대외적으로 공개하지 않습니다. 바쁘시겠지만 우리나라 중장기 국가교육정책 모니터링 및 성과 평가 체계 구축에 관한 인식 및 요구 조사에 참여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4. 4.

한국직업능력연구원

연구책임자 : 박동열(한국직업능력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붙임] 조사 관련 세부사항

□ (참여 횟수 및 일정) 설문지 작성 및 응답 회신(총 1회)

- (일시) 4월8일(월)~4월11일(목) 오후 2시까지

□ 회신처

○ E-mail : pdy3498@naver.com, fangyang@naver.com / 010-9800-2994
(박동열)

Ⅰ. 국가교육정책의 개념과 구성요소에 관한 인식

문1) 국가교육정책의 개념을 아래와 같이 조작적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이에 관한 귀하의 의견을 간략하게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교육정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의하여 지지되는 교육이념 또는 이를 구현하는 국가적 활동의 기본 방침이나 지도 원리'를 말하며, 정책 대상(전 생애에 걸친 모든 국민), 정책 영역(비전과 방향, 제도 개선, 거버넌스 및 재정), 정책 주체(국가, 지자체, 사회) 등에서의 교육 제반 방침이나 활동을 포함함

____❑$_1$ 동의한다. ____❑$_2$ 동의하지 않는다.

문 1-1) 위와 같이 생각하신 이유를 간략하게 개조식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참고 자료〉 ● 국가인적자원개발(National Human Resource Development) - '국가적 관점에서 인적자원의 효율적 개발과 활용을 위한 교육훈련, 기타 문화적 활동과 제도 개선을 포함하는 국가·사회적제반 노력'을 의미함. 산업에서 요구 인력 개발과 함께 국민의 기초학력과 직업능력 향상, 바람직한 인성 및 가치관 함양을 위한 국가행정 및 재정활동 등 국가적 제반활동 강조

문 2) '국가교육정책'의 범위를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해당 번호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국가교육정책 범위 결정 기준(안)과 근거	적절성 인식 정도				
	전혀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음	보통임	적절함	매우 적절함
1 .생애 단계 : 영유아, 청소년, 청년, 중장년, 고령자	①	②	③	④	⑤
근거 : 헌법 제31조와 교육기본법 제3조 (모든 국민이 교육 받은 권리)					
1-1. (①, ② 응답자의 경우)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가교육정책 범위 결정 기준(안)과 근거	적절성 인식 정도				
	전혀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음	보통임	적절함	매우 적절함
2. **정책 영역** : 교육비전, 중장기 방향, 교육제도 개선, 거버넌스 개편, 재정 운영	①	②	③	④	⑤
근거: 국가교육위원회법 10조 (교육비전, 중장기정책방향, 학제 교원정책 대학입학정책, · 학급당 적정 학생수 등 중장기교육제도 및 여건 개선 등)					
2-1. (①, ② 응답자의 경우) 이유는 무엇입니까?					
3. **정책 주체** : 중앙부처(17개 부처), 지방자치단체(광역, 기초), 학교 및 기업	①	②	③	④	⑤
근거: 국가교육위원회법(국가, 지자체), 평생교육사업조사(17개부처, 지자체, 대학 및 기업)					
3-1. (①, ② 응답자의 경우) 이유는 무엇입니까?					
3-2. **국가교육정책 모니터링의 실질적 운영**을 위하여 기초자치단체를 제외하고 광역 자치단체로 범위를 제한하는 방안에 관하여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①	②	③	④	⑤
3-2-1. (①, ② 응답자의 경우) 이유는 무엇입니까?					

문 3) 위에서 제시된 **국가교육정책의 결정 기준에 근거**하여 아래 설명자료와 같이 **국가교육정책 범위**를 정의하고자 합니다. '국가교육정책'의 세부 범위에 관하여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해당 번호에 √표 해주시기 바랍니다.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적절성 인식 정도				
			전혀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음	보통임	적절함	매우 적절함
Ⅰ. 인력 양성	Ⅰ-1 초·중등 교육	1-1-1 영유아교육 지원	①	②	③	④	⑤
		1-1-2 초등학교 교육 지원	①	②	③	④	⑤
		1-1-3 중등학교 교육지원(일반고, 특성화고, 특수학교 포함)	①	②	③	④	⑤

	Ⅰ-2 고등교육(학부)	1-2-1 전문대학(고등직업교육) 지원	①	②	③	④	⑤
		1-2-2 대학교(고등교육) 지원	①	②	③	④	⑤
	Ⅰ-3 고등교육(대학원)	1-3-1 대학원 교육 지원	①	②	③	④	⑤
		1-3-2 첨단 핵심 인력 양성	①	②	③	④	⑤
		1-3-3 지식서비스 전문인력 양성	①	②	③	④	⑤
		1-3-4 연구개발(R&D) 역량 강화	①	②	③	④	⑤
Ⅱ. 인력 배분·활용	Ⅱ-1 평생교육(협의적 정의)	2-1-1 청소년 활동 지원	①	②	③	④	⑤
		2-1-2 사회교육 운동 지원	①	②	③	④	⑤
		2-1-3 성인 경력 개발 지원					
	Ⅱ-2 재직자 및 실업자 직업훈련	2-2-1 재직자 직업능력개발	①	②	③	④	⑤
		2-2-2 실업자·취업예정인력 직업훈련	①	②	③	④	⑤
	Ⅱ-3 여성/군경/공공분야 인력	2-3-1 여성 인력	①	②	③	④	⑤
		2-3-2 군·경 인력	①	②	③	④	⑤
		2-3-3 공공분야 인력	①	②	③	④	⑤
	Ⅱ-4 취약 계층 인력	2-4-1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인력	①	②	③	④	⑤
		2-4-2 중고령층 인력	①	②	③	④	⑤
Ⅲ. 인력 기반 조성	Ⅲ-1 인력 수급 및 정보생성·제공	3-1-1 분야별·중장기 인력수급전망	①	②	③	④	⑤
		3-1-2 인력 통계·정보체제구축	①	②	③	④	⑤
	Ⅲ-2 인력 평가/인증 및 지식권리보호	3-2-1 인력 조사·분석·평가	①	②	③	④	⑤
		3-2-2 인력 및 능력인증 체제	①	②	③	④	⑤
		3-2-3 지식재산권 보호	①	②	③	④	⑤
	Ⅲ-3 지역인력	3-3-1 지역인력 추진체제	①	②	③	④	⑤
		3-3-2 지역산업인력 양성 지원	①	②	③	④	⑤
	Ⅲ-4 산학협력	3-4-1 산학연 협력 체제 구축 및 활동 지원	①	②	③	④	⑤
	Ⅲ-5 국제협력	3-5-1 해외 인력 활용	①	②	③	④	⑤
		3-5-2 국제 인력 양성·활용 지원	①	②	③	④	⑤

* 국가인적자원개발 분류 체계를 참조하여 제시하였음

〈 **설명 자료 : 국가교육정책의 범위** 〉

*** X축 (생애 단계) :** 영유아, 청소년, 청년, 중장년, 고령자

*** Y축 (정책 영역) :** 교육비전, 중장기 정책 방향, 교육제도 개선, 거버넌스 개편, 재정 운영

*** Z축 (참여 주체) :** 중앙부처(교육부, 고용노동부, 산자부, 중기부, 농림부, 문광부, 국방부, 보건복지부 등), 지방자치단체(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학교 및 기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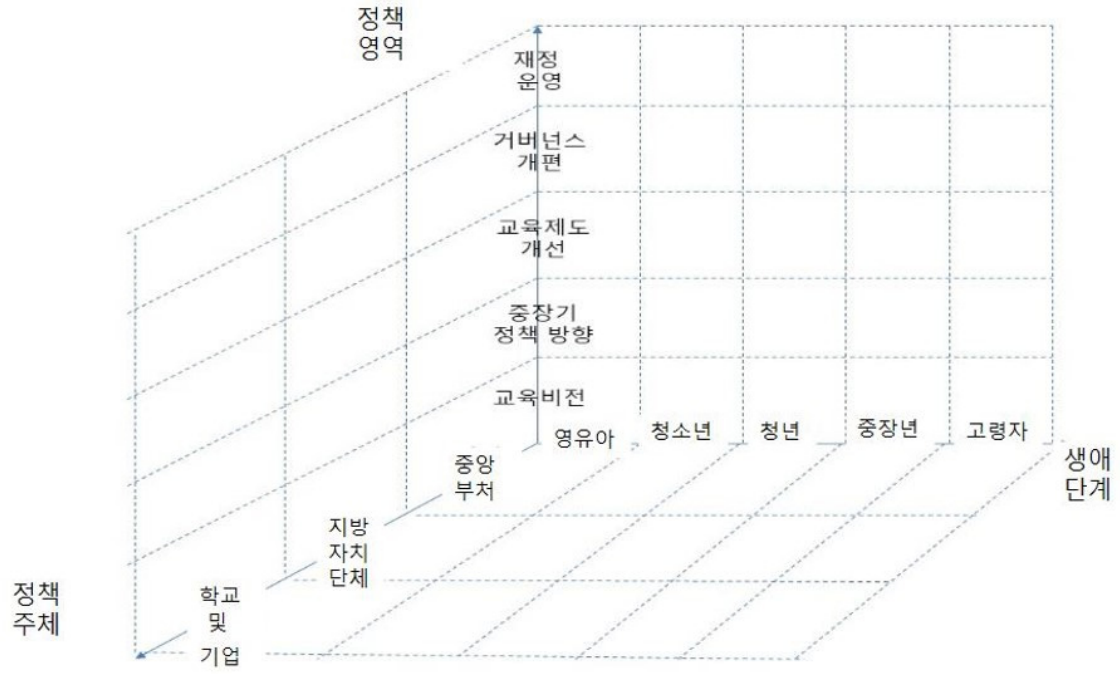

- 중앙부처 : 인력 양성 및 활용 관련 부처로, 교육부, 고용노동부, 과기부, 중기부, 문화관광부, 농림부 등
- 중장기 교육제도 및 여건 : 학제, 교원정책, 대학입학정책, 학급당 적정학생 (거버넌스, 재정) 등
- 지방자치단체 :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Ⅱ. 중장기 국가교육정책 모니터링 체계의 설계시 고려 사항

문1) 국가교육위원회는 동법 10조에 기초하여 10년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고, 중앙부처와 지자체는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을 반영하여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습니다. 매년 수립된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을 다음 절차와 같이 점검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래 제시된 그림을 보시고**, 국가교육발전계획에 따른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수립한 시행계획의 이행 사항을 **국가교육위원회가 점검할** 때, **귀하가 예상하시는 이슈를 세 가지만 개조식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구진 이슈〉	1. 이행 사항 점검을 위하여 국교위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 2. 국교위는 어떤 기준과 절차로 점검할 것인가 ? 3. 법에 근거하여 점검 결과를 누구를 대상으로 어떻게 게시할 것인가 ?
예상 이슈 1	○
예상 이슈 2	○
예상 이슈 3	○

〈설명자료〉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수립한 매년 시행계획에 관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이행상황 점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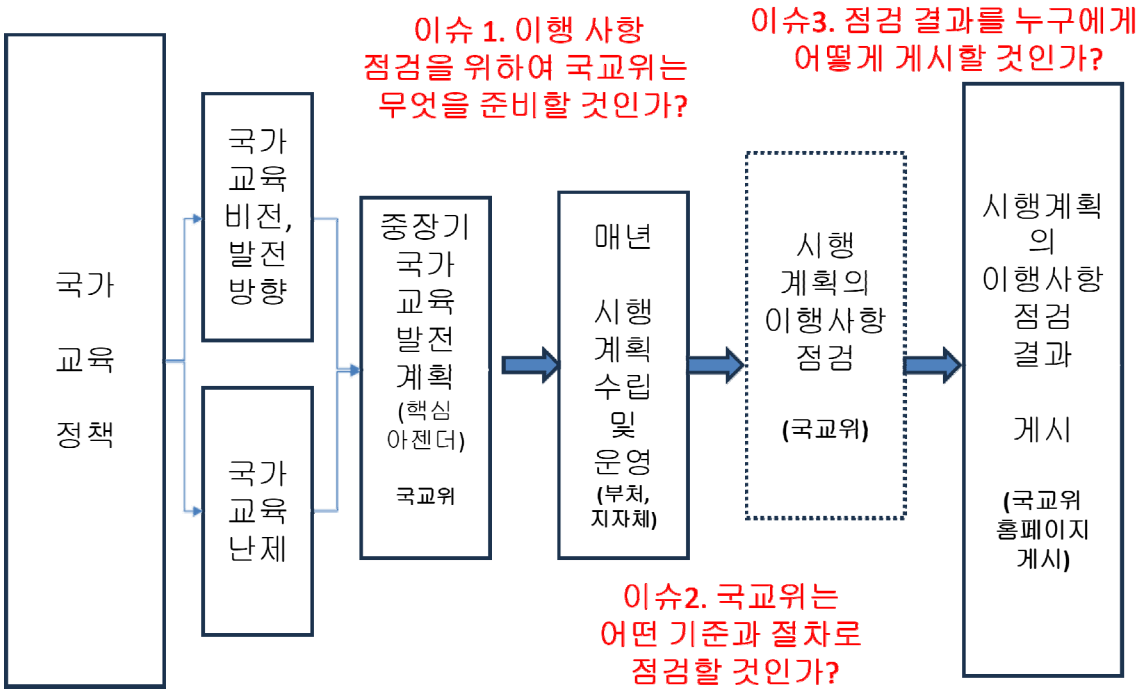

문2) 국가교육위원회는 사회적 합의체로서 '매년 수립되는 시행계획의 이행상황'에 관한 국가교육위원회법 조항은 있지만,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주요 아젠더'를 적극 반영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연구진은 **(1) 국무조정실 주관의 정부업무평가기본법**, **(2) 지자체의 성과관리 규칙** 등과 연계하여 '매년 시행계획 수립과 실행'을 권고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하여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항목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 분	적절성 인식 정도				
	전혀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음	보통임	적절함	매우 적절함
1. 국무조정실 주관의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의 성과지표로서 국교위 점검 결과 반영하도록 조정	①	②	③	④	⑤
2. 지자체의 성과관리 규칙의 성과지표로서 국교위 점검 결과 반영하도록 조정	①	②	③	④	⑤
3. 국교위 점검 결과의 성과지표에 반영하는 방식					
3-1. 정부업무평가시 해당 지표에 국교위 점검 결과를 그대로 활용	①	②	③	④	⑤
3-2. 국교위 점검 사항을 평가 지표로 개발하여 정부업무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	①	②	③	④	⑤
3-3. 지자체 성과평가시 해당 지표에 국교위 점검 결과를 그대로 활용	①	②	③	④	⑤
3-4. 국교위 점검 사항을 평가 지표로 개발하여 지자체 성과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	①	②	③	④	⑤

〈 설명 자료 〉 연구진이 제시한 정부업무평가기본법과 연계하기 위한 관련 법

구분		내용
총칙	제3조 통합적 정부업무 평가제도의 구축	•중앙행정기관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한 평가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하여 통합하여 실시되어야 한다. 이 경우 통합실시되는 평가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 성과관리전략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기관을 포함한 당해 기관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성과관리전략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당해 기관의 임무·전략목표 등을 포함하여야 하고 최소한 3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보완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이에 기초하여 성과관리전략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제6조 성과관리시행계획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전략계획에 기초하여 당해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시행계획에 대한 이행상황을 반기별로 점검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의 장은 성과관리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정부업무평가제도	제8조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의 수립	•국무총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정부업무의 성과관리 및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한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을 최소한 3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보완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평가대상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 평가대상기관과의 협조	•국무총리는 평가대상기관에 대하여 정부업무평가기본계획 및 정부업무평가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등에 필요한 자료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평가대상기관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3조 전자통합평가체계의 구축 및 운영	•국무총리는 정부업무평가를 통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전자통합평가체계를 구축하고, 각 기관 및 단체가 이를 활용하도록 할 수 있다. •전자통합평가체계는 평가과정, 평가결과 및 환류과정의 통합적인 정보관리 및 평가관련 기관 간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평가결과의 활용	제26조 평가결과의 공개	•국무총리·중앙행정기관의 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공공기관평가를 실시하는 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전자통합평가체계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8조 평가결과의 예산· 인사 등에의 연계·반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조직·예산·인사 및 보수체계에 연계·반영하여야 한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결과를 다음 연도의 예산요구시 반영하여야 한다. •기획재정부장관은 평가결과를 중앙행정기관의 다음 연도 예산편성시 반영하여야 한다
	제29조 평가결과에 따른 자체 시정조치 및 감사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정책등에 문제점이 발견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하여 당해 정책등의 집행중단·축소 등 자체 시정조치를 하거나 이에 대하여 자체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0조 평가결과에 따른 보상 등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사례로 인정되는 소속 부서·기관 또는 공무원에게 포상, 성과급 지급, 인사상 우대 등의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정부는 정부업무평가의 결과에 따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수여, 포상금 지급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보칙	제31조 중앙행정기관의 소속기관에 대한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소속기관 중 규모 및 업무의 특성 등에 비추어 성과관리 및 평가를 자체적으로 수행하게 할 필요가 있는 소속기관에 대하여는 스스로 성과관리 및 자체평가를 하게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2024.2.26. 검색).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 지방자치단체의 성과관리 규칙 사례 〉

구분		내용
성과관리	제4조 성과관리 전략계획	•가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계획(이하 "성과관리 전략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성과관리 전략계획에 이와 관련이 있는 다른 법령에 따른 중·장기계획을 포함할 수 있다. •군수는 성과관리 전략계획에 기관의 임무·비전·전략목표·성과목표 등을 포함하여4년간의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2년마다 그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정·보완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5조 성과관리 시행계획	•군수는 성과관리 전략계획에 기초하여 해당 연도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성과관리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각 부서의 장은 다음 연도의 부서별 성과관리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성과관리 주관부서로 제출하여야 한다. •성과관리 시행계획에는 기관의 임무·전략목표·성과목표·성과지표와 과거 2년간의 성과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객관적·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되, 객관적·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성과평가	제8조 성과평가 대상업무	•성과평가 대상업무는 성과관리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전략목표·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로 한다
	제9조 성과평가 대상	•군 본청의 담당관, 과·소 및 읍·면 •기관장이 5급 이상인 직속기관·사업소 및 그 하부조직
	제10조 성과평가 계획의 수립	•군수는 해당 정책 등의 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8조에 따라 성과평가 계획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제11조 정기평가	•정기평가는 연 1회 실시한다. •정기평가는 다음 해 1월에 실시하며 성과목표 달성도와 역량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제12조 수시평가	•군수는 군정성과와 관련하여 전체업무 또는 특정업무에 대하여 수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 성과평가 등의 위탁	•군수는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평가·조사·연구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성과평가위원회	제15조 구성 및 임기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 3분의 2 이상은 민간위원으로 하여야 한다.
	제19조 자료요구	•위원회는 직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성과평가 대상에게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성과평가결과의 활용	제22조 성과평가 결과의 공개	•군수는 성과관리 및 평가 결과를 군 행정포탈 및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성과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이를 심사하여 성과평가 결과를 조정하며, 이의신청 인용 여부 및 그 사유를 알려주어야 한다.
	제23조 성과평가 결과에 따른 시정	•군수는 성과평가 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성과평가 대상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시정 명령을 받은 성과평가 대상은 지체 없이 이에 따른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 성과평가 결과의 반영	•군수는 성과평가 결과를 조직관리와 예산편성 등에 반영하고, 성과가 우수한 기관 및 공무원에게 포상이나 성과급의 지급, 그 밖에 인사상 우대 조치 등을 할 수 있다.

문3) 국가교육위원회는 중앙부처 및 지자체가 수립한 매년 시행계획에 관한 이행상황을 점검한 후, 그 결과를 홈페이지에 게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법에 따르면,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점검 결과에 관한 이의신청 제기 조항이 누락**되어 있기에, 이의신청 조항 제정의 필요성에 관하여 귀하의 의견과 일치하는 항목에 “√”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혀 필요하지 않다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필요한 편이다	매우 필요하다
❑1	❑2	❑3	❑4	❑5

문 4)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의 모니터링을 담당하기 위한 조직 신설과 업무 분장에 관한 사항입니다. 아래 그림은 현 국가교육위원회 조직표에 '시행 계획 점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조직을 제시한 내용입니다.

문 4-1) 국가교육위원회법에 따른 시행 계획 점검을 위한 '정책 점검조사과(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정책 점검조사과(가칭)를 신설하여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구 분	적절성에 대한 인식 정도				
	전혀 적절하지 않음	적절하지 않음	보통임	적절함	매우 적절함
1. 정책점검조사과(가칭) 신설	①	②	③	④	⑤
1-1. 정책점검조사과 아래 정책조사분석팀 신설	①	②	③	④	⑤
1-2. 정책점검조사과 아래 시행계획점검팀 신설	①	②	③	④	⑤
1-3. 정책점검조사과 아래 점검정보관리팀 신설	①	②	③	④	⑤
2. 정책조사분석팀의 업무 분장의 적절성					
2-1.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국내 및 해외 관련 정책 현황의 조사 계획 수립	①	②	③	④	⑤
2-2. 국가교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협력 요청에 관한 사항	①	②	③	④	⑤
2-3. 국내외 교육 및 유관 통계 조사 자료의 수집·분석·정리	①	②	③	④	⑤
2-4. 유엔, 유네스코, 유럽연합, 경제협력개발기구 등 국제기구의 교육 정책 관련 발간 자료의 수집·분석·정리	①	②	③	④	⑤
2-5. 교육 관련 정책 동향, 정책 집행 현황, 교육 연구 정보 수집 및 분석을 위하여 국가교육연구센터와의 협력 사항	①	②	③	④	⑤
2-6. 위 업무 수행을 위한 인원(3명)은 적절한가 ?	①	②	③	④	⑤
3. 시행계획점검팀의 업무 분장의 적절성					
3-1. 국가교육시행계획 점검을 위한 제반 실행 계획 수립	①	②	③	④	⑤
3-2. 국가교육시행계획 관련 중앙부처 및 지자체와의 업무 협력	①	②	③	④	⑤
3-3. 국가교육시행계획 점검 관련 위원회 운영 지원	①	②	③	④	⑤
3-4. 국가교육시행계획 점검 결과 분석 및 활용 계획 수립 및 운영	①	②	③	④	⑤
3-5. 위 업무 수행을 위한 인원(3명)은 적절한가 ?	①	②	③	④	⑤

4. 점검정보관리팀의 업무 분장의 적절성					
4-1. 국가교육시행계획 점검 및 점검 결과 게시를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지원	①	②	③	④	⑤
4-2. 국가교육시행계획 점검 업무를 위한 정보시스템 활용 지원	①	②	③	④	⑤
4-3. 국가교육시행계획 점검 관련 정보 관리 및 분석 업무 지원	①	②	③	④	⑤
4-4. 국가교육시행계획 점검 결과 문의 및 의견수렴에 관한 정보시스템 활용 지원	①	②	③	④	⑤
4-5. 위 업무 수행을 위한 인원(3명)은 적절한가 ?	①	②	③	④	⑤

〈 설명 자료 〉 국가교육위원회의 이행상황 점검 업무를 위한 조직 신설(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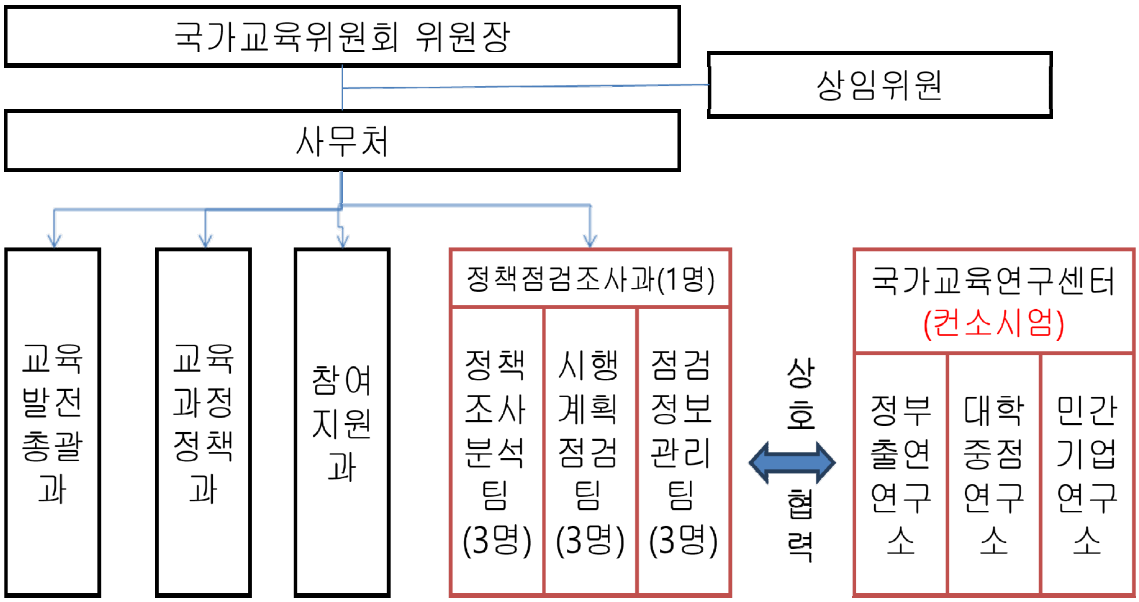

문 5) 중장기 국가교육발전계획과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시행계획 점검 결과 등 국가교육위원회의 시행사항 점검을 위한 '국가교육정책 점검 관리 정보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전혀 그렇지 않다	그렇지 않은 편이다	보통 이다	그런 편이다	매우 그렇다
❑1	❑2	❑3	❑4	❑5

문 5-1) (①, ② 응답한 경우) 과거 국가인적자원개발 정보망(HRD-Net)과 같이 국가교육정책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독립적인 '국가교육정책 점검 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이 필요없다고 생각하신 이유를 간략하게 개조식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문 5-2) (③, ④, ⑤ 응답한 경우) '국가교육정책 점검 관리 정보시스템'의 구축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간략하게 개조식으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바쁘신 중에도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국가교육위원회